

연구보고서 : 2011-06

72-6420607-000015-01

제2기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2012~2016)

강원아이사랑플랜

연구기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책임연구자	임유경(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허소영(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안희정(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 원 도

목 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 1

1. 계획수립의 근거 및 범위 / 3
2. 계획수립의 방법 및 일정 / 4
3. 관련 계획의 검토 / 7

제2장 강원도의 보육 여건 / 17

1. 보육 여건의 변화 전망 / 19
2. 보육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35
3. 보육 욕구 진단 / 71

제3장 보육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81

1. 사업추진의 기본체계 / 83
2. 【정책목표A】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84
3. 【정책목표B】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102
4. 【정책목표C】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134
5. 연차별 사업계획 / 150
6. 계획의 평가방안 / 153

표 목 차

표 1- 1. 아이사랑플랜의 기본개요	7
표 1- 2. 새싹플랜 vs 아이사랑플랜	9
표 1- 3. 아이사랑플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10
표 1- 4. 제1기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 수립의 기본 개요	12
표 1- 5. 제1기 계획의 이행 점검(총괄)	13
표 1- 6. 제1기 계획의 내용 및 이행 점검(단위사업별)	14
표 2- 1. 강원도의 보육대상 아동인구 규모 변화 추이	21
표 2- 2.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변화	23
표 2- 3. 강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2010)	24
표 2- 4.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보육예산 변화 추이(2005~2011)	25
표 2- 5.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5~2011)	26
표 2- 6. 만 5세아 공통학년제 도입 전·후 비교	27
표 2- 7.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요	29
표 2- 8.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시·운영 현황	31
표 2- 9.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시 및 관리·감독 방안	32
표 2-10. 보건복지여성국내 부서별 업무 담당인력 규모	36
표 2-11. 강원도 보육시책 추진 현황(2011)	37
표 2-12. 강원도 보육사업 예산 변화(2010, 2011)	38
표 2-13. 16개 시·도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현황(2010)	39
표 2-14.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현황(2010)	40
표 2-15.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현황(2010년말)	42
표 2-16.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현황(2010년말)	43
표 2-17. 강원도 어린이집 수 변화 추이(2005~2010)	44
표 2-18.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2010년말)	46
표 2-19.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정원 현황(2010년말)	47

표 2-20.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현원 현황(2010년말)	48
표 2-21.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정원 현황(2010년말)	50
표 2-22.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현원 현황(2010년말)	51
표 2-23. 강원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변화 추이(2005~2010)	52
표 2-24.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2010)	54
표 2-25.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정원총족률(2010년말)	55
표 2-26.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2010)	57
표 2-27. 강원도 18개 시·군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 현황(2010)	59
표 2-28.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교육 공급 수준	61
표 2-29. 보육서비스 공급 최종 우선순위에 따른 시·군 현황	61
표 2-30. 시·도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1년 4월)	62
표 2-31. 시·도별 보육 관련 현황 대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64
표 2-32. 시·군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1년 4월)	66
표 2-33. 강원도 시·군별 보육교직원 현황(2010년 10월말)	68
표 2-34. 18개 시·군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보육 관련 욕구	72
표 2-35.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욕구조사 결과에 의한 시사점	73
표 2-36. 「제2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보육관련 전문가 FGI 주요 결과	73
표 2-37. 보육아동 부모 FGI 주요 결과	75
표 2-38. 보육교사 FGI 주요 결과	76
표 2-39.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FGI 주요 결과	77
표 3- 1. 강원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2010년말)	90
표 3- 2. 양육수당 지급 기준(2012)	91
표 3- 3.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해제 현황(2006~2010)	96
표 3- 4.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유형별 미달 아동 수(2010)	97
표 3- 5.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공개채용 사례	100
표 3- 6. 시설유형별 등·하원 차량운행 여부	103
표 3- 7. 시설유형별 차량운행자	104
표 3- 8. 도내 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소요 내역 사례	105

표 3- 9. 시설유형별 차량운행시 문제점	106
표 3-10. 강원도 대체교사 현황	109
표 3-11. 월별 대체교사 활용 현황(2011)	110
표 3-12.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113
표 3-13. 강원도 18개 시·군의 장기근속수당 지원 현황(2011)	114
표 3-14. 장기근속수당 지원 계획(안)	116
표 3-15. 2005년과 2009년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118
표 3-16.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양성·활용 계획(안)	120
표 3-17. 강원도 장애아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관련 현황(2010년말)	122
표 3-18. 강원도 어린이집의 다문화아동 관련 현황(2010년말)	123
표 3-19.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계획(안)	124
표 3-20.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계획(안)	125
표 3-21. 아이사랑모니터단 구성·운영 계획(안)	128
표 3-22. 부모교육 계획(안)	132
표 3-23.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142
표 3-24. 보건복지여성국내 부서별 업무 담당인력 규모	145
표 3-25. 2011년 보육지원팀의 예산 규모(당초예산기준)	146
표 3-26. 2012년 아동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147
표 3-27. 2012년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 이하)	148
표 3-28. 강원도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개요	148
표 3-29. 【정책목표A】 “보육의 공공성 강화” 의 연차별 사업계획	150
표 3-30. 【정책목표B】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의 연차별 사업계획	151
표 3-31. 【정책목표C】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추진 기반 구축” 의 연차별 사업계획	152
표 3-32. 평가방법	155

그림 목 차

그림 2-1. 2009년 대비 2010년(잠정치)의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감률 ..	19
그림 2-2. 강원도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수 및 비율 변화 추이	20
그림 2-3.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vs 2010년)	22
그림 2-4. 보육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5~2011)	26
그림 2-5. 일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33
그림 2-6. 제도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34
그림 2-7. 보육 및 저출산 업무 담당 조직 및 업무 내용	35
그림 2-8. 보육사업 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70
그림 3-1.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원인 도식	104
그림 3-2. 차량이용비용수납에 따른 등하원 차량 운전기사고용 절차	107
그림 3-3. 차량이용비 수납에 따른 등하원 차량지도담당자 고용 절차	108
그림 3-4. 대체교사 보수 수준 상향조정(안)	112
그림 3-5.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어린이집의 급식정보 제공 사례	136
그림 3-6.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137
그림 3-7.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휴일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138
그림 3-8.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139
그림 3-9. 주말 및 휴일 등 보육 신청 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	140
그림 3-10.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2012~2016)」 평가실시 일정	156

요약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동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2. 계획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 2012~2016년(5개년)
- 공간적 범위: 강원도 구역 16,873.93Km² / 18시군 187읍·면·동 4,086통리 21,140반

3. 계획수립 방법

- 문헌연구, 일반통계부석, 보육관련 통계분석, 보육관련 기관 현황 자료 취합 및 분석, 관련 주체 FGI 실시, 보육관련 현장 점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부서 협의, 공청회 개최, 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

4. 계획수립 일정

- 2010년말 :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의뢰(강원도)
- 2011. 2. 24 : 착수보고회 실시
- 2011. 3. 25 : 강원도보육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1. 3. 23~4. 6 : 어린이집 원장 FGI 실시
- 2011. 4. 13~4. 16 :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및 보육교사 FGI 실시
- 2011. 4. 15~20 : 어린이집 현장 방문
- 2011. 4. 18~4. 22 : 18개 시·군 보육관련 시책 및 현황 자료 취합
- 2011. 4. 22 : 강원도보육정보센터 방문
- 2011. 5. 4 : 제2차 보육발전자문회의 개최
- 2011. 6. 14 : 공청회 개최
- 2012. 4.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제2장 강원도의 보육여건

1. 보육 여건 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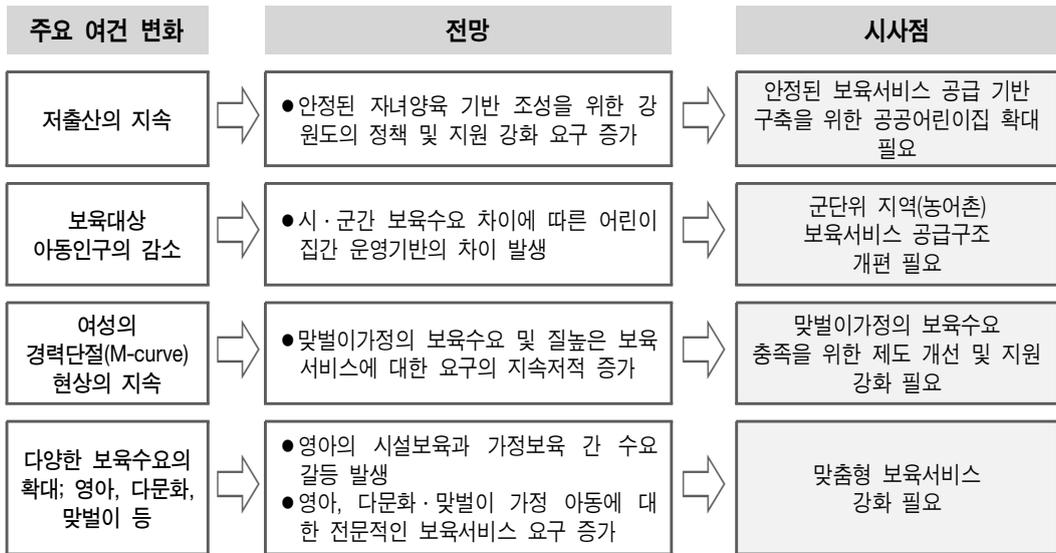


그림 1. 일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주요 여건 변화	전망	시사점
정부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정 확대에 비례하는 공공성 확대 불투명 	<p>공보육서비스(공공어린이집) 공급기반의 적극적인 확충 필요</p>
<p>누리과정(만5세아 공통학년제)의 도입; 무상보육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아동 대상 무상보육 확대: 민간부분의 보육료 차액 부분에 대한 수요자 부담 지속 → 완전무상보육 확대 불투명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형평성 있는 처우(봉급)에 대한 요구 증가 ● 도내 보육아동가정 소득수준기준에 따른 지원 사업과 제도 운영의 갈등 발생 	<p>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 차액 관리 방안 모색 필요</p> <p>중앙정부 차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p> <p>관련 사업 재정비 및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예: 저소득아동 입소료지원)</p>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지속적 강화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 	<p>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선정 및 운영기준 등</p>
평가인증제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과 정부의 지원 연계의 지속적인 강화 	<p>합리적인 평가인증제도 운영 방안 모색; 연계가능한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강화 등</p>
양육수당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확대 전망에 따라 가정내 보육 아동과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증가 	<p>중앙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양육수당 지원 방안 마련 필요</p>
특별활동 실시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제한에 따른 갈등 발생 → 특별활동 실시 허용에 대한 요구 증가 	<p>표준보육(누리)과정 운영 및 보육교사 역할의 내실화 필요</p>
5~20인 사업장 근로자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어린이집 운영 여건(법정 어린이집 운영시간, 차량지도 및 휴일당직 등)과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민간부문)어린이집 운영자의 정부지원 요구 증가 	<p>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차량지도, 휴일당직 등의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p>

그림 2. 제도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2. 강원도 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보육사업 관련 영역	문제점	시사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담당인력 조직내에서 가장 적은 수준 (3인) 	시설 수와 지도·감독이 중요한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담당인력(공무원) 충원 시급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보육사업 예산분담 규모 저조 (2011년, 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인력의 질향상 등 질높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보육대상 아동(영유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시·군간 영유아 인구 규모의 큰 격차 	지역(시·군)별 영유아 인구 규모(수요)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부문어린이집의 큰 비중 및 시·군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큰 격차 ●민간부문 중심의 어린이집 증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 및 가정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 ●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의 전체 보육대상 아동(0~5세) 수; 대부분 100명 이하 규모로 시설보육 제공의 한계 	(특히) 시지역의 공보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 제고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어린이집 이용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시·군간 시설유형별 이용아동 비율의 큰 격차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민간부문(민간개인과 가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규모가 적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민간부문 어린이집 확충(공급) 규모 조절 방안 마련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정원충족률(2010년, 79.5%) ●지역별, 시설유형별 다양한 편차 존재 	무상보육 등 확대를 통한 전체적인 정원충족률 제고 전망 모든 시설유형에서 정원충족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예: 태백시)에 대한 사례 검토
보육서비스 수요·공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보육서비스 수요대비 관련 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 수준의 격차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수요 충족 방안 모색 필요
보육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소지자 중 어린이집 미취업자 비율(강원도 75.2%)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인난 증가 	안정적인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수요·공급 시스템 마련 필요

그림 3. 강원도 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3. 강원도의 보육 욕구 진단; 보육관련 주제 FGI 결과에 따른 시사점

1) 보육아동 부모 FGI

-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에 대한 FGI 실시 결과, 발굴된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보육아동 부모 FGI에 따른 시사점

주요문제영역	시사점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양육지원시스템의 강화
보육프로그램	전문성·책임성있는 어린이집프로그램 수립·제공 방안
보육인력	보육인력 관련 정보 공개 방안 검토,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보육관련 비용	특별활동 현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어린이집차량이용	어린이집차량 안전관리 교육,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어린이집식단(먹거리)	어린이집 식단 관리 방안
보육관련 정보	보육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주: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5인에 대한 FGI 결과임.

2) 보육교사 FGI 결과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FGI 실시 결과 발굴된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2. 보육교사 FGI에 따른 시사점

주요문제영역	시사점
출·퇴근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시간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
휴가	대체교사 등 활용방안 검토
역할부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
차량지도	원장 및 보육교사의 차량운행 및 지도 관련 개선방안 모색, 차량기사 안전의무교육 실시
특별활동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시간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인증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 모색
이직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
재교육	대체교사 등 활용방안 검토, 보수교육 및 보육정보센터 교예 영아보육 관련 교육·훈련 강화
토요일·휴일 근무	토요일·휴일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주: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근무 현직 보육교사 3인에 대한 FGI결과임.

3)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FGI 결과

- 어린이집 운영자(원장)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발굴된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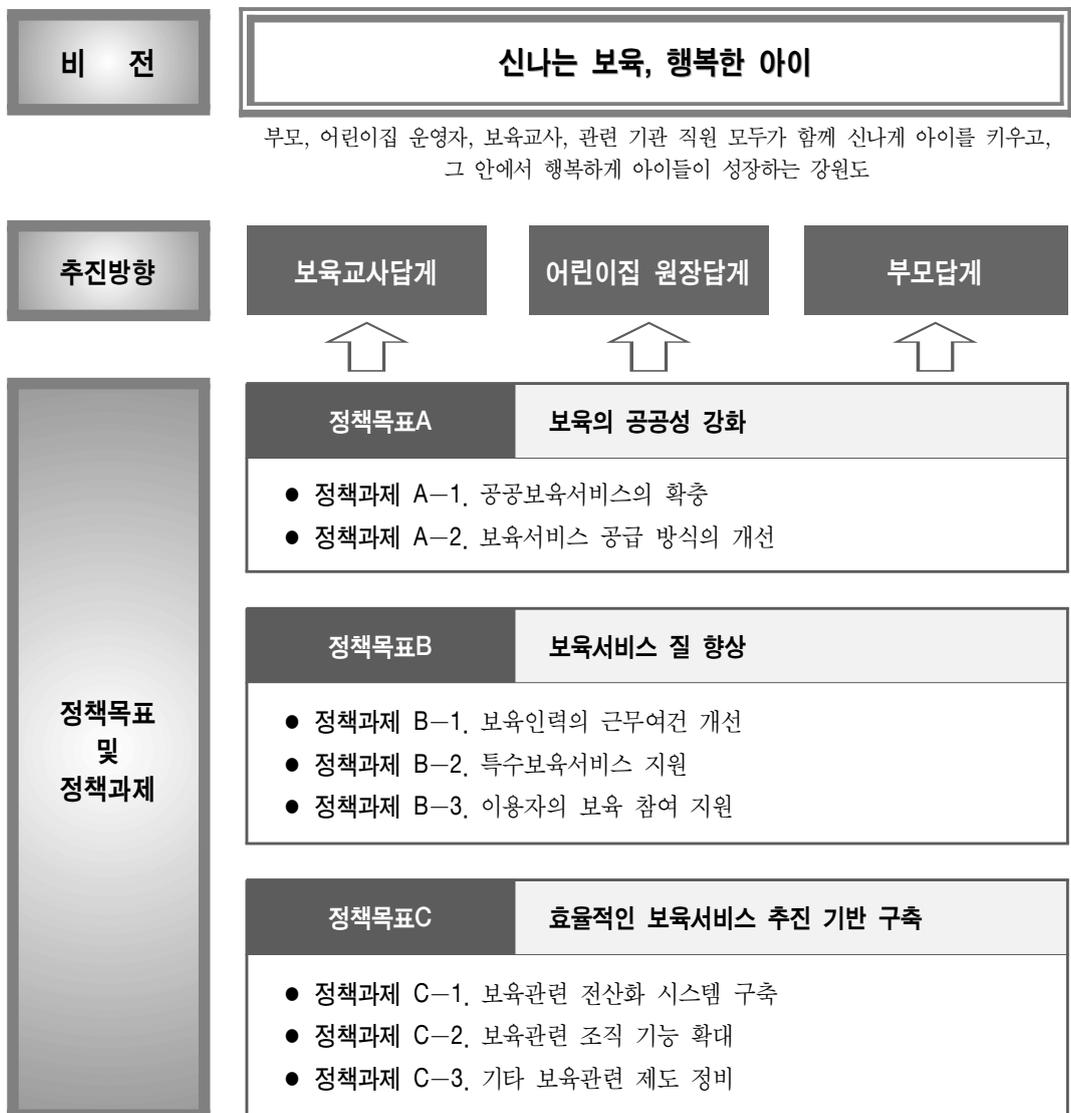
표 3.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FGI에 따른 시사점

주요문제영역	시사점
보육교사의 채용 및 관리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및 자격제도 개선 요구, 보육교사 전공이나 학력별 재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소규모 어린이집 지도·감독 강화
보육교사처우	인건비 지원 수준 현실화,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시간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
대체교사	대체교사 활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원장의 역할	원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평가인증	평가인증 참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방안, 평가인증과 다양한 정부지원의 연계 모색
가정어린이집 인가	민간 및 가정 등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 및 방식의 개선
기본보육료와 영아보육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역할 조정 검토
영아보육의 질	영아보육 관련 재교육 강화
차량 운행·지도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및 보육교사의 차량지도 개선방안 마련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수당	영아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간 역할 조정 필요
반구성	농어촌 보육 개선 방안 검토
입소순위	맞벌이가정 자녀우선 입소 규정 강화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인력(원장, 교사)에 대한 재교육 강화, 장애아보육 지원 인력 확충 검토(보육정보센터 등),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방안 검토
부모자질 및 교육	정기적인 부모교육 실시 방안 모색
농어촌·군부대 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	군부대 및 농어촌 지역 동절기 운영난 해소 방안 모색, 농어촌 보육 개선 방안 검토
토요일·휴일 근무	거점형 어린이집 지정·활용 방안 검토
지도·감독	보육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육관련 기초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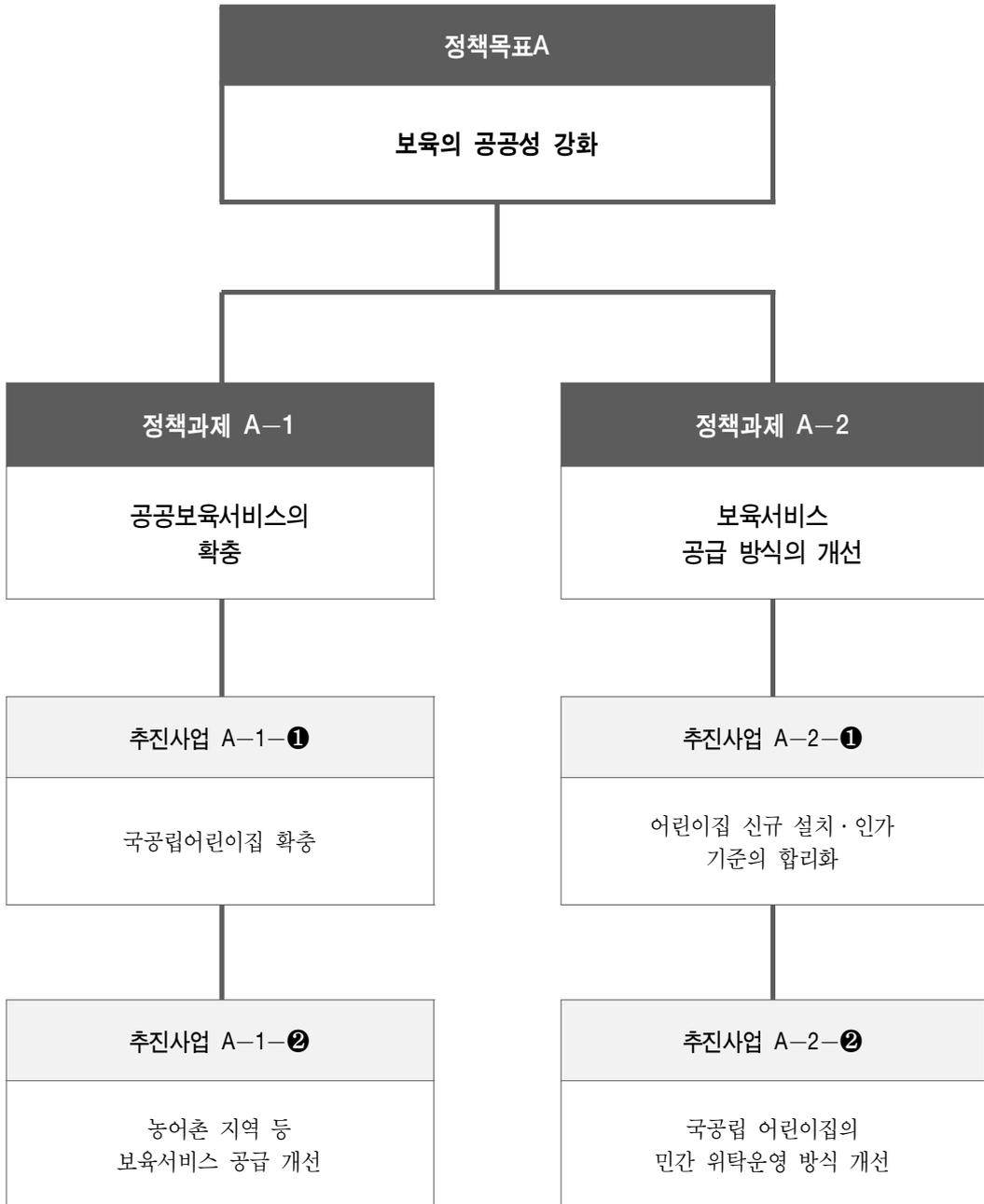
주: 도내 시·군 지역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운영자 20인(어린이집 유형별 각 5인)에 대한 FGI 결과임.

제3장 강원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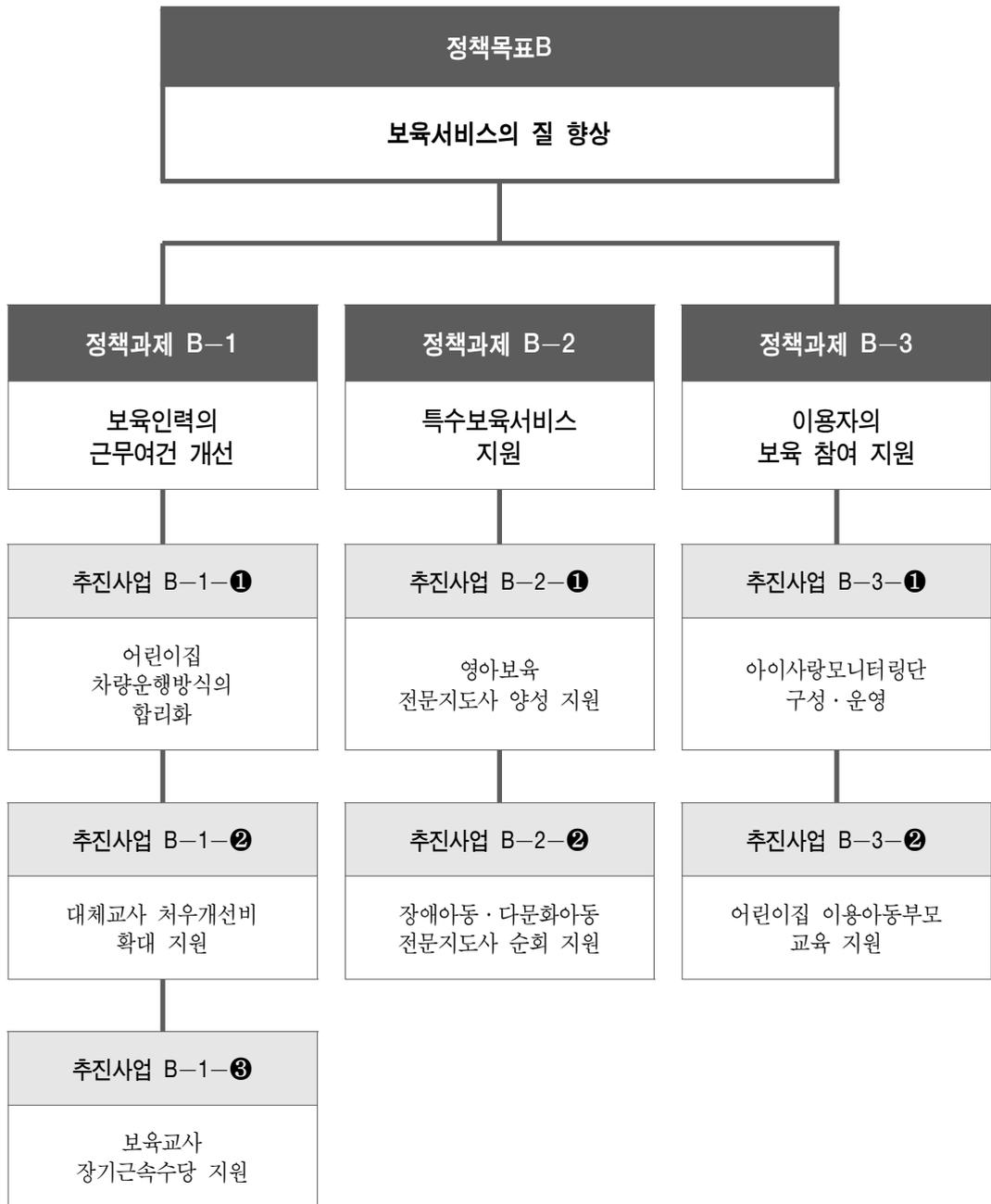
1. 사업추진의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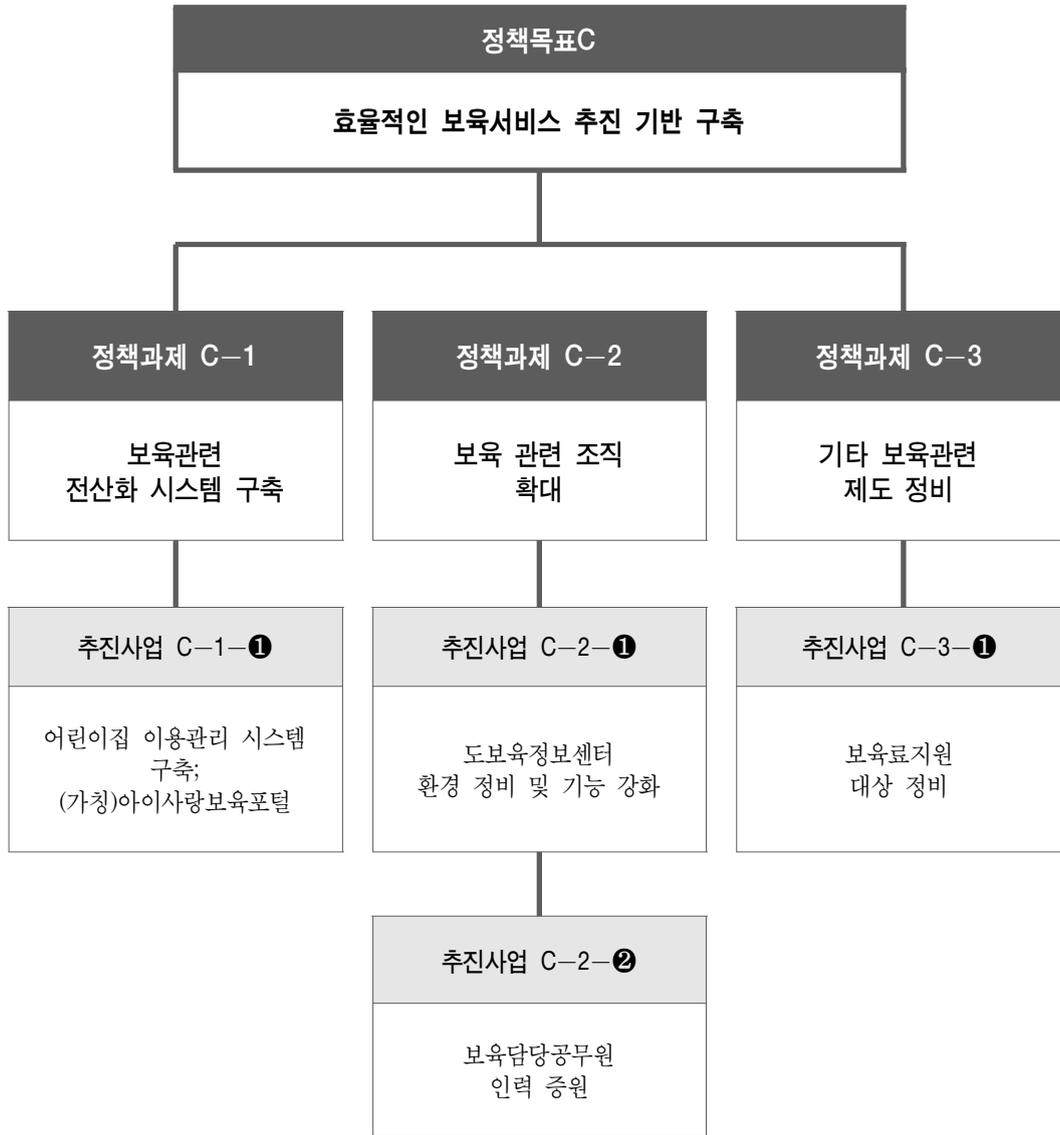
2. 정책목표A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3. 정책목표B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4. 정책목표C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제 1 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근거 및 범위
2. 계획수립의 방법 및 일정
3. 관련 계획의 검토

1 계획수립의 근거 및 범위

1. 계획수립 근거

<p>「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p>
<p>「등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p>

2. 계획수립 범위

<p>시간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16년 ○ 계획기간 : 2012~2016년(5개년)
<p>공간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구역 16,873.93Km² ○ 18시군 187읍·면·동 4,086통리 21,140반
<p>내용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어린이집¹⁾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종사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어린이집’, 어린이집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 등의 용어를 사용함. 다만, 동 시점 이전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2

계획수립의 방법 및 일정

1 . 계획수립 방법

<p>문헌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획 검토: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2009~2012)」 및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기 강원도보육발전계획, 타 자치단체 보육발전계획 등 ○ 법령자료 검토: 영유아보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강원도내 보육관련 조례, 타 시도의 보육관련 조례
<p>일반통계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보육대상 아동 인구(영유아) 관련 통계자료 분석: 통계청DB 활용
<p>보육관련 통계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 및 도내 18개 시·군의 보육관련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활용(2010년 12월말) ○ 도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급수별, 학력별, 연령별): 보건복지부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의뢰하여 보육교사자격관리 DB를 통한 통계표 산출
<p>보육관련 기관 현황 자료 취합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보육사업 세부 현황, 보육사업 예산, 최근 제도변경 사항 등 ○ 강원도내 18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개 시·군 보육담당 공무원 - 자료목록 : 시·군 자체시책(특수시책),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 및 절차, 어린이집 인가제한 및 인가제한 해제 관련 기준,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연장, 휴일보육 등)실시 현황,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지원방식 등 - 취합방식: 연구원→도→시·군→도→연구원 ○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 ○ 도보육정보센터: 사업 현황 및 실적 ○ 타 시·도 및 시·군의 보육관련 시책 자료
<p>관련주체 FGI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보육관련 각 주체(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용아동 보호자)별 어린이집 운영, 근무, 이용시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시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 등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사: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 등 어린이집에서 근무 - 이용아동 부모: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 등 어린이집 이용아동

<p>보육관련 현장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보육관련 각 주체(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용아동 보호자, 관련 기관) 별 어린이집 운영, 근무, 이용 및 서비스 제공시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시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방문 및 시설장 인터뷰(춘천시, 태백시) - 도보육정보센터 방문, 소장 및 사업별 담당직원 인터뷰 																		
<p>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 수립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상시 자문을 통한 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 지원 -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강원도의 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대상: 도내 보육관련 각 부문(보육정책위원회, 의회, 학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 대표 12인과 외부자문 1인, 총 13인 <table border="1" data-bbox="425 844 1225 976"> <thead> <tr> <th>보육정책 위원회</th> <th>의회</th> <th>학계</th> <th>시군 공무원</th> <th>보육관련 기관단체</th> <th>보육 교사</th> <th>보호자</th> <th>외부 자문</th> <th>총인원</th> </tr> </thead> <tbody> <tr>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d>1</td> <td>1</td> <td>1</td> <td>1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계획의 세부추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계획의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임기: 2011년 3월 25~5월 31일 	보육정책 위원회	의회	학계	시군 공무원	보육관련 기관단체	보육 교사	보호자	외부 자문	총인원	2	2	2	2	2	1	1	1	13
보육정책 위원회	의회	학계	시군 공무원	보육관련 기관단체	보육 교사	보호자	외부 자문	총인원											
2	2	2	2	2	1	1	1	13											
<p>실무부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보육담당공무원과 계획수립 착수 단계부터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의견 조정 																		
<p>공청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최종 계획에 대한 도민과 보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2011년 6월, 원주한라대학교 ○ 참석자: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관련 단체 및 기관, 보육관련 공무원 등 																		
<p>도보육정책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최종 계획에 대한 심의(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명시) ○ 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강원도청 ○ 참석대상: 도보육정책위원, 연구진, 도보육담당공무원 																		

2. 계획수립 일정

2010년 말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2011~2015) ○ 수행기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연구기간: 2011. 2. 1~2011. 5. 31(4개월) 																		
2011. 2. 24	착수보고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도보육담당자 2인 ○ 내용: 보육계획수립의 방향, 방법, 일정 등 논의 																		
2011. 3. 25	강원도보육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수: 12인 ○ 참석인원: 19인(자문 11인, 도담당공무원 2인, 원내연구진 6인) 																		
2011. 3. 23~4. 6	어린이집 원장 FGI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인 참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대상</th> <th>날짜</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국공립</td> <td>3.23(수) 15:00</td> <td>5인(시 3, 군 2)</td> </tr> <tr> <td>법인</td> <td>4. 6(수) 15:00</td> <td>5인(시 3, 군 2)</td> </tr> <tr> <td>민간·법인외</td> <td>4. 5(화) 15:00</td> <td>5인(시 3, 군 2)</td> </tr> <tr> <td>가정</td> <td>3.31(목) 15:00</td> <td>5인(시 3, 군 2)</td> </tr> <tr> <td>계</td> <td></td> <td>20인</td> </tr> </tbody> </table>	대상	날짜	인원	국공립	3.23(수) 15:00	5인(시 3, 군 2)	법인	4. 6(수) 15:00	5인(시 3, 군 2)	민간·법인외	4. 5(화) 15:00	5인(시 3, 군 2)	가정	3.31(목) 15:00	5인(시 3, 군 2)	계		20인
대상	날짜	인원																		
국공립	3.23(수) 15:00	5인(시 3, 군 2)																		
법인	4. 6(수) 15:00	5인(시 3, 군 2)																		
민간·법인외	4. 5(화) 15:00	5인(시 3, 군 2)																		
가정	3.31(목) 15:00	5인(시 3, 군 2)																		
계		20인																		
2011. 4. 13~4. 16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및 보육교사 FGI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3인 참여 ○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 5인 참여 																		
2011. 4. 15~20	어린이집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및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 면접 ○ 시설 환경 등 점검 																		
2011. 4. 18~4. 22	18개 시·군 보육관련 시책 및 현황 자료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개 시·군 보육담당공무원 																		
2011. 4. 22	도보육정보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센터 시설 현황 점검 및 운영 관련 논의 																		
2011. 5. 4	제2차 보육발전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2011. 6. 14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계획(안)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수렴 ○ 참여자: 도내어린이집 관계자(원장, 교사 등), 보육 및 여성 담당 공무원, 기타 도민 																		
2012. 4.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계획의 타당성, 추진 가능성 점검 ○ 참여자: 도보육정책위원 																		

3

관련 계획의 검토

1. 중앙정부; 아이사랑플랜

1) 계획의 기본개요 검토

-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보육발전계획은 2006년에 수립된 「새싹플랜(2006~2010)」을 수정·보완하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보육정책 환경 변화(저출산의 심화, 보육수요의 다양화 등)를 반영하여 수립함.
- 「아이사랑플랜」의 비전은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서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 구축’으로 구성함.
 - ‘국가책임의 강화’는 종전의 「새싹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보육사업 목표임.
- 또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로서 ①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②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③ 어린이집 질제고 및 균형 배치, ④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⑤ 전달체계 효율화 ⑥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6가지로 구성됨.

표 1-1. 아이사랑플랜의 기본개요

구분	내용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나이와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된 세상
3대 전략	영유아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을 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 - 영유아 및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맞춤·통합형 보육정책 추진
	국가책임제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참여정부에서 조성된 공보육을 강화하여 국가책임 보육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로 비용부담 완화, 교사 자격기준

구분		내용
6대 추진 과제		강화, 환경기준 개선 등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지원 등 양육지원체계 마련
	신뢰구축	○ 신뢰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추진 - 부모가 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통로를 마련하고, 보육관련 총괄적 정보제공 강화 - 어린이집,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정책형성·집행과정에서 수렴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시에는 양육수당 지급 - 보육료 지원확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영유아에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요자 맞춤 지원	○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 및 부모의 특성: 다문화가정, 한부모(미혼모, 조손가구)가정,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 가정, 빈곤·실직·실종 부모, 입양아 가정, 농어업인 가정
	어린이집 질제고 및 균형 배치	○ 접근처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질적 수준 및 접근성 제고 - 보육프로그램 강화: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아동의 적절한 놀이와 경험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 어린이집 환경기준 개선 및 보육종사자의 건강·영양·안전 관련 역량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모든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평가인증 강화 - 어린이집 균형배치: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전달체계 효율화	○ 보육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성 강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원기구 개편, 어린이집 안전사고 지원 및 부모의 참여 활성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 종전의 「새싹플랜」과 비교를 통해 「아이사랑플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2 참조).

- 첫째,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로서 ‘양육수당’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둘째, 시설별 지원(기본보조금)과 아동별 지원(차등보육료)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보육료 지원’방식으로 통합하는 ‘i-사랑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에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함.

- 셋째, 「새싹플랜」에서는 이용아동의 3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함.
-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의 제도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서 대체교사 및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제공,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 제도를 위해 인건비 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계약제 도입 등임.

표 1-2. 새싹플랜 vs 아이사랑플랜

구분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기간	2006~2010	2009~2012
소요예산	6조 4,580억원	11조 7,111억원
주요정책 변경사항		
강화	보육료지원	○차등보육료지원 확대: '09년 도시근로자 130% 까지 보육료 30% 지원 ○기본보조금 도입: '10년까지 만5세까지 도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지원	○양육수당도입: '12년까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80%까지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보육료 지원방식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통합 ○i-사랑카드 도입
	국공립시설 확충	○'10년까지 국공립시설 2배 확충: '05년 1,352개소 → '10년 2,700개소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시설 대기자 수 감소(12만명 → 6만명), '12년 2,119개소 확충
추가	-	○다문화아동 지원 강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 ○보육비용 지원 선정기준 개편 ○보육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담임수당('09년 21천명 → '12년 85천명),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09년 450명 → '12년 1,500명)
지속유지	○보육서비스 질제고: 평가인증, 건강, 영양, 안전 강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취약보육 강화: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다양한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미반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미반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기존의 「새싹플랜」에 비해서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량 그리고 보육재정이 확대됨.
 -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즉, 보육사업의 운영주체를 통한 근본적인 국가책임의 강화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계획의 내용 및 이행 상황 점검

- 다음은 「아이사랑플랜」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부사업내용임. 이 계획에서는 4개년(2009~2012)동안 추진할 다양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표 1-3 참조).
- 이들 세부과제는 보육사업의 여건이나 관련 제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플랜 2010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2-4-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6-6.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등의 과제의 추진에 대해서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과제는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아이사랑플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과제	'09	'10	'11	'12
1. 부모님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1. 보육료지원 확대				
1-1-1. 만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1-1-2. 만5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1-1-3. 다자녀가구 보육지원 확대				
1-1-4. 보육료 지원단가 합리적 재산정				
1-1-5.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검토				
1-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2-1.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 아동·부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1.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대				
2-1-1.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검토				
2-1-2.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지원				
2-1-3.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				
2-1-4. 다문화영유아 대상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				

과제	'09	'10	'11	'12
2-2.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공				
2-2-1.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지원				
2-2-2. 장애아시설 종사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2-2-3. 장애아 보육 지원시스템 마련				
2-3.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2-2-1.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2-2-2.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2-2-3.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긴급보육 지원				
2-4. 가정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2-4-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 집근처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 어린이집 안전기준 개선				
3-1-1. 어린이집 환경기준 개선				
3-1-2.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 관리 강화				
3-1-3.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2.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3-2-1.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과정 제도화				
3-2-2. 특기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				
3-3. 평가인증 활성화				
3-3-1. 평가인증 활성화				
3-4. 어린이집 균형배치				
3-4-1. 보육수요 추계				
3-4-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4-3.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 검토				
3-4-4.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3-4-5.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3-4-6. 부모협동어린이집 확산				
4.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4-1.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4-1-1.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내실화				
4-1-2.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 마련				
4-1-3. 보육실습 기준 마련				
4-1-4. 보육인력의 자격변동 정보 연계				
4-1-5.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 방안 연구				
4-2. 보육교사 처우개선				
4-2-1. 국공립 보육교사 보수수준 개선				
4-2-2. 대체교사 인력 지원				
4-2-3.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4-2-4. 초과근무수당 지원				

과제	'09	'10	'11	'12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5-1.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화				
5-2. i-사랑카드 도입				
6. 보육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1.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6-2.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6-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6-5.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6-6.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2. 강원도; 제1기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2006~2010)

1) 계획의 기본개요 검토

- 제1기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2006~2010)」(이하: '제1기 계획'으로 표기)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1-4. 제1기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 수립의 기본 개요

구분	내용	
계획명	○ 뉴-스타트 강원, 삶의질 일등도 실현(2006~2010) 「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	
계획수립주체	○ 강원도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계획수립방법	○ 보육관련 현황 자료 분석	
내용구성	I. 여건과 필요성 II. 강원도 보육현황 III. 강원도 보육정책의 기초 IV. 강원도 보육정책의 특수시책	V.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VI. 지표로 보는 보육정책의 모습 VII. 2006~2010년 보육예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정책목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전략: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보육 기반 조성 및 어린이집 수준 향상 -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육관련 연구인력, 현장 전문가 등이 연구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제1기 계획은 여성가족과 소속 보육담당공무원에 의해 수립되어, 타당성, 신뢰성, 체계성 확보가 미흡함.
- 계획수립의 방법은 보육관련 문제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분석없이, 보육행정 통계에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도내 보육관련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함.
- 계획의 내용은 보육관련 여건과 현황을 제시하고, 강원도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중앙정부의 보육발전계획(새싹플랜)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와 대동소이함.
- 중앙정부의 계획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행정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 등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현실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2) 계획의 내용 및 이행 상황 점검

- 제1기 계획은 ‘공보육기반조성 및 어린이집 수준 향상’, ‘아동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의 3가지 정책과제별로 각각 15개, 14개, 18개의 세부사업을 포함, 총 47개 사업 추진을 계획함.

표 1-5. 제1기 계획의 이행 점검(총괄)

정책과제	세부사업 수(개)	이행수준(개)			이행률 (%)	미달·미이행 사유(개)					
		1	2	3		1	2	3	4	5	
		달성	미달	미이행		중앙제도 변경	예산 부족	실효성 부족	일몰 대상 사업	기타	
정책과제 I	공보육기반조성 및 어린이집 수준 향상	15	4	7	4	26.7	2	1	7	-	1
정책과제 II	아동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14	5	3	6	35.7	-	3	2	-	4
정책과제 III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18	7	2	9	38.9	-	6	-	1	4
계		47	16	12	19	34.0	2	10	9	1	9

- 계획기간(2006~2010년) 중 각 정책과제별 단위사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한 결과, ‘정책과제 I’은 15개 사업 중 4개가 달성, 26.7%, ‘정책과제 II’는 14개 사업 중 5개가 달성, 35.7%, 마지막 ‘정책과제 III’은 18개 사업 중 7개가 달성, 38.9%의 이행률을 나타냄. 총괄적으로 보면, 47개 사업 중 16개가 달성, 이행 수준은 34.0%로서 계획 중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이 계획에 미달되거나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점검한 결과²⁾ ‘예산부족’이 10건으로 가장 높고, ‘실효성 부족’도 9건으로 높게 나타남. 강원도보육발전계획의 이행추진은 열악한 재정여건이 근본적인 장애요소이지만, 소극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실효성 부족’이라는 것은 계획이 전문가에 의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수립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한계들은 강원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법정계획 의무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결과임³⁾.
- 제2기 계획은 제1기 계획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정책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 예정임.

○ 다음은 제1기 계획의 정책과제별 단위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의 내용과 각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임.

표 1-6. 제1기 계획의 내용 및 이행 점검(단위사업별)

정책과제	추진시책	단위사업	사업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행평가		
									이행수준	미달·미이행 사유	
공보육 기반 조성 및 어린이집 수준 향상	1-1.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확대	3개소	11개소	6개소	9개소	9개소	2	1	
	1-2.민간어린이집지원체계구축	1-2-1.기본보조금지원	지원대상 확대	확대	국공립의 80%	좌동	좌동	좌동	국공립의 100%	1	
			영아지원단가인상	확대	30% 인상	3% 인상	3% 인상	3% 인상	3% 인상	1	
		1-2-2.환경개선편비지원	유아	신규	-	시범시행	전면시행	좌동	좌동	3	1
			지원대상 확대	확대	정부지원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전 시설 (인증참여)	1	
	1-2-3.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지원대상 확대	확대	정부미지원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전 시설	1		
		지원단가 인상	확대	월100천원	좌동	좌동	좌동	월200천원	2	2	
1-3.어린이집 환경개선	1-3-1.어린이보호구역지정	신규	-	실태조사 실시	5개소	5개소	5개소	3	3		

2) 2011년 3월 현재 자체점검 결과

3) 이행평가의 이행수준 및 미달·미이행 사유 : 표 1-5의 이행수준, 미달·미이행 사유 참조

정책 과제	추진 시책	단위 사업	사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행평가		
									이행 수준	미달· 미이행 사유	
	1-3-2.어린이통학버스차량구입비 또는 개조비 지원으로 신고 추진		확대	-	미신고시설 396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3	5	
		1-3-3.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지원	확대	15개소 (3~50백만원)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2	3
			기자재구입비 지원	확대	15개소 (2~60백만원)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2	3
			증개축비 지원	확대	15개소 (평당 248만원)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2	3
			개보수비 지원	확대	30개소 (30백만원)	30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2	3
			장비비 지원	확대	80개소 (2백만원)	80개소	80개소	80개소	80개소	2	3
	1-3-4.어린이집 설치 사전 상담 제도		신규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3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	2-1. 보육비 지원 확대	2-1-1.차등보육료	확대	도시근로자가 가구평균소득 70%	좌동	좌동	130%	좌동	1		
		2-1-2.만5세아무상보육료	확대	도시근로자가 가구평균소득 90%	좌동	좌동	130%	좌동	1		
		2-1-3.장애아무상보육	확대	장애아통합시 설지정 및 전담시설 확충	확대	확대	확대	확대	1		
		2-1-4.입양아 무상보육료	신규	전액무상	전액무상	전액무상	전액무상	전액무상	3		
		2-1-5.건강 검진비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	좌동	좌동	좌동	130%	2	2	
		2-1-6.입소료 지원	신규	-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좌동	좌동	130%	2	2011년 부터 영유아 가구소득하 위(60→70%) 이하 확대지원	
		2-1-7.필요경비지원	신규	-	도시근로자가 가구평균소득 100%	좌동	좌동	130%	3	3	
		2-1-8.다문화가정 아동보육료지원	신규	-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좌동	좌동	130%	3	2011년 부터 실시	
		2-1-9.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실시	신규	-	-	-	-	-	3		
	2-2. 취약어 린이집 지 원 활성화	2-2-1.영아보육활성화	확대	교사인건비 30%	좌동	좌동	좌동	50%	1	교사인건비 80%지원	
2-2-2.영아반보육교사 수당지급		특별 신규	월5만원/ 1인당	월5만원/ 1인당	월5만원/ 1인당	월5만원/1 인당	월5만원/ 1인당	3	2		
2-2-3.가정 방문 보육 도우미(어린이집미이용 애아저소득가정)		도 장 신규	-	실태조사 및 장애아가정지 원(5천원/ 1시간)	좌동	좌동	장애아가정 +저소득가 정 지원	3	3		

정책 과제	추진 시책	단위 사업	사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행평가			
									이행 수준	미달· 미이행 사유		
		2-2-4.장애아전담시설 확충	확대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	장애전담시설 4개소		
		2-2-5.장애아이용 일반 어린이집 편의시설설치	신규	-	실태조사 실시	40개소	40개소	40개소	2	2		
2-3.취업부 모에 대한 직장보육 서비스 강화		2-3-1.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수당지원	확대	32% (19개소)	좌동	좌동	좌동	100%	1			
		2-3-2.노동부와 연계한 의무 이행 홍보 및 독려	신규	-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1			
		2-3-3.지역별 1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컨소시엄 운영 유도	신규	시행 (운영 유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2		
		2-3-4.직장보육시설 우수사업장 입찰시 가산점 부여 협조공문 발송	신규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3		
		2-3-5.각종 취업박람회시 우수사업장 홍보 실시	신규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3		
보육 서비스 관리체 계강화	3-1.보육인 력 전문성 제고 처우개선	3-1-1.파트타임·휴일 등 대체교사 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	보완		지역별 실시 (도내관련대학, 읍면동)	시스템구축 및 연계사업 실시	좌동	좌동	1			
		3-1-2.처우개 선비 확대 및 연수기 회 제공	처우개선비	확대	50천원	좌동	60천원	70천원	80천원	1		
			격무수당	확대	50천원	50천원	70천원	시행	100천원	1		
			교통수당	신규	30천원	좌동	50천원	좌동	좌동	3	4	
			연수 기회	dot토리현	기존	30명내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5
				해외연수	보완	25명	30명	60명	좌동	좌동	1	
				보수교육	보완	집합교육	집합교육/ 사이버시범 운영	집합교육/ 사이버전면 시행	좌동	좌동	1	
		보육담당공무원 연찬회	신규	-	-	시행	좌동	좌동	3	2		
		3-1-3.평가인 증 시설교사 인센티브 시	체육활동비 지급(스승의 날)	신규	-	-	1,000천원/ 1시설	좌동	좌동	3	2	
			평가인증 수당	신규	-	종사자 500천원	좌동	좌동	좌동	3	2	
		3-1-4.어린 이 집 우수 프로그램 발표대회	신규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5		
		3-2.어린이 집 평가인 증 참여 대상지 센터비 지원	3-2-1.평가인 증 조력사 업 확대	조력사업비	확대	7,000천원	15,000천원	20,000천원	좌동	좌동	2	2
인건비	확대			-	2,500천원	좌동	좌동	30,000천원	1			
차량구입비	신규			-	-	2,500천원	-	-	3	2		
3-2-2.평가인 증 원료 장학 비 지원	현	기존	1,000천원/ 1시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2			
3-3.지역사 회 참여 시설 투명 성 제 고	3-3-1.모니터링단 운영	신규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5			
		기존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				
		기존	시행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5			

제 2 장

강원도의 보육여건

1. 보육 여건의 변화 전망
2. 보육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 보육 욕구 진단

1 보육 여건의 변화 전망

1. 일반적인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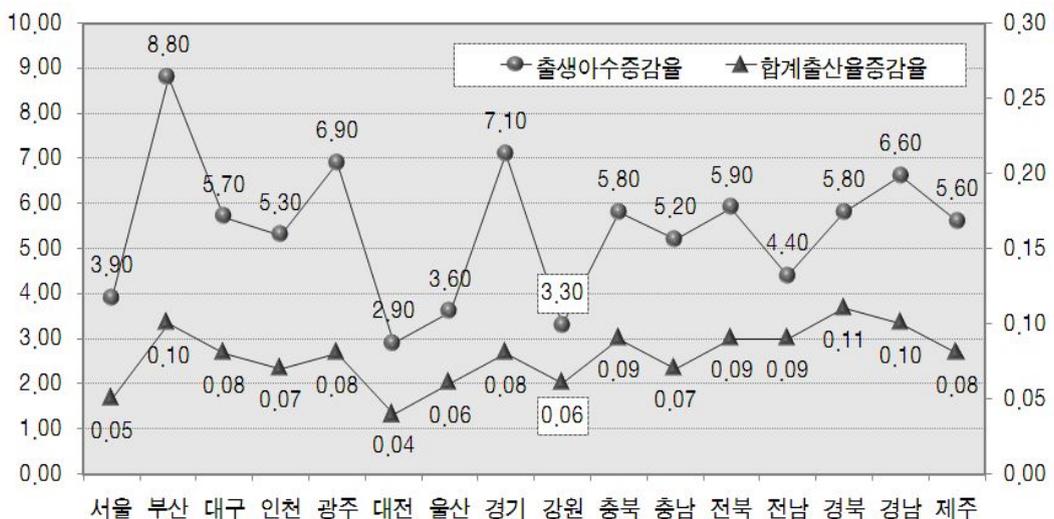
1) 저출산의 지속

○ 2009~2010년 전국 16개 시·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함.

- 그러나 강원도의 상승폭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

※ 출생아 수 증감율 : 3.30%로서 16개 시·도 중 대전(2.90%) 다음으로 낮은 수준

※ 합계출산율 증감율 : 0.06%로서 16개 시·도 중 대전(0.04%), 서울(0.05%) 다음으로 낮고, 경기도 등 9개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



주: 2010년은 잠정치로 기준으로 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

그림 2-1. 2009년 대비 2010년(잠정치)의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감률

- 이처럼 지속적인 저출산의 상황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자녀양육 지원이 요구됨.

2) 보육대상 아동인구의 감소

- 강원도의 보육대상아동인 영유아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계획의 종료시점인 2016년에는 2000년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2011년을 기준으로 본 계획이 추진되는 시점 이전과 이후의 강원도 보육대상 아동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까지 강원도 보육대상 영유아인구는 2000년 119,553명에서 2011년 75,635명으로 36.75%(43,936명)가 감소함.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유아 인구는 72,552명에서 61,425명으로 15.33%(11,124명)가 감소할 전망이다.
- 2000~2011년까지의 강원도의 영유아인구는 매년 평균 4.07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강원도의 전체 인구 감소율(매년 0.107%)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강원도의 전체 인구대비 영유아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6~7%대, 2006년 이후에는 5%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4%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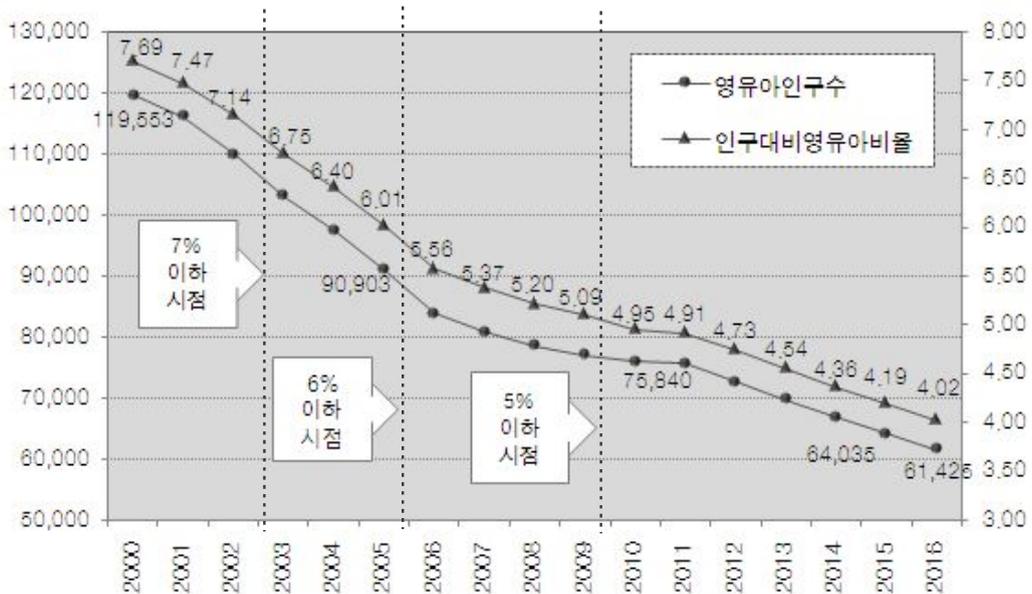


그림 2-2. 강원도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수 및 비율 변화 추이

표 2-1. 강원도의 보육대상 아동인구 규모 변화 추이

연도	전체 인구 수 (명)	보육대상 아동 인구 수(명)			전체 인구대비 보육대상 아동 비율(%)			
		영아	유아	소계	영아	유아	소계	
주민등록인구	2000	1,554,688	57,179	62,374	119,553	3.68	4.01	7.69
	2001	1,552,407	54,750	61,290	116,040	3.53	3.95	7.47
	2002	1,538,720	50,692	59,137	109,829	3.29	3.84	7.14
	2003	1,527,034	45,426	57,641	103,067	2.97	3.77	6.75
	2004	1,521,375	42,517	54,819	97,336	2.79	3.60	6.40
	2005	1,513,110	39,902	51,001	90,903	2.64	3.37	6.01
	2006	1,505,420	37,893	45,835	83,728	2.52	3.04	5.56
	2007	1,503,806	37,899	42,826	80,725	2.52	2.85	5.37
	2008	1,508,575	37,874	40,600	78,474	2.51	2.69	5.20
	2009	1,512,870	37,836	39,110	76,946	2.50	2.59	5.09
	2010	1,529,818	36,623	39,217	75,840	2.39	2.56	4.95
	2011	1,536,448	36,672	38,963	75,635	2.38	2.53	4.91
	증감수(명)	▼18,240	▼20,525	▼23,411	▼43,936	-	-	-
	전체증감율(%)	▼1.17	▼35.89	▼37.53	▼36.75	-	-	-
연평균증감율(%)	▼0.107	▼3.957	▼4.187	▼4.077	-	-	-	
추계인구	2012	1,534,800	35,221	37,331	72,552	2.29	2.43	4.73
	2013	1,533,155	33,827	35,768	69,594	2.21	2.33	4.54
	2014	1,531,511	32,488	34,270	66,757	2.12	2.24	4.36
	2015	1,529,868	31,202	32,835	64,035	2.04	2.15	4.19
	2016	1,528,228	29,968	31,460	61,425	1.96	2.06	4.02
	증감수(명)	▼6,572	▼5,253	▼5,871	▼11,124	-	-	-
	전체증감율(%)	▼0.43	▼14.92	▼15.73	▼15.33	-	-	-

주: 1) 2000~2011년은 주민등록인구

2) 현재 통계청의 공식적인 추계인구는 2005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이 추계통계자료가 2006~2011년의 실제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수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12~2016년의 전체 인구 및 보육대상 아동(영아, 유아) 수는 추계인구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2000~2011년의 연평균증감율 반영하여 별도로 산출.

3) 추계인구의 연평균증감율은 주민등록인구의 연평균증감율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대상 아동인구의 감소 추세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규모 영향을 줄 것임.

- 먼저, 현재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대상 아동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는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보육대상 아동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군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의 증가폭이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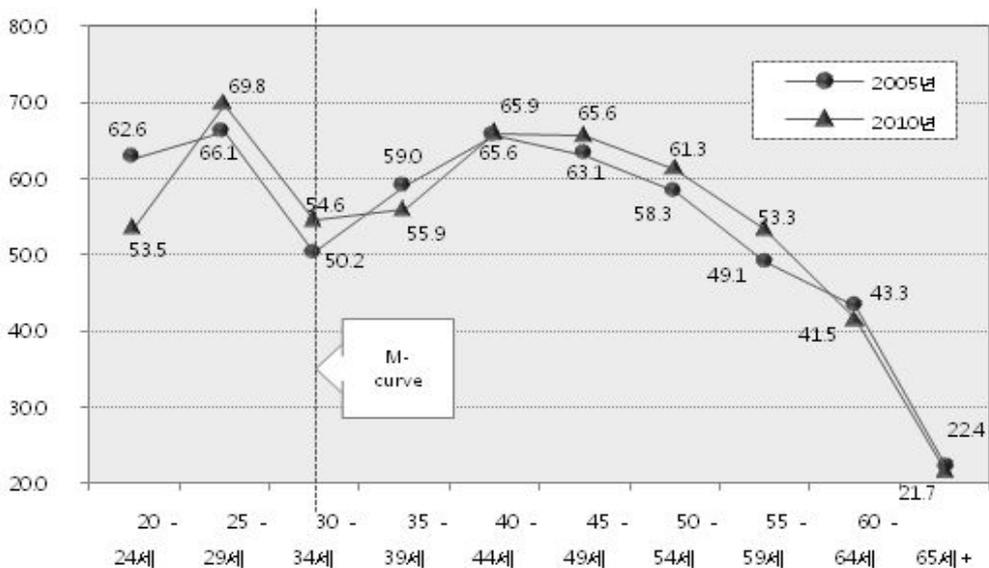
- 따라서 향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린이집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3) 여성의 경력단절(M-curve) 현상의 지속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보육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도 현재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9.8%, 54.6%로 2005년도(25~29세 66.1%, 30~34세 50.2%)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두 연령대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또한 2010년도 현재 35~3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9%로서 30~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54.6%)에 비해 상승폭이 1.3%p에 불과하여 과거(2005년도)와 비교해 볼 때, 경력단절이 장기화됨.

※ 2005년도 35~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서 30~34세(50.2%)에 비해 8.8%p 상승함.



주: 15~29세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외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5년 vs 2010년)

- 이는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보육사업이 일하는 여성의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취업모 자녀의 보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4) 다양한 보육수요의 확대; 영아, 다문화, 맞벌이 등

- 그간 정부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지원을 확대해 왔음. 그런데 이러한 수요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1) 영아 보육수요

- 먼저 2009년 7월부터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기본보육료: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부문 어린이집(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
 - 다음의 표 2-2는 기본보육료로 전환되기 이전의 ‘기본보조금’제도 하에서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유아에 비해 영아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미취업모의 영아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 취업모의 영아 이용률은 25.8% → 51.3%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미취업모의 영아는 6.0% → 23.0%로 거의 4배가 증가

표 2-2.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변화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모		취업모		미취업모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25.8	51.3	6.0	23.0	50.4	51.1	31.6	48.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서」, p.115, 여성부·육아정책연구원, 「200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의 자료를 재구성

- 이처럼 증가하는 영아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 프로그램, 환경 등 보육서비스의 기반이 정비되어야 함.

(2) 다문화 가정의 보육수요

-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가정의 2세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전국의 다문화아동 증가추이(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료 지원 기본계획) : ('08) 33천명 → ('09) 62천명 → ('10) 72천명
- 2010년 말 현재 강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는 모두 4,356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매년 다문화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어린이집 이용대상 연령의 아동 수도 일정규모로 유지될 것임.

표 2-3. 강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2010)

계	시·군별 자녀 수(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거상	양양
4,356	490	797	241	101	109	131	196	416	258	177	235	235	253	153	182	106	170	106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2010. 12)

-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 빈곤, 가족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유아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인력,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함.

(3) 맞벌이 가구의 보육수요

- 맞벌이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정부는 이들 맞벌이 가구의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보육료 지원기준에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였음. 이러한 제도 변화 또한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맞벌이 가구의 수요 증가는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적합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필요로 함. 현재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제고가 필요함.

2. 제도적인 여건 변화

1) 정부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대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여 보육료 지원 기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를 보육료 지원 기준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2011년도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예산은 2조475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정도(347억원)가 증가하였고, 2005년(603억원)과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증가됨.

표 2-4.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보육예산 변화 추이(2005~201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국	6,025억원	7,912억원	10,435억원	14,677억원	17,104억원	21,275억원	24,754억원
강원도	415억원	538억원	589억원	714억원	928억원	957억원	1,152억원

자료: 여성가족부 예산서(2005~2007), 보건복지부 예산서(2008년 이후); 강원도 내부자료

- 이러한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011년 보육료 지원예산은 1,935억원이고 전체 보육예산의 78.2%를 차지함.
 - 이는 2005년의 44.3%(267억원)과 비교해 보면, 33.9p% 증가한 것으로, 보육료 지원예산은 매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5.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5~201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국	보육료 지원 예산(억원)	2,671	4,386	7,263	10,876	12,822	16,322	19,346
	전체 보육예산 대비 비율(%)	44.3	55.4	69.6	74.1	75.0	76.7	78.2
강원도	보육료 지원 예산(억원)	169	258	313	370	625	643	800
	전체 보육예산 대비 비율(%)	40.7	48.0	53.1	51.8	67.3	67.2	69.4

자료: 여성가족부 예산서(2005~2007), 보건복지부 예산서(2008년 이후); ; 강원도 내부자료

- 이러한 보육예산의 확대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모의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규모 즉, 어린이집 이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만족스러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증액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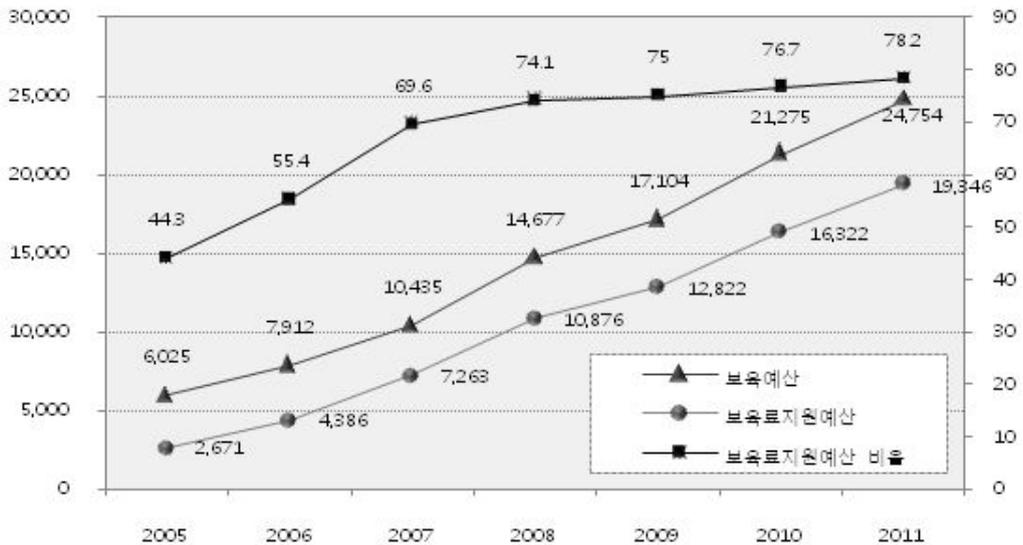


그림 2-4. 보육예산 규모 변화 추이(2005~2011)

2) 누리과정(만5세아 공통학년제)의 도입; 무상보육의 확대

- 정부는 지난 5월 3일 2012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은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만5세아 공통학년제 도입”을 발표함.

표 2-6. 만 5세아 공통학년제 도입 전 · 후 비교

구분	현행	향후
교육과정	<p>유아교육,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유치원교육과정 ○ 어린이집 : 표준보육과정 	<p>공통과정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아 유아공통과정’으로 일원화 ○ 기본소양과 인성내용 강화 ○ 초등 1·2학년군과 연계 강화
담당기관	<p>유치원,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 유치원 ○ 보육 : 어린이집 	<p>현행 유지</p>
교사자격	<p>유치원교사, 보육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유치원 정교원 1·2급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3급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유치원 교원 1·2급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2급(일부지역 3급 교사)
지원대상	<p>소득하위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비 : 소득하위 70% ○ 어린이집 보육료 : 소득하위 70% 	<p>전 계층(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 전 계층
지원단가	<p>월 17.7만원</p>	<p>월 30만원으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20만원 → '14년 24만원 → '16년 30만원
재원부담	<p>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비-지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어린이집 보육료 : 국비-지방비 	<p>지방교육재정교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만 5세아 보육료 절감 재원 : 4세 이하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으로 활용
관리체계	<p>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 ○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지자체) 	<p>현행 유지</p>

자료: <http://korea.kr>

- ‘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 만 5세의 모든 아동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임.
 - ※ 현재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보육료 지원확대는 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과의 경쟁체제 속에서,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특히 공통과정 담당교사를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1·2급 자격소지자 제한 기준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강원도 시·군에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공통과정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출 경우, 다른 연령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1·2급 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이 계획에 의하면, 소요재원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만5세아 보육료 미집행 예산 약 2,0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 2011년 만5세아 보육료: 전체 2,048억원, 국고는 1,012억원, 지방비 1,036억원
 - 강원도의 경우도 미집행된 만5세아 보육료 예산을 보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확대

- 정부는 2011년 5월, 같은 해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공형 어린이집은 초기비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대신에 민간부문 어린이집에 공공재원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유권, 인사권, 운영권 즉,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통제권을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통한 '공공성'확보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린이집은 공공성 확보와 민간어린이집 지원의 2가지 목적을 형식적으로는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고, 민간의 강한 요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2-7.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요

구분	내용					
기본개념	○ 우수한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대상	○ 민간 개인·가정어린이집					
선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90점 이상 ○ 신청일 현재, 정원 충족율 70% 이상 ○ 유아 현원 10명이상, 유아 현원 총 현원의 40% 이상(가정은 조정예정) ○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건물 소유(자가 등) ○ 1급 보육교사 비율 등 ○ 행정처분·아동학대·급식사고 발생, 인건비 지원시설 제외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	20인 ↓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월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어린이집 브랜드화 ○ 지자체 특수시책예산(자체 지방비)우선 지원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부여 ○ 보육료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 ○ 보육교사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1호봉을 최저선으로) ○ 어린이집 상세정보 주기적 공개 ○ 클린카드 도입(12년부터 시행) 					
품질관리체계	○ 교육 및 컨설팅, 지정 계약제 도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수시점검					
시범사업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본 사업시 편입 검토) ○ 시도별로 선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선정 ○ 모니터링 및 평가 : 일부 어린이집 panel 구성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집

4) 평가인증제도의 강화

-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2009년까지 제1차 평가인증 시행시기가 완료되고,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2차 평가인증부터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거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정지침기준을 평가인증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음.
 - ※ 2011년 4월 28일자,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개정(안)에 의하면, 평가인증지표 중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갯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하던 것을, 3월에 발표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 방안」에 의한 지침의 준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함.
-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등에 '평가인증통과'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인증을 지원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발표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본신청자격에서도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이라는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준이므로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임.

5) 양육수당의 확대

- 보육서비스 또는 교육서비스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됨.
- 2011년 정부는 2010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0~1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양육수당을 확대함.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 연령별 지원 수준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10만원을 매월 지급
- 그러나 이러한 양육수당의 수준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유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음. 향후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확대될 경우,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여부와 시설 이용여동과 형평성있는 지원 수준(금액) 등에 대한 강한 요구가 제기될 것임.
 - 또한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 수준으로 형평성있게 상향조정될 경우, 특히 영아를 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자녀를 보육하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6) 특별활동 실시 제한 강화

- 정부(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그간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제한 없이 운영됨으로 인해 ① 영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증가, ② 부모의 비용부담 증가, ③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의 체감도 하락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현장에서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함.

표 2-9.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시·운영 현황

구분	내용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율	○ 전체 어린이집 중 95.4%
별도 비용 수납 여부	○ 별도 비용 수납 어린이집 비율: 53% / 무료 운영 어린이집 비율: 42.4%
유료 운영 프로그램 수	○ 영아 대상 평균 프로그램 수: 2.39개 - 1개 25.1%, 2개 34.5%, 3개 25.6%, 4개 9.2%, 5개 이상 - 민간 2.63개, 법인 2.21개, 국공립 2.06개, 직장 1.94개 ○ 유아 대상 평균 프로그램 수: 3.24개 - 1개 9.8%, 2개 23.2%, 3개 30.9%, 4개 18.0%, 5개 이상 18.0% - 민간 3.45개, 가정 2.65개, 법인 3.22개, 국공립 3.20개, 직장 3.16개
프로그램 종류	○ 인지(한글, 수학, 과학 등), 외국어(영어 등),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등), 교구 이용(레고 등) 등 100여 종류 ○ 영어과목 운영 시설 61.8%로 최다
운영시간대	○ 오전 46%, 오후 26%, 오전·오후 모두 26.5%
운영형태	○ 외부강사(영어 및 예체능, 컴퓨터) 초빙 또는 시설 자체 보육교사가 담당
비용	○ 월평균 추가부담 비용: 4만4천원 수준 / 과목당 비용: 월평균 1~2만원 수준
비용결정 방식	○ 운영위원회 심의 30.9%, 시설 자체 결정 29.4%, 부모 의견 일부 수렴 28.8%
선택권	○ 모든 아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55.1% ○ 비참여자가 있는 시설의 활동 내용 - 교사와 자율활동 40.8%, 별도 프로그램 실시 46.3%, 특별한 것이 없음 12.9%

주: 2007년 및 2009년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2011. 3),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방안

- 2007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중 95.4%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대부분이 유료로 운영되어 월 평균 4만4천원 정도를 보호자가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오전, 오후 시간 모두 제한 없이 운영되고,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도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운영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 (12.1%)는 시설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표 2-9 참조).

-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및 관리·감독 방안’에 의하면, 부모동의서 의무화, 영아에 대한 운영금지, 오전 중 운영금지, 보육교사의 특별활동 모니터링, 비용 상한선 설정 등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함(표 2-10 참조).
-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어린이집의 비용보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던 특별활동의 실시 가능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0.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시 및 관리·감독 방안

구분	내용	
특별 활동 실시 방안	선택권 보장	○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부모와 협의 후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실시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참여연령 제한	○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특별활동 운영 금지(연차적 시행) - 2011년부터: 12개월 미만 영아 금지 / 2012년 3월부터: 12~23개월 영아 금지
	운영시간대 제한	○ 오전 일과 시간: 보육과정만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낮잠 이후 시간대): 특별활동 운영 가능
	시설 관리 강화	○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 모니터링 실시(비참여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 우선)
	비용수납원칙	○ 개별 과목당 상한선 대신 월별 총 비용에 대한 상한선 설정
특별 활동 관리 감독 방안	정보공개	○ 특별활동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을 관리·공개(보육포털)하여 투명성 확보
	비용구분계리	○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세입 및 세출)하도록 재무회계규칙 개정
	평가인증 반영	○ 미준수시 평가인증에서 일정한 페널티(penalty) 부여
	법제화	○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2011. 3),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방안

7)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69조에 의거,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법정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가산임금 즉,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해야 함.
 - 1일 12시간(7:30~19:30) 운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원, 보육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임.

※ 2011년 5월 13일 한국어린이집연합회와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주40시간근무에 맞춘 매뉴얼 마련, 9월부터 종일제 보육시간 이외에 8시간 보육시간에 맞춘 새로운 보육과정을 신설하여 시범사업 실시, 2012년도 예산에 보육교사 담임수당 반영 등 대안을 제시함.

3. 보육 여건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일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보육정책을 둘러싼 일반적인 주요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과 보육계획 수립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여건 변화	전망	시사점
저출산의 지속	●안정된 자녀양육 기반 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정책 및 지원 강화 요구 증가	안정된 보육서비스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어린이집 확대 필요
보육대상 아동인구의 감소	●시·군간 보육수요 차이에 따른 어린이집간 운영기반의 차이 발생	군단위 지역(농어촌) 보육서비스 공급구조 개편 필요
여성의 경력단절(M-curve) 현상의 지속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및 질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지속적인 증가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필요
다양한 보육수요의 확대; 영아, 다문화, 맞벌이 등	●영아의 시설보육과 가정보육 간 수요 갈등 발생 ●영아, 다문화·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요구 증가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필요

그림 2-5. 일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2) 제도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보육정책을 둘러싼 제도적인 주요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과 보육계획 수립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여건 변화	전망	시사점
정부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정 확대에 비례하는 공공성 확대 불투명 	공보육서비스(공공어린이집) 공급기반의 적극적인 확충 필요
누리과정(만5세아 공통학년제)의 도입; 무상보육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아동 대상 무상보육 확대: 민간부문의 보육료 차액 부분에 대한 수요자 부담 지속 → 완전 무상보육 확대 불투명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형평성있는 처우(봉급)에 대한 요구 증가 ● 도내 보육아동가정 소득수준기준에 따른 지원 사업과 제도 운영의 갈등 발생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 차액 관리 방안 모색 필요 중앙정부 차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 사업 재정비 및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예: 저소득아동 입소료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지속적 강화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선정 및 운영기준 등
평가인증제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과 정부의 지원 연계의 지속적인 강화 	합리적인 평가인증제도 운영 방안 모색; 연계가능한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양육수당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확대 전망에 따라 가정내 보육 아동과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증가 	중앙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양육수당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특별활동 실시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제한에 따른 갈등 발생 → 특별활동 실시 허용에 대한 요구 증가 	표준보육(누리)과정 운영 및 보육교사 역할의 내실화 필요
5~20인 사업장 근로자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어린이집 운영 여건(법정 어린이집 운영시간, 차량지도 및 휴일당직 등)과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민간부문)어린이집 운영자의 정부지원 요구 증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차량지도, 휴일당직 등의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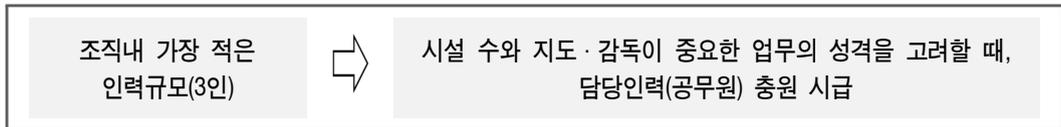
그림 2-6. 제도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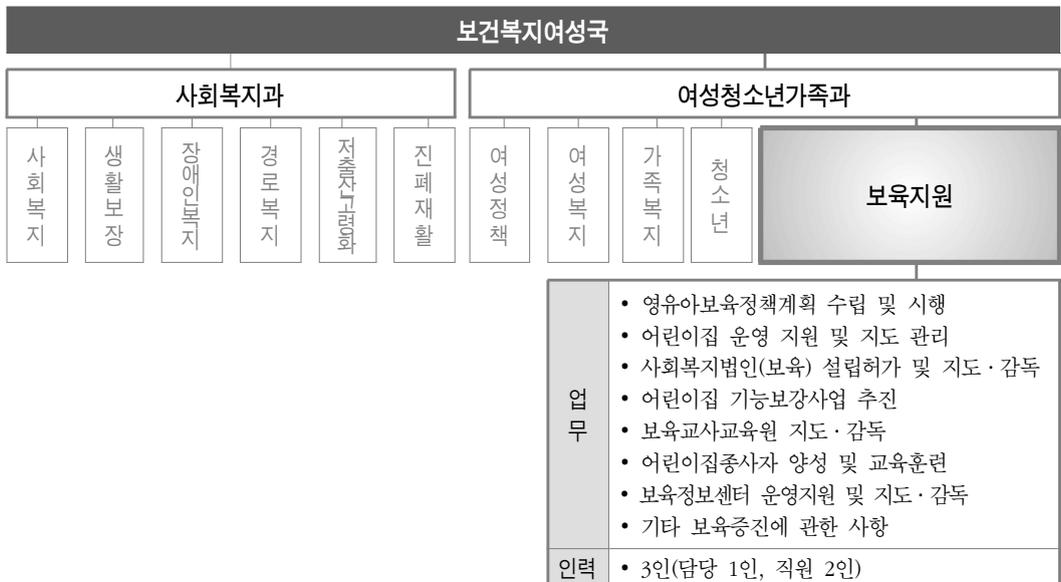
보육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조직 및 주요 사업

1) 조직; 사업추진 부서



- 2011년 현재 강원도의 보육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 내 “보육지원”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총 3명(담당 1인, 직원 2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주: 보건복지여성국내 보건 분야의 조직도는 생략함.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방문일: 2011. 4)

그림 2-7. 보육 및 저출산 업무 담당 조직 및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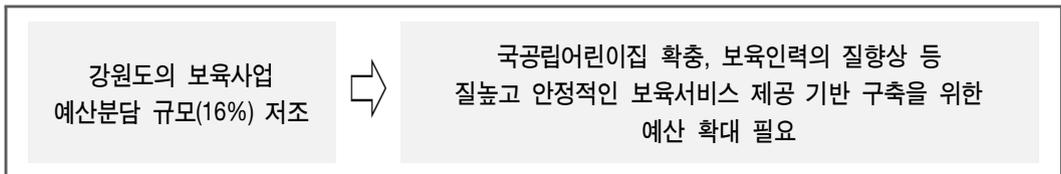
- 보건복지여성국내 조직별 담당인력 수를 비교해 보면, 보육지원업무는 가장 적은 인력이 수행하고 있음.
 - 보육지원업무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종사자,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예산배정, 지도·감도, 민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3명의 인력이 담당하기에는 절대적인 인력규모가 부족하므로 증원이 필요함.

표 2-11. 보건복지여성국내 부서별 업무 담당인력 규모

구분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사회복지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경로복지	저출산고령화	진폐재활	여성정책	여성복지	가족복지	청소년	보육지원
담당인력 수 (명)	8	6	7	6	4	3	4	4	4	5	3

주: 보건 분야의 조직도는 생략함.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방문일: 2011. 4)

2) 사업: 사업명 및 예산



- 2011년 현재 강원도 보육사업은 크게 어린이집종사자 지원, 아동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사업의 주요한 주체인 어린이집종사자, 보육아동, 어린이집에 대한 경제적 사업으로 구성되고, 다음은 도보육정보센터와 종사자보육교육, 어린이집 관련 행사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이 추진 중임.
-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1,739억원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문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총 1,252억원 정도임. 이러한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전체 예산의 72.0%나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25.1%(426억원)를 차지함. 어린이집지원은 44억원(2.6%) 정도이고, 나머지 0.3%(약 6억원)가 보육인프라 구축에 소요됨.

표 2-12. 강원도 보육시책 추진 현황(2011)

사업명	대상	사업량	금액(천원)				비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	도	시군	
총계			173,901,510	82,901,635	26,713,614	64,286,261	48	15	37	
보육 인프라 구축	도보육정보센터운영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1개소	346,000	173,000	173,000	-	50	50	-
	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강릉)	강릉 보육정보센터	1개소	60,000	-	12,000	48,000	-	20	80
	어린이집종사자보수교육	어린이집 종사자	680명	53,256	26,628	26,628	-	50	50	-
	어린이집한마음대회,전국보육 인대회	행사 운영비	1회	100,000	-	30,000	70,000	-	30	70
	소계			559,256 (0.3%)	199,628 (0.2%)	241,628 (0.9%)	118,000 (0.2%)	36	43	21
보육 시설 종사자 지원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어린이집 종사자	4,271명	40,047,725	20,088,686	5,987,712	13,971,327	50	15	35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 개선비	민간어린이집 종사 자	2,959명	2,840,640	-	568,128	2,272,512	-	20	80
	어린이집종사자격무수당	어린이집 종사자	6,225명	622,500	-	124,500	498,000	-	20	80
	장애아전담시설보육교사수당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35명	33,600	-	6,720	26,880	-	20	80
	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지원	보수교육참석자	500명	87,500	-	17,500	70,000	-	20	80
소계			43,631,965 (25.1%)	20,088,686 (24.2%)	6,704,560 (25.1%)	16,838,719 (26.2%)	46	15	39	
아동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70%이하 아 동(어린이집 이용)	27,937명	116,651,239	58,032,526	17,585,614	41,033,099	50	15	35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차상위이하 아동(재 가보육)	3,005명	5,742,758	2,747,731	898,508	2,096,519	48	16	37
	저소득층아동입소지원	소득하위 70%이하 아동(어린이집 이용)	27,467명	1,373,350	-	274,670	1,098,680	-	20	80
	어린이집이용셋째아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70%이상 아동중 셋째아	1,300명	1,507,110	-	301,422	1,205,688	-	20	80
	소계			125,274,457 (72.0%)	60,780,257 (73.3%)	19,060,214 (71.4%)	45,433,986 (70.7%)	49	15	36
보육 시설 지원	어린이집 확충지원	국공립시설 신축비	5개소	1,122,860	561,430	168,430	393,000	50	15	35
	어린이집환경개선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외	30개소	702,380	351,190	105,358	245,832	50	15	35
	장애아환경개선(장비비)	장애아 전담어린이 집	3개소	9,000	4,500	1,350	3,150	50	15	35
	어린이집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민간 어린이집 및 농어촌소재 어린이 집	438개소 /230대	1,027,792	513,896	154,169	359,727	50	15	35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 집	50개소	837,600	402,048	130,665	304,887	48	16	36
	어린이집동절기난방연료비	어린이집	1,026개소	461,700	-	92,340	369,360	-	20	80
	어린이집교재교구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245개소	274,500	-	54,900	219,600	-	20	80
	소계			4,435,832 (2.6%)	1,833,064 (2.2%)	707,212 (2.6%)	1,895,556 (2.9%)	41	16	43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2011년)

- 보육사업의 예산 부담 주체에 따른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48%, 도비 15%, 시·군비 37%로 국비부담이 약 829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비 부담률은 가장 낮아 27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음. 특히 국비지원이 없는 도 자체사업의 부담률은 20%정도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시·군이 부담하고 있음.
-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의 보육사업 예산을 보면, 22,407백만원이 증가, 전년대비 14.3%의 증가율을 보임.
 - － 부문별로 보면, 보육인프라구축은 0.1%p, 보육아동지원 2.5%p, 어린이집지원 0.9%p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종사자 지원은 금액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2010년 28.6%에서 2011년 25.1%로 3.5%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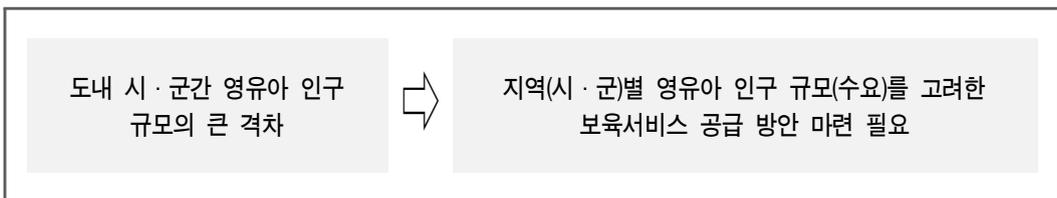
표 2-13. 강원도 보육사업 예산 변화(2010, 2011)

사업분야	2010년도		2011년도		증감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보육인프라구축	344	0.2	559	0.3	215	0.1%p
어린이집종사자지원	43,256	28.6	43,631	25.1	－ 376	－ 3.5%p
아동지원	105,322	69.5	125,274	72.0	19,953	2.5%p
어린이집지원	2,572	1.7	4,455	2.6	1,884	0.9%p
계	151,494	100.0	173,901	100.0	22,407	14.3%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2010년, 2011년)를 재구성함.

2. 보육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1)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1) 시·도별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사업의 대상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는 264만명으로 전체 인구(4,799만명)의 5.5%를 차지함.

- 강원도의 영유아 인구는 74,441명으로 전체 인구(146만)의 5.1% 정도가 됨. 영유아 인구수는 16개 시·도 중 제주, 울산 다음으로 적고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부산, 서울, 대구, 경북 다음으로 낮음.
- 강원도의 전체 영유아 중 영이는 36,238명이고, 유아는 38,203명으로 유아의 인구 규모가 조금 크게 나타남.

표 2-14. 16개 시·도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현황(2010)

지역	전체 인구수 (명)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명)								전체 영유아 인구수 (명)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비율 (%)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계	3세	4세	5세	계		
전국	47,990,761	437,452	426,807	456,798	1,321,057	467,426	430,601	423,102	1,321,129	2,642,186	5.5
서울	9,631,482	81,772	77,019	81,531	240,322	82,193	75,152	73,434	230,779	471,101	4.9
부산	3,393,191	25,073	23,884	25,606	74,563	25,913	23,934	23,919	73,766	148,329	4.4
대구	2,431,774	19,736	19,377	20,960	60,073	21,538	20,056	20,226	61,820	121,893	5.0
인천	2,632,035	24,485	24,272	25,835	74,592	26,573	24,282	23,484	74,339	148,931	5.7
광주	1,466,143	14,140	14,039	14,956	43,135	15,433	14,446	14,204	44,083	87,218	5.9
대전	1,490,158	13,879	13,741	14,838	42,458	15,340	14,186	14,143	43,669	86,127	5.8
울산	1,071,673	10,915	10,530	11,280	32,725	11,492	10,338	10,175	32,005	64,730	6.0
경기	11,196,053	115,983	114,932	123,894	354,809	127,190	117,225	114,240	358,655	713,464	6.4
강원	1,463,650	11,954	11,782	12,502	36,238	13,288	12,321	12,594	38,203	74,441	5.1
충북	1,495,984	13,676	13,303	14,215	41,194	14,605	13,459	13,356	41,420	82,614	5.5
충남	2,000,473	19,310	18,786	20,216	58,312	20,411	18,885	18,068	57,364	115,676	5.8
전북	1,766,044	14,996	14,681	15,851	45,528	16,357	15,312	15,602	47,271	92,799	5.3
전남	1,728,749	14,338	14,076	15,077	43,491	15,584	14,473	14,340	44,397	87,888	5.1
경북	2,575,370	21,460	21,073	22,391	64,924	22,881	21,208	20,887	64,976	129,900	5.0
경남	3,119,571	30,383	30,059	32,021	92,463	32,666	29,692	28,909	91,267	183,730	5.9
제주	528,411	5,352	5,253	5,625	16,230	5,962	5,632	5,521	17,115	33,345	6.3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2010)

(2) 시·군별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 2010년 현재 강원도의 인구는 146만명이고, 이 중 5.1%(74,441명)이 영유아 인구임.

- － 시·군별로 보면, 인구규모가 가장 큰 원주시의 영유아 인구 수가 17,884명으로 가장 많음. 고성군은 전체 인구 수는 양구, 화천, 양양에 비해 많지만, 보육대상 아동인구는 962명에 불과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시지역과 군지역간 영유아 인구규모의 차이가 크고, 그 규모가 작은 군지역의 경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육서비스 공급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표 2-15.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대상아동(영유아) 인구 현황(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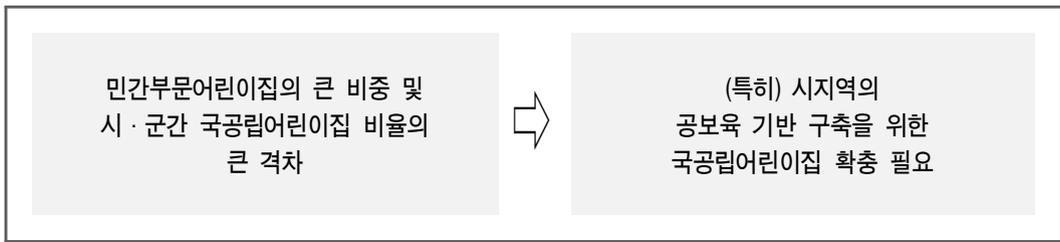
지역	전체 인구수 (명)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명)								영유아 인구수 (명)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비율 (%)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계	3세	4세	5세	계		
강원도	1,463,650	11,954	11,782	12,502	36,238	13,288	12,321	12,594	38,203	74,441	5.1
춘천시	274,220	2,184	2,179	2,355	6,718	2,434	2,270	2,320	7,024	13,742	5.0
원주시	309,803	2,836	2,852	2,998	8,686	3,241	2,901	3,056	9,198	17,884	5.8
강릉시	217,481	1,600	1,615	1,675	4,890	1,821	1,724	1,730	5,275	10,165	4.7
동해시	90,321	733	823	799	2,355	842	821	852	2,515	4,870	5.4
태백시	51,400	479	437	481	1,397	516	470	453	1,439	2,836	5.5
속초시	80,505	684	613	659	1,956	696	694	684	2,074	4,030	5.0
삼척시	67,131	466	447	492	1,405	497	467	499	1,463	2,868	4.3
홍천군	62,540	508	482	527	1,517	554	459	474	1,487	3,004	4.8
횡성군	37,497	240	237	250	727	316	254	281	851	1,578	4.2
영월군	34,880	190	201	199	590	232	254	249	735	1,325	3.8
평창군	37,349	255	227	303	785	292	278	266	836	1,621	4.3
정선군	35,804	279	277	267	823	268	242	253	763	1,586	4.4
철원군	43,109	442	401	439	1,282	435	456	407	1,298	2,580	6.0
화천군	22,015	218	211	239	668	243	197	201	641	1,309	5.9
양구군	19,252	212	179	189	580	204	203	203	610	1,190	6.2
인제군	28,591	331	284	297	912	358	301	305	964	1,876	6.6
고성군	26,458	138	150	170	458	158	178	168	504	962	3.6
양양군	25,294	159	167	163	489	181	152	193	526	1,015	4.0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2010)

- 전체 인구대비 영유아 인구 비율로 보면, 인제군이 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양구군(6.2%), 철원군(6.0%), 화천군(6.0%) 등의 순이며, 영유아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고성(3.6%), 영월(3.8%), 양양(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어린이집

(1) 어린이집 현황



- 2010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38,021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중으로, 2009년말(35,550개소) 대비 7.0%정도(2,471개소)가 증가함.
 - 강원도 소재 어린이집은 1,085개소로서 제주(525개소)와 울산(754개소) 다음으로 어린이집 수가 적은 수준임.
- 운영주체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2009년(48.8%) 대비 2.1%가 증가, 50.9%로 절반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개인어린이집도 36.3%로서 전체 어린이집 중 87.2%가 순수민간부문임.
 - 강원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39.9%로(433개소)로 가장 비중이 높는데, 16개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제주(25.7%), 부산(35.0%), 울산(37.8%)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수준임. 그러나 2009년의 가정어린이집 비중은 32.4%(377개소)로서, 1년 사이에 7.5%p(56개소)가 증가한 것임.
 -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5.3%이고, 법인어린이집은 4.1%임. 강원도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7.0%로 16개 시·도 중 3순위로 나타났지만, 2009년의 8.1%에 비하면 1.1%p 정도 그 비중이 하락한 것임.

-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강원도의 어린이집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16.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현황(2010년말)

지역	어린이집 수(개소)									어린이집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국공립 어린이 집	법인 어린이 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전국	38,021	2,034	1,468	14,677	888	13,789	74	19,367	401	5.3	3.9	38.6	2.3	36.3	0.2	50.9	1.1
서울	5,870	643	43	2,485	207	2,278	20	2,570	109	11.0	0.7	42.3	3.5	38.8	0.3	43.8	1.9
부산	1,689	141	86	848	35	813	4	591	19	8.3	5.1	50.2	2.1	48.1	0.2	35.0	1.1
대구	1,544	37	124	741	35	706	5	623	14	2.4	8.0	48.0	2.3	45.7	0.3	40.3	0.9
인천	1,857	98	10	768	23	745	2	953	26	5.3	0.5	41.4	1.2	40.1	0.1	51.3	1.4
광주	1,192	31	107	410	25	385	2	627	15	2.6	9.0	34.4	2.1	32.3	0.2	52.6	1.3
대전	1,535	29	42	443	18	425	2	997	22	1.9	2.7	28.9	1.2	27.7	0.1	65.0	1.4
울산	754	30	13	414	6	408	-	285	12	4.0	1.7	54.9	0.8	54.1	-	37.8	1.6
경기	11,273	464	73	3,771	130	3,641	33	6,837	95	4.1	0.6	33.5	1.2	32.3	0.3	60.6	0.8
강원	1,085	76	117	448	47	401	3	433	8	7.0	10.8	41.3	4.3	37.0	0.3	39.9	0.7
충북	1,112	47	108	449	36	413	1	493	14	4.2	9.7	40.4	3.2	37.1	0.1	44.3	1.3
충남	1,687	61	134	636	65	571	1	840	15	3.6	7.9	37.7	3.9	33.8	0.1	49.8	0.9
전북	1,531	49	166	555	78	477	-	756	5	3.2	10.8	36.3	5.1	31.2	-	49.4	0.3
전남	1,135	68	179	423	55	368	1	456	8	6.0	15.8	37.3	4.8	32.4	0.1	40.2	0.7
경북	1,998	115	86	896	41	855	-	885	16	5.8	4.3	44.8	2.1	42.8	-	44.3	0.8
경남	3,234	125	103	1,103	47	1,056	-	1,886	17	3.9	3.2	34.1	1.5	32.7	-	58.3	0.5
제주	525	20	77	287	40	247	-	135	6	3.8	14.7	54.7	7.6	47.0	-	25.7	1.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2010년 10월 현재 강원도의 어린이집 수는 1,085개소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시설은 가정(433개소, 39.3%), 다음은 민간(448개소, 41.3%)로 순수민간어린이집 비중이 80.6%임.
-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원주(311개소)로서 2009년 대비 11개소가 증가함. 다음은 춘천으로 2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강릉에는 17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지역은 각각 10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양양과 정선 그리고 13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양구와 고성 등임.

-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횡성, 영월, 양구 등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며, 고성
은 법인 어린이집이, 정선군은 민간어린이집이 전무함.
- 시·군별로 시설유형별 비율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특히 태백시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47.6%로 거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지역은 전체 평균에
미달하고 있음.

표 2-17.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현황(2010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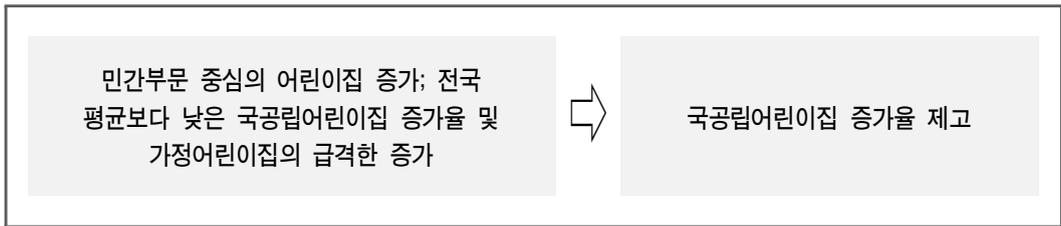
지역	어린이집 수(개소)									어린이집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강원도	1,085	76	117	448	47	401	3	433	8	7.0	10.8	41.3	4.3	37.0	0.3	39.9	0.7
춘천시	217	7	17	90	9	81	1	101	1	3.2	7.8	41.5	4.1	37.3	0.5	46.5	0.5
원주시	311	12	15	97	8	89	1	183	3	3.9	4.8	31.2	2.6	28.6	0.3	58.8	1.0
강릉시	174	4	22	91	3	88	1	54	2	2.3	12.6	52.3	1.7	50.6	0.6	31.0	1.1
동해시	57	2	6	24	2	22	-	24	1	3.5	10.5	42.1	3.5	38.6	-	42.1	1.8
태백시	21	10	2	7	1	6	-	2	-	47.6	9.5	33.3	4.8	28.6	-	9.5	-
속초시	66	3	5	34	2	32	-	24	-	4.5	7.6	51.5	3.0	48.5	-	36.4	-
삼척시	34	8	2	17	1	16	-	7	-	23.5	5.9	50.0	2.9	47.1	-	20.6	-
홍천군	44	3	6	24	6	18	-	10	1	6.8	13.6	54.5	13.6	40.9	-	22.7	2.3
횡성군	24	1	9	9	2	7	-	5	-	4.2	37.5	37.5	8.3	29.2	-	20.8	-
영월군	15	1	6	4	3	1	-	4	-	6.7	40.0	26.7	20.0	6.7	-	26.7	-
평창군	15	3	3	7	1	6	-	2	-	20.0	20.0	46.7	6.7	40.0	-	13.3	-
정선군	10	2	8	-	-	-	-	-	-	20.0	80.0	-	-	-	-	-	-
철원군	26	2	2	19	2	17	-	3	-	7.7	7.7	73.1	7.7	65.4	-	11.5	-
화천군	18	4	2	7	1	6	-	5	-	22.2	11.1	38.9	5.6	33.3	-	27.8	-
양구군	13	1	7	4	2	2	-	1	-	7.7	53.8	30.8	15.4	15.4	-	7.7	-
인제군	17	5	2	6	3	3	-	4	-	29.4	11.8	35.3	17.6	17.6	-	23.5	-
고성군	13	6	-	5	-	5	-	2	-	46.2	-	38.5	-	38.5	-	15.4	-
양양군	10	2	3	3	1	2	-	2	-	20.0	30.0	30.0	10.0	20.0	-	20.0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따라서 시지역만을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무상보육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공의 보육재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함.

(2) 도내 어린이집 변화 추이



○ 최근 5년간(2005~2009) 강원도의 어린이집 수는 2005년 769개소에서 2009년 926개소로 157개소가 증가하여 17.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20.2%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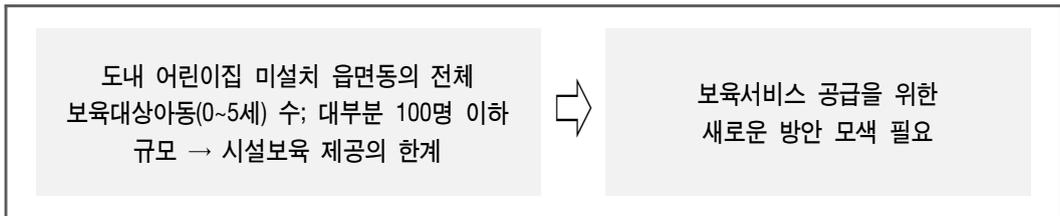
표 2-18. 강원도 어린이집 수 변화 추이(2005~2010)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외	민간개인					
면역	시설수 (개소)	2010	1,085	77	117	51	402	3	426	9
		2009	926	75	116	49	377	2	300	7
		2008	885	74	117	51	365	2	270	6
		2007	832	72	116	50	361	2	225	6
		2006	788	68	113	52	347	3	201	4
		2005	769	64	113	44	352	3	189	4
	2009년 대비 증감율(%)	▲17.0	▲14.7	▲2.6	▲10.2	▲6.6	▽50.0	▲37.0	▲42.9	
	2010년 대비 증감율(%)	▲29.1	▲16.9	▲3.5	▲13.7	▲12.4	-	▲55.6	▲55.5	
전국	시설수 (개소)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66	17,359	370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65	15,525	350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61	13,184	320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59	11,828	298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42	11,346	263
	2009년 대비 증감율(%)	▲20.2	▲23.2	▽1.7	▽4.7	▲4.9	▲36.4	▲34.6	▲28.9	

주: 전국의 2010년도 어린이집 현황은 집계되지 않아, 강원도의 2010년 10월 기준 통계자료만 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강원도 내부자료(2010년 10월 통계)

- 시설유형별로 보면, 동 기간 내에 1개소가 감소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증가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폭은 14.7%로 전국 평균(23.2%)에 비해 낮음.
- 2010년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어린이집의 변화를 보면, 2009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함. 즉, 2005년 대비 2010년의 어린이집 수는 전체적으로 29.1%가 증가하였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협동 어린이집(3개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수가 증가됨.
 -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2009년에 비해 126개소나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증가율(55.6%)도 높아 그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3) 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 2010년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9개 시·군, 총 19개 지역으로 집계됨.
 - 영월군이 5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와 홍천군이 각각 3개 지역, 춘천시와 양양군이 2개 지역, 강릉시,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이 각 1개 지역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모두 읍면으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각 지역별 전체 보육대상 아동 인구 수(0~5세)를 보면, 철원군의 근남면(122명)과 양양군의 현북면(10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0명 이하의 규모이고, 춘천시 북산면, 삼척시 가곡면과 노곡면은 10여명에 불과함.
 - 이들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수요를 100%로 가정하더라도 어린이집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 또한 각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 수를 보면, 1개 반을 구성하기에도 인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시설보육으로 보육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실효성이 상당히 낮음. 더욱이 보육수요가 100% 이하라고 가정할 경우에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보육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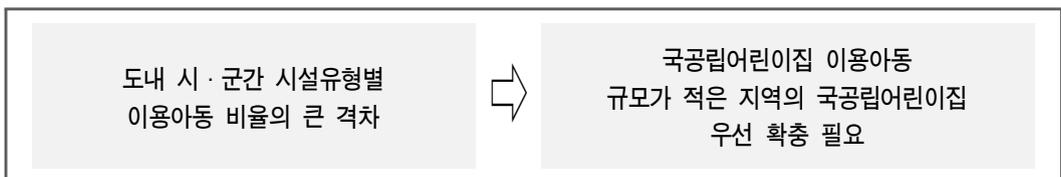
표 2-19.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2010년말)

시군별	읍면동	주민등록상 보육대상(만 0-5세) 아동 수(명)							총인구 수 (명)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개)	19	899	135	152	155	154	155	148	35,780
춘천시(2)	남면	25	3	3	9	4	3	3	1,106
	북산면	14	3	3	2		5	1	876
강릉시(1)	왕산면	25	4	2	6	2	3	8	1,706
삼척시(3)	신기면	16		3	3	2	5	3	798
	가곡면	12	1	4	3		3	1	771
	노고면	11	1	1	3	2	2	2	817
홍천군(3)	두촌면	46	5	8	9	8	8	8	2,416
	내촌면	37	5	4	6	9	6	7	2,353
	서면	74	6	11	9	14	14	20	3,603
횡성군(1)	갑천면	49	2	10	7	13	4	8	2,266
영월군(5)	상동읍	26	6	2	2	7	4	5	1,736
	하동면	41	8	8	6	4	12	3	1,266
	북면	56	11	10	10	7	14	4	1,280
	남면	56	9	8	10	16	7	6	2,382
	수주면	43	5	10	8	8	6	6	1,756
정선군(1)	화암면	61	10	14	15	6	4	12	2,254
철원군(1)	근남면	122	26	20	17	17	23	19	2,351
양양군(2)	서면	81	8	15	15	17	11	15	3,267
	현북면	104	17	16	15	18	21	17	2,776

주: 주민등록상 아동 인구 수임.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 2010년말 현재, 전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정원은 모두 1,556,808명으로 집계됨. 이들 정원 중 민간어린이집이 57.2%(890,733명), 가정어린이집이 21.7%(337,900명)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부문 어린이집 비율이 88.9%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9.9%, 법인어린이집은 9.2%로서 공공부문 어린이집은 19.1%에 불과함.

표 2-20.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정원 현황(2010년말)

지역	보육아동 수(명)									보육아동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전국	1,556,808	153,792	143,841	890,733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9.9	9.2	57.2	4.0	53.2	0.1	21.7	1.8	
서울	236,339	55,061	2,870	126,224	10,338	115,886	637	43,923	7,624	23.3	1.2	53.4	4.4	49.0	0.3	18.6	3.2	
부산	79,526	11,510	7,579	48,560	2,628	45,932	95	10,616	1,166	14.5	9.5	61.1	3.3	57.8	0.1	13.3	1.5	
대구	76,276	2,466	15,031	46,420	2,568	43,852	112	11,260	987	3.2	19.7	60.9	3.4	57.5	0.1	14.8	1.3	
인천	75,533	6,629	1,155	49,445	1,806	47,639	67	16,739	1,498	8.8	1.5	65.5	2.4	63.1	0.1	22.2	2.0	
광주	60,833	2,898	12,609	33,305	1,992	31,313	105	10,906	1,010	4.8	20.7	54.7	3.3	51.5	0.2	17.9	1.7	
대전	50,719	1,632	3,846	24,840	1,097	23,743	82	18,286	2,033	3.2	7.6	49.0	2.2	46.8	0.2	36.1	4.0	
울산	33,091	2,005	931	24,103	542	23,561	-	5,217	835	6.1	2.8	72.8	1.6	71.2	-	15.8	2.5	
경기	387,247	32,883	6,547	220,409	9,853	210,556	918	119,190	7,300	8.5	1.7	56.9	2.5	54.4	0.2	30.8	1.9	
강원	51,927	5,957	10,291	27,360	3,400	23,960	78	7,833	408	11.5	19.8	52.7	6.5	46.1	0.2	15.1	0.8	
충북	58,275	3,837	11,380	33,780	3,221	30,559	39	8,498	741	6.6	19.5	58.0	5.5	52.4	0.1	14.6	1.3	
충남	71,851	3,841	12,550	40,038	4,570	35,468	20	14,195	1,207	5.3	17.5	55.7	6.4	49.4	0.0	19.8	1.7	
전북	72,750	3,199	14,372	42,079	5,971	36,108	-	12,869	231	4.4	19.8	57.8	8.2	49.6	-	17.7	0.3	
전남	66,067	4,743	18,578	34,076	4,659	29,417	73	7,990	607	7.2	28.1	51.6	7.1	44.5	0.1	12.1	0.9	
경북	88,960	6,581	8,997	57,359	3,015	54,344	-	14,814	1,209	7.4	10.1	64.5	3.4	61.1	-	16.7	1.4	
경남	118,204	9,153	8,888	65,964	3,625	62,339	-	33,091	1,108	7.7	7.5	55.8	3.1	52.7	-	28.0	0.9	
제주	29,210	1,397	8,217	16,771	3,413	13,358	-	2,473	352	4.8	28.1	57.4	11.7	45.7	-	8.5	1.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강원도 어린이집 아동정원은 51,927명으로서 국공립 11.5%, 법인 19.8%로서 공공부문 어린이집이 31.3%로서 전국 평균보다 12.2%p나 높는데, 이는 전남(35.3%)과 제주(32.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만 보면, 16개 시·도 중 서울(23.3%)과 부산(14.5%) 다음으로 높고, 9개의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52.7%, 가정어린이집은 15.1%로서 민간부문 어린이집 비율(67.8%)은 전국 평균(88.9%)에 비해 20%p 이상 낮은 수준임.

○ 2010년말 현재 전국 38,021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현원)은 1,279,910명이고, 강원도의 1,085개소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41,292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또한 제주(24,809명)와 울산(27,350명) 다음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적은 규모임.

표 2-21.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현원 현황(2010년말)

지역	보육아동 수(명)									보육아동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전국	1,279,910	137,604	114,054	723,017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10.8	8.9	56.5	4.0	52.5	0.1	22.0	1.7	
서울	206,581	50,513	2,595	109,680	8,791	100,889	553	37,275	5,965	24.5	1.3	53.1	4.3	48.8	0.3	18.0	2.9	
부산	65,822	10,086	6,107	39,357	2,217	37,140	76	9,313	883	15.3	9.3	59.8	3.4	56.4	0.1	14.1	1.3	
대구	61,765	1,962	12,273	37,279	1,904	35,375	106	9,457	688	3.2	19.9	60.4	3.1	57.3	0.2	15.3	1.1	
인천	65,075	5,860	1,041	41,885	1,600	40,285	58	14,985	1,246	9.0	1.6	64.4	2.5	61.9	0.1	23.0	1.9	
광주	48,879	2,263	9,596	26,467	1,681	24,786	64	9,658	831	4.6	19.6	54.1	3.4	50.7	0.1	19.8	1.7	
대전	42,105	1,483	3,365	20,588	938	19,650	77	14,800	1,792	3.5	8.0	48.9	2.2	46.7	0.2	35.2	4.3	
울산	27,350	1,934	857	19,585	486	19,099	-	4,279	695	7.1	3.1	71.6	1.8	69.8	-	15.6	2.5	
경기	320,056	30,503	5,664	178,592	8,178	170,414	787	98,803	5,707	9.5	1.8	55.8	2.6	53.2	0.2	30.9	1.8	
강원	41,292	5,149	8,143	21,532	2,463	19,069	61	6,137	270	12.5	19.7	52.1	6.0	46.2	0.1	14.9	0.7	
충북	45,983	3,358	8,868	26,104	2,438	23,666	28	7,150	475	7.3	19.3	56.8	5.3	51.5	0.1	15.5	1.0	
충남	58,305	3,272	9,574	32,689	3,715	28,974	18	11,896	856	5.6	16.4	56.1	6.4	49.7	0.0	20.4	1.5	
전북	56,531	2,659	11,189	31,795	4,718	27,077	-	10,769	119	4.7	19.8	56.2	8.3	47.9	-	19.0	0.2	
전남	52,903	3,751	14,276	27,178	3,589	23,589	70	7,168	460	7.1	27.0	51.4	6.8	44.6	0.1	13.5	0.9	
경북	69,395	5,453	6,699	44,247	2,515	41,732	-	12,113	883	7.9	9.7	63.8	3.6	60.1	-	17.5	1.3	
경남	93,059	8,047	7,100	51,603	2,960	48,643	-	25,515	794	8.6	7.6	55.5	3.2	52.3	-	27.4	0.9	
제주	24,809	1,311	6,707	14,436	2,933	11,503	-	2,118	237	5.3	27.0	58.2	11.8	46.4	-	8.5	1.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운영주체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민간개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52.5%(671,891명)로 가장 높음. 강원도의 경우도, 민간개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46.2%(19,069명)로 가장 높지만 16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44.6%)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민간부문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14.9%로 전국 평균 22.0%보다 낮고, 제주(8.5%), 전남(13.5%), 부산(14.1%)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음. 2009년말의 강원도의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11.5%로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7.6%)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서울(24.5%), 부산(15.3%), 강원(12.5%) 등의 순으로 강원도가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법인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공공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32.2%(국공립 12.5%, 법인 19.7%)로 34.1%인 전남(국공립 7.1%, 법인 27.0%), 32.3%인 제주(국공립 5.3%, 27.0%)에 이어 세 번째로 공공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강원도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0.7%로 전국 평균(1.7%)에 비해 낮고, 16개 시도 중 전북(0.2%)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2010년말 현재 강원도의 어린이집의 정원은 51,927명이고, 정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원주시(11,824명)이고, 다음은 춘천 강릉, 속초 동해 등으로 대체로 인구 규모가 큰 시지역의 정원 규모가 크게 나타남. 그러나 태백시(1,237명)와 삼척시(1,792명)는 군 지역 중 정원 규모가 큰 홍천군(2,226명)과 철원군(2,088명)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수준임.
- 반면, 양양(487명), 화천(723명), 고성(756명) 등은 18개 시·군에서 정원 규모가 작은 지역임.
- 어린이집 유형별로 정원규모의 분포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52.7%로서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은 법인(19.8%), 국공립(11.5%), 가정(15.1%) 등의 순임.
-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고성군(57.4%)이고, 다음은 태백시(57.0%), 인제군(37.9%), 화천군(31.7%), 정선군(30.8%) 등의 순임. 반면, 강릉시는 국공립 정원 비율이 3.1%에 불과해 가장 낮고, 동해시(5.5%), 철원군(7.4%) 등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반면, 민간어린이집 정원 규모는 철원군이 81.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강릉시(63.3%), 속초시와 홍천군(각각 60.4%) 등의 순임.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주시는 가정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27.5%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임. 아동 수로 보면, 원주의 가정어린이집 정원은 3,249명으로 강원도 전체 가정어린이집 정원(7,833명)의 41.5%가 원주에 분포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보면, 시지역은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비중이 군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음.

표 2-22.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정원 현황(2010년말)

지역	보육아동 수(명)									보육아동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강원도	51,927	5,957	10,291	27,360	3,400	23,960	78	7,833	408	11.5	19.8	52.7	6.5	46.1	0.2	15.1	0.8	
춘천시	10,124	786	1,545	5,770	758	5,012	16	1,925	82	7.8	15.3	57.0	7.5	49.5	0.2	19.0	0.8	
원주시	11,824	1,138	1,407	5,853	685	5,168	26	3,249	151	9.6	11.9	49.5	5.8	43.7	0.2	27.5	1.3	
강릉시	8,465	264	1,770	5,356	139	5,217	36	923	116	3.1	20.9	63.3	1.6	61.6	0.4	10.9	1.4	
동해시	2,907	161	674	1,625	143	1,482	-	427	20	5.5	23.2	55.9	4.9	51.0	-	14.7	0.7	
태백시	1,237	705	163	329	59	270	-	40	-	57.0	13.2	26.6	4.8	21.8	-	3.2	-	
속초시	3,275	277	588	1,978	144	1,834	-	432	-	8.5	18.0	60.4	4.4	56.0	-	13.2	-	
삼척시	1,792	447	271	954	63	891	-	120	-	24.9	15.1	53.2	3.5	49.7	-	6.7	-	
홍천군	2,226	172	489	1,344	407	937	-	182	39	7.7	22.0	60.4	18.3	42.1	-	8.2	1.8	
횡성군	1,473	115	813	445	181	264	-	100	-	7.8	55.2	30.2	12.3	17.9	-	6.8	-	
영월군	888	93	500	215	191	24	-	80	-	10.5	56.3	24.2	21.5	2.7	-	9.0	-	
평창군	922	159	228	498	99	399	-	37	-	17.2	24.7	54.0	10.7	43.3	-	4.0	-	
정선군	931	287	644	-	-	-	-	-	-	30.8	69.2	-	-	-	-	-	-	
철원군	2,088	154	182	1,700	103	1,597	-	52	-	7.4	8.7	81.4	4.9	76.5	-	2.5	-	
화천군	723	229	144	250	35	215	-	100	-	31.7	19.9	34.6	4.8	29.7	-	13.8	-	
양구군	839	79	456	289	144	145	-	15	-	9.4	54.4	34.4	17.2	17.3	-	1.8	-	
인제군	970	368	208	318	194	124	-	76	-	37.9	21.4	32.8	20.0	12.8	-	7.8	-	
고성군	756	434	-	283	-	283	-	39	-	57.4	-	37.4	-	37.4	-	5.2	-	
양양군	487	89	209	153	55	98	-	36	-	18.3	42.9	31.4	11.3	20.1	-	7.4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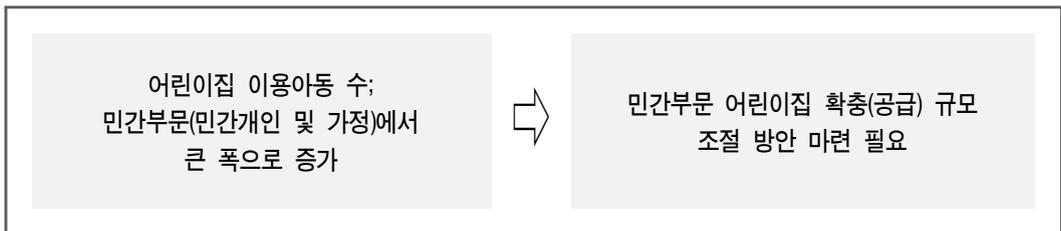
- 현원(이용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말 현재 강원도의 전체 어린이집 현원은 41,292명이고,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 규모는 21,532명(52.1%)를 차지함.
- 지역별로 보면, 정원규모와 마찬가지로 원주시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9,310명으로 가장 많고, 양양(431명), 화천(583명), 고성(659명) 등이 가장 현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비율은 정원에 따른 비율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태백시, 화천군, 인제군 제외)을 보임. 이는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2-23.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현원 현황(2010년말)

지역	보육아동 수(명)									보육아동 분포(100% 기준, %)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강원도	41,292	5,149	8,143	21,532	2,463	19,069	61	6,137	270	12.5	19.7	52.1	6.0	46.2	0.1	14.9	0.7
춘천시	7,997	737	1,347	4,341	609	3,732	12	1,510	50	9.2	16.8	54.3	7.6	46.7	0.2	18.9	0.6
원주시	9,310	967	990	4,665	453	4,212	21	2,576	91	10.4	10.6	50.1	4.9	45.2	0.2	27.7	1.0
강릉시	6,630	215	1,411	4,263	129	4,134	28	632	81	3.2	21.3	64.3	1.9	62.4	0.4	9.5	1.2
동해시	2,473	146	590	1,331	140	1,191	-	394	12	5.9	23.9	53.8	5.7	48.2	-	15.9	0.5
태백시	1,147	630	162	315	58	257	-	40	-	54.9	14.1	27.5	5.1	22.4	-	3.5	-
속초시	2,560	220	512	1,534	109	1,425	-	294	-	8.6	20.0	59.9	4.3	55.7	-	11.5	-
삼척시	1,411	358	171	764	23	741	-	118	-	25.4	12.1	54.1	1.6	52.5	-	8.4	-
홍천군	1,601	142	335	963	216	747	-	125	36	8.9	20.9	60.1	13.5	46.7	-	7.8	2.2
횡성군	1,057	91	608	290	70	220	-	68	-	8.6	57.5	27.4	6.6	20.8	-	6.4	-
영월군	676	80	344	173	150	23	-	79	-	11.8	50.9	25.6	22.2	3.4	-	11.7	-
평창군	772	142	214	397	93	304	-	19	-	18.4	27.7	51.4	12.0	39.4	-	2.5	-
정선군	708	267	441	-	-	-	-	-	-	37.7	62.3	-	-	-	-	-	-
철원군	1,767	145	167	1,410	79	1,331	-	45	-	8.2	9.5	79.8	4.5	75.3	-	2.5	-
화천군	583	168	99	233	29	204	-	83	-	28.8	17.0	40.0	5.0	35.0	-	14.2	-
양구군	676	68	392	206	103	103	-	10	-	10.1	58.0	30.5	15.2	15.2	-	1.5	-
인제군	834	309	178	276	165	111	-	71	-	37.1	21.3	33.1	19.8	13.3	-	8.5	-
고성군	659	381	-	240	-	240	-	38	-	57.8	-	36.4	-	36.4	-	5.8	-
양양군	431	83	182	131	37	94	-	35	-	19.3	42.2	30.4	8.6	21.8	-	8.1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변화 추이



○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는 15.8%가 증가함. 강원도는 1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2-24. 강원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변화 추이(200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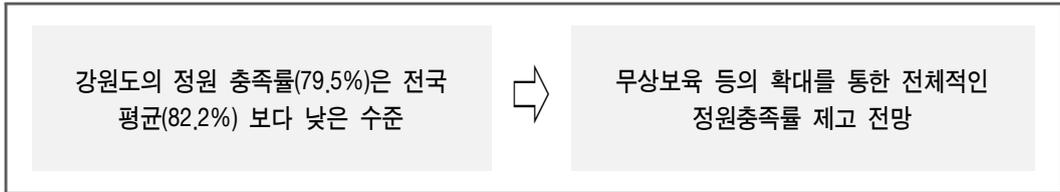
연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외	민간개인					
강원	아동수 (명)	2010	51,320	5,944	10,267	3,400	23,641	78	7,539	451
		2009	37,562	4,963	7,949	2,613	17,490	43	4,313	191
		2008	36,859	4,841	7,871	2,735	17,317	41	3,929	125
		2007	35,632	4,672	8,069	2,714	16,690	38	3,345	104
		2006	33,771	4,552	7,982	3,006	15,361	42	2,753	75
		2005	33,420	4,786	8,798	2,745	14,414	42	2,546	89
	2009년 대비 증감율(%)	▲11.2	▲3.6	▽10.7	▽5.1	▲17.6	▲2.3	▲41.0	▲53.4	
2010년 대비 증감율(%)	▲34.9	▲19.5	▲14.3	▲19.3	▲39.0	▲46.2	▲66.2	▲80.3		
전국	아동수 (명)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1,655	236,892	18,794
		2008	1,135,502	123,405	119,894	53,818	615,647	1,491	210,438	4,511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444	177,623	15,124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238	148,240	14,53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933	129,007	12,985
	증감율(%)	▲15.8	▲13.7	▽12.0	▽6.9	▲11.3	▲43.6	▲45.5	▲44.7	

주: 전국의 2010년도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황은 집계되지 않아, 강원도의 2010년 10월 기준 통계자료만 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강원도 내부자료(2010년 10월 통계)

-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개인 어린이집(17.6%)이나 가정어린이집(41.0%), 직장어린이집(53.4%) 등은 이용아동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강원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수 증가율은 14.7%이지만, 이용아동 수 증가율은 3.6%에 불과하고, 법인어린이집은 2.6%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아동 수는 오히려 10.7% 감소함.
-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율은 66.2%로 전국 평균 45.5%에 비해 20%p 이상 높고, 민간개인 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율은 39.0%로서 전국 평균(1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민간 부문 어린이집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음.

4)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1) 시·도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동(현원) 비율로 산출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보면, 2010년말 현재 전국 평균은 82.2%로서 2009년(79.3%)에 비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9.5%(2009년 84.3%), 법인 어린이집은 79.3%(2009년 77.8%), 민간 81.2%(2009년 77.2%), 가정 83.3%(2009년 79.3%), 등으로 나타나, 모든 어린이집 유형별로 2009년에 비해 충족률이 조금씩 상승함.
 - 이는 보육비용 지원의 확대, 평가인증, 공공어린이집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한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 제고 등 보육환경의 변화가 보육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시·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광역시 지역은 모두 80% 이상의 높은 정원 충족률을 보였고, 특히 서울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9개 도지역은 제주(84.9%), 경기(82.6%), 충남(81.1%), 전남(80.1%) 등 4개 지역에서만 80% 이상의 비율을 보였음.
- 강원도는 79.5%로 2009년도의 78.3%에 비하면 조금 상승하였으나, 전국 평균 82.2%에 비해서는 낮고, 도지역 중 중간 정도(5번째) 수준의 충족률을 보임.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이 86.4%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충족률은 66.2%로 전북(51.5), 충북(64.1%)에 이어 낮은 수준임.
 -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80% 이상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는 78.3%로 경남(77.1%)에 이어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민간 어린이집 중 법인의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2.4%로 16개 시·도 중 가장 수준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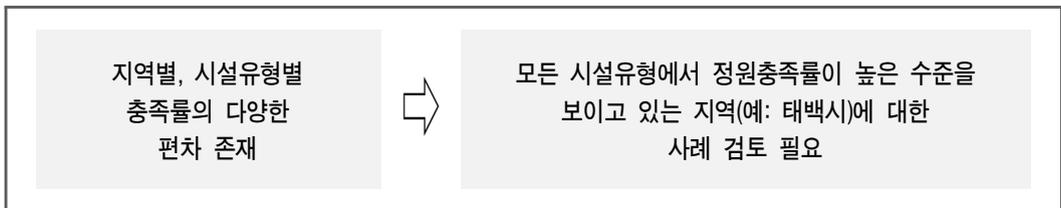
표 2-25. 16개 시·도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2010)

(단위: 명, %)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의	민간개인				
계	정원	1,556,808	153,792	143,841	890,733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현원	1,279,910	137,604	114,054	723,017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이용률	82.2	89.5	79.3	81.2	81.5	81.1	85.3	83.3	77.3
서울	87.4	91.7	90.4	86.9	85.0	87.1	86.8	84.9	78.2	
부산	82.8	87.6	80.6	81.0	84.4	80.9	80.0	87.7	75.7	
대구	81.0	79.6	81.7	80.3	74.1	80.7	94.6	84.0	69.7	
인천	86.2	88.4	90.1	84.7	88.6	84.6	86.6	89.5	83.2	
광주	80.3	78.1	76.1	79.5	84.4	79.2	61.0	88.6	82.3	
대전	83.0	90.9	87.5	82.9	85.5	82.8	93.9	80.9	88.1	
울산	82.7	96.5	92.1	81.3	89.7	81.1	-	82.0	83.2	
경기	82.6	92.8	86.5	81.0	83.0	80.9	85.7	82.9	78.2	
강원	79.5	86.4	79.1	78.7	72.4	79.6	78.2	78.3	66.2	
충북	78.9	87.5	77.9	77.3	75.7	77.4	71.8	84.1	64.1	
충남	81.1	85.2	76.3	81.6	81.3	81.7	90.0	83.8	70.9	
전북	77.7	83.1	77.9	75.6	79.0	75.0	-	83.7	51.5	
전남	80.1	79.1	76.8	79.8	77.0	80.2	95.9	89.7	75.8	
경북	78.0	82.9	74.5	77.1	83.4	76.8	-	81.8	73.0	
경남	78.7	87.9	79.9	78.2	81.7	78.0	-	77.1	71.7	
제주	84.9	93.8	81.6	86.1	85.9	86.1	-	85.6	67.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 시·군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 2010년말 현재,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인 '정원충족률'을 산출한 결과, 강원도 전체의 정원충족률은 79.5%로 나타남.

-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8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법인(79.1%), 민간(78.7%), 가정(78.3%) 등의 순이고, 직장어린이집은 66.2%로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임.
- 도내 18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백시로서 92.7%의 충족률을 보임. 다음은 양양군(88.5%), 고성군(87.2%), 인제군(86.0%) 등의 순임. 반면 보육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횡성군(71.8%), 홍천군(71.9%), 정선군(76.0%), 영월군(76.1%) 등의 순임.

표 2-26.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2010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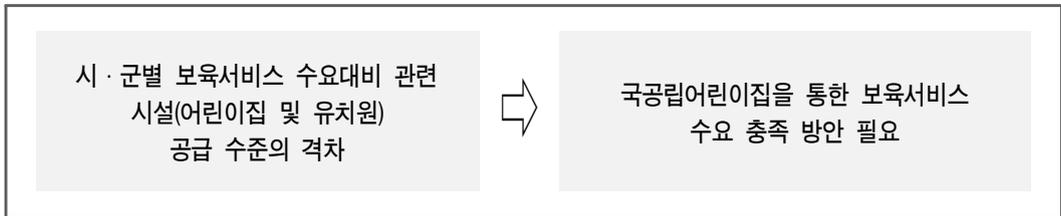
(단위: %)

정원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어린 이집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강원도	79.5	86.4	79.1	78.7	72.4	79.6	78.2	78.3	66.2
춘천시	79.0	93.8	87.2	75.2	80.3	74.5	75.0	78.4	61.0
원주시	78.7	85.0	70.4	79.7	66.1	81.5	80.8	79.3	60.3
강릉시	78.3	81.4	79.7	79.6	92.8	79.2	77.8	68.5	69.8
동해시	85.1	90.7	87.5	81.9	97.9	80.4	-	92.3	60.0
태백시	92.7	89.4	99.4	95.7	98.3	95.2	-	100.0	-
속초시	78.2	79.4	87.1	77.6	75.7	77.7	-	68.1	-
삼척시	78.7	80.1	63.1	80.1	36.5	83.2	-	98.3	-
홍천군	71.9	82.6	68.5	71.7	53.1	79.7	-	68.7	92.3
횡성군	71.8	79.1	74.8	65.2	38.7	83.3	-	68.0	-
영월군	76.1	86.0	68.8	80.5	78.5	95.8	-	98.8	-
평창군	83.7	89.3	93.9	79.7	93.9	76.2	-	51.4	-
정선군	76.0	93.0	68.5	-	-	-	-	-	-
철원군	84.6	94.2	91.8	82.9	76.7	83.3	-	86.5	-
화천군	80.6	73.4	68.8	93.2	82.9	94.9	-	83.0	-
양구군	80.6	86.1	86.0	71.3	71.5	71.0	-	66.7	-
인제군	86.0	84.0	85.6	86.8	85.1	89.5	-	93.4	-
고성군	87.2	87.8	-	84.8	-	84.8	-	97.4	-
양양군	88.5	93.3	87.1	85.6	67.3	95.9	-	97.2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강원도 전체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지만, 시·군별로 보면 어린이집 유형별 충족률에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남. 국공립의 정원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철원군(94.2%), 춘천시(93.8%), 양양군(93.3%) 등의 순이고, 낮은 지역은 화천군(73.4%), 횡성군(79.1%), 속초시(79.4%) 등의 순임.
-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적정 수준 이상의 충족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 추진시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서비스 공급(어린이집 규모)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태백시의 경우는 법인, 민간, 가정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정원충족률이 낮은 홍천군이나 횡성군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간 충족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5) 보육서비스 수요·공급 수준



(1) 보육서비스내 수요·공급 수준

- 도내 18개 시·군의 보육수요 대비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을 몇 가지 현황을 통해서 점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 즉, 여기서는 지역별 보육대상 아동 인구 즉, 영유아 인구수를 각 지역의 전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간주하고, 이러한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공급 정도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산출함.
 - 특히,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어 있는 현재의 어린이집의 공급 구조의 문제를 감안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을 보다 집중적으로 파악함.

표 2-27.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2010)

(단위: 개소, %, 점)

지역	기본수요 : 영유아 인구수 (A)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			어린이집1개소당 영유아 인구수			국공립어린이집수 대비 영유아인구수			영유아 인구수 대비 공공부문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 점
		비율	평균 이상	수 (B)	(B/A) ×100	평균 이상	수 (C)	A/C	평균 이상	수 (D)	A/D	평균 이상	수			E/A	평균 이하	
													국공립	법인	계(E)			
강원	74,441	86.4	-	51,927	69.8	-	1,085	69	-	76	979	-	5,957	10,291	16,248	21.8	-	-
춘천	13,742	93.8	●	10,124	73.7	-	217	63	-	7	1,963	●	786	1,545	2,331	17.0	●	3
원주	17,884	85.0	-	11,824	66.1	●	311	58	-	12	1,490	●	1,138	1,407	2,545	14.2	●	3
강릉	10,165	81.4	-	8,465	83.3	-	174	58	-	4	2,541	●	264	1,770	2,034	20.0	●	2
동해	4,870	90.7	●	2,907	59.7	●	57	85	●	2	2,435	●	161	674	835	17.1	●	5
태백	2,836	89.4	●	1,237	43.6	●	21	135	●	10	284	-	705	163	868	30.6	-	3
속초	4,030	79.4	-	3,275	81.3	-	66	61	-	3	1,343	●	277	588	865	21.5	●	2
삼척	2,868	80.1	-	1,792	62.5	●	34	84	●	8	359	-	447	271	718	25.0	-	2
홍천	3,004	82.6	-	2,226	74.1	-	44	68	-	3	1,001	●	172	489	661	22.0	-	1
횡성	1,578	79.1	-	1,473	93.3	-	24	66	-	1	1,578	●	115	813	928	58.8	-	1
영월	1,325	86.0	-	888	67.0	●	15	88	●	1	1,325	●	93	500	593	44.8	-	3
평창	1,621	89.3	●	922	56.9	●	15	108	●	3	540	-	159	228	387	23.9	-	3
정선	1,586	93.0	●	931	58.7	●	10	159	●	2	793	-	287	644	931	58.7	-	3
철원	2,580	94.2	●	2,088	80.9	-	26	99	●	2	1,290	●	154	182	336	13.0	●	4
화천	1,309	73.4	-	723	55.2	●	18	73	●	4	327	-	229	144	373	28.5	-	2
양구	1,190	86.1	-	839	70.5	-	13	92	●	1	1,190	●	79	456	535	45.0	-	2
인제	1,876	84.0	-	970	51.7	●	17	110	●	5	375	-	368	208	576	30.7	-	2
고성	962	87.8	●	756	78.6	-	13	74	●	6	160	-	434	-	434	45.1	-	2
양양	1,015	93.3	●	487	48.0	●	10	102	●	2	508	-	89	209	298	29.4	-	3

- 주: 1) 영유아인구수는 2010년말 기준, 어린이집 관련 통계는 2010년말 기준임.
 2) 전체 모집단으로서 영유아인구수를 수요로 간주함.
 3) "평균이상"또는 "평균이하"의 기준이 되는 평균은 강원도 전체 평균값을 의미함.
 4) 평점은 각 지표에 "●"표시된 수를 합산한 점수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서비스 추가 공급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한 지표는 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②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 ③ 어린이집 1개소당 영유아 인구수, ④ 국공립어린이집수 대비 영유아 인구수, ⑤ 영유아 인구수 대비 공공부문 어린이집(국공립 및 법인) 정원 비율 등을 산출함.

- 이러한 몇 가지 지표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강원도의 전체 평균 이상 또는 이하(지표의 성격에 따라 기준 부여)에 해당하는 시·군에 1점씩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평점”을 산출함. 이 평점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될 필요가 있는 시·군이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급되어야 함.
- 이러한 산출방식에 따른 결과를 보면, 우선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시·군은 “동해시(5점)”로 나타났고, 다음은 “철원군(4점)”임. 3점에 해당하는 3순위의 집단은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등 7개 지역임.

(2)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공급 수준

- 앞에서 산출한 공급수준이 보육사업내 즉, 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어린이집”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유치원”의 공급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적인 서비스의 전체적인 공급수준을 파악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수요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공급)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공존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규모를 산출할 때는 지역내 교육서비스 즉, 유치원의 수와 유치원 이용아동 수를 고려해야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규모의 산출이 가능함.
- 여기서는 도내 18개 시·군의 영유아 인구수를 기본 수요로 설정하고, 이 수요(100%)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정원)”⁴⁾과 “현재 수용하고 있는 수준(현원)”⁵⁾을 산출함.
 - 여기서 영유아 인구수를 기본 수요로 간주하는 것은 앞서 “보육 여건과 전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교육 확대 추세에 따라, 무상보육·교육이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임. 즉,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2가지 중 1가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됨⁵⁾.

4) 유치원의 경우, 정원과 현원을 구분한 자료가 없어, 현원 자료만 활용함.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대체로 전체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영아”가 있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 영아 인구수를 100%로 가정하게 되면, 공급 수준을 과잉 추정할 수 있음. 여기서는 시·군별 정확한 수요에 따른 정확한 공급 규모를 산출하기 보다, 수요는 동일하게 간주하고, 도내 18개 시·군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수요 및 공급 규모 산출은 이후 강원도의 사업 추진시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산출값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지역내 대부분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그 시기에 필요한 공적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 인프라 공급은 불필요함.

표 2-28. 강원도 18개 시·군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 현황(2010)

(단위: 개소, 명, %, %p)

지역	시설 및 이용아동 관련 현황								영유아 인구 수 (C)	시설이용률			시설 미이용 아동 (추가수요)			
	어린이집(2010)			유치원(2010)		계				정원 기준 (A/C) ×100	현원 기준 (A/C) ×100	정원 현원 이용률 차이	수		추가수요율	
	시설 수	이용아동 수		시설 수	이용 아동 수	시설 수	이용아동 수						정원 기준 (C-A)	현원 기준 (C-B)	정원 기준	현원 기준
		정원	현원				정원 기준 (A)	현원 기준 (B)								
강원	1,085	51,927	41,292	405	14,137	1,490	66,064	55,429	74,441	88.7	74.5	14.2	8,377	19,012	11.3	25.5
춘천	217	10,124	7,997	39	2,256	256	12,380	10,253	13,742	90.1	74.6	15.5	1,362	3,489	9.9	25.4
원주	311	11,824	9,310	61	3,679	372	15,503	12,989	17,884	86.7	72.6	14.1	2,381	4,895	13.3	27.4
강릉	174	8,465	6,630	40	1,395	214	9,860	8,025	10,165	97.0	78.9	18.1	305	2,140	3.0	21.1
동해	57	2,907	2,473	23	1,202	80	4,109	3,675	4,870	84.4	75.5	8.9	761	1,195	15.6	24.5
태백	21	1,237	1,147	15	596	36	1,833	1,743	2,836	64.6	61.5	3.1	1,003	1,093	35.4	38.5
속초	66	3,275	2,560	12	487	78	3,762	3,047	4,030	93.3	75.6	17.7	268	983	6.7	24.4
삼척	34	1,792	1,411	20	678	54	2,470	2,089	2,868	86.1	72.8	13.3	398	779	13.9	27.2
홍천	44	2,226	1,601	27	612	71	2,838	2,213	3,004	94.5	73.7	20.8	166	791	5.5	26.3
횡성	24	1,473	1,057	15	332	39	1,805	1,389	1,578	114.4	88.0	26.4	-227	189	-14.4	12.0
영월	15	888	676	18	419	33	1,307	1,095	1,325	98.6	82.6	16.0	18	230	1.4	17.4
평창	15	922	772	21	394	36	1,316	1,166	1,621	81.2	71.9	9.3	305	455	18.8	28.1
정선	10	931	708	19	298	29	1,229	1,006	1,586	77.5	63.4	14.1	357	580	22.5	36.6
철원	26	2,088	1,767	17	359	43	2,447	2,126	2,580	94.8	82.4	12.4	133	454	5.2	17.6
화천	18	723	583	14	348	32	1,071	931	1,309	81.8	71.1	10.7	238	378	18.2	28.9
양구	13	839	676	10	151	23	990	827	1,190	83.2	69.5	13.7	200	363	16.8	30.5
인제	17	970	834	19	452	36	1,422	1,286	1,876	75.8	68.6	7.2	454	590	24.2	31.4
고성	13	756	659	19	164	32	920	823	962	95.6	85.6	10.0	42	139	4.4	14.4
양양	10	487	431	16	315	26	802	746	1,015	79.0	73.5	5.5	213	269	21.0	26.5

- 주: 1) 유치원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계"의 이용아동수 중 정원과 현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정원 현원에 유치원 이용아동수(동수)를 합산한 수치.
 2) 횡성의 경우 주민등록상 영유아인구 수 대비 정원이 초과.
 3) 시설 미이용 아동(추가수요)는 각 시·군별 전체 영유아 인구 수를 100% 수으로 가정하고, 현재 시설 아동 수와 이용률을 차감하여 산출.
 4) 음영된 수치는 전체 영유아 수 대비 현재의 시설 정원으로 수용가능한 비율이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표시.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강원도교육청 내부자료

- 제시된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 수준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의 전체 평균은 88.7%로서,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용가능한 영유아는 전체 영유아의 8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현재 수용하고 있는 영유아 규모는 전체 영유아의 74.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 영유아 인구 수(수요)를 100%로 가정할 때, 강원도의 추가 수요는 정원 기준 11.3%(8,377명), 현원 기준 25.5%(19,012)임.
 - 정원과 현원의 수요율 차이는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접근성, 비용,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요자 욕구를 반영함.
 - 이러한 추가 수요를 모두 어린이집에서 수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원 기준 8,377명의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내에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 84개 정도가 추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추가수요를 산출하여, 강원도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인 지역을 파악한 결과,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남.
 - 특히, 태백시는 전체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 64.6%에 불과하여, 보다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시설공급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됨.
- 다음의 표 2-29는 앞서 어린이집 공급 규모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서비스 추가 공급이 필요한 시·군(표 2-26)과 유치원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된 시·군(표 2-27)의 점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시설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함.
 - 먼저 최종 평점을 보면, 동해시가 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즉, 동해시는 어린이집의 공급 규모만 고려할 경우와 유치원 공급 규모를 함께 고려할 경우 모두 시설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아동 규모도 5%를 조금 넘는 수준(표 2-22, 표 2-23 참조)으로 도내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임. 따라서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한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임.
 - 다음으로 최종평점(4점)이 높은 지역은 원주, 태백, 평창, 정선, 양양 등임. 특히 태백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함. 평창, 정선, 양양 등 군지역은 인구 규모만 고려하면 시설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역특성(농어촌)상 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설보육 이외에 지역의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표 2-29.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육·교육 공급 수준

지역	표 2-26에 의한 추가 공급 필요 수준 (어린이집만 고려)	표 2-27에 의한 추가 공급 필요 수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동시 고려)	최종 평점	추가공급 우선순위
	A	B	A+B	
춘천	3	-	3	3
원주	3	1	4	2
강릉	2	-	2	4
동해	5	1	6	1
태백	3	1	4	2
속초	2	-	2	4
삼척	2	1	3	3
홍천	1	-	1	5
횡성	1	-	1	5
영월	3	-	3	3
평창	3	1	4	2
정선	3	1	4	2
철원	4	-	4	2
화천	2	1	3	3
양구	2	1	3	3
인제	2	1	3	3
고성	2	-	2	4
양양	3	1	4	2

주: 1) A - 표 2-26에서 산출한 평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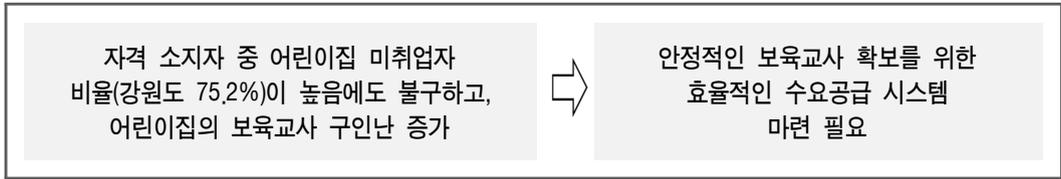
2) B - 정원기준에 의한 보육대상아동의 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강원도 전체 평균(88.7%) 이하 지역에 대해서 1점을 부여.

○ 이상의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어린이집)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 시·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0. 보육서비스 공급 최종 우선순위에 따른 시·군 현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비고
시지역	동해	원주, 태백	삼척	강릉, 속초	-	우선 공급
군지역	-	평창, 정선 철원, 양양	영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홍천, 횡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공급방안 모색

6) 보육인력



(1) 시·도별 자격증 소지자 현황

- 2011년 4월 현재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1. 시·도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1년 4월)

지역	시설장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수(명)	비율(%)	계		1급		2급		3급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전국	145,780	100.0	561,708	100.0	291,120	51.8	237,845	42.3	32,743	5.8
서울	27,304	18.7	95,233	17.0	53,108	55.8	33,745	35.4	8,380	8.8
부산	8,103	5.6	34,633	6.2	18,878	54.5	13,912	40.2	1,843	5.3
대구	7,121	4.9	30,958	5.5	16,369	52.9	12,560	40.6	2,029	6.6
인천	7,102	4.9	24,047	4.3	12,828	53.3	9,546	39.7	1,673	7.0
광주	5,909	4.1	26,809	4.8	13,125	49.0	12,891	48.1	793	3.0
대전	5,337	3.7	20,055	3.6	10,418	51.9	8,800	43.9	837	4.2
울산	2,947	2.0	11,875	2.1	6,953	58.6	4,132	34.8	790	6.7
경기	39,530	27.1	124,271	22.1	62,830	50.6	53,892	43.4	7,549	6.1
강원	3,730	2.6	15,327	2.7	8,721	56.9	6,315	41.2	291	1.9
충북	3,830	2.6	16,425	2.9	8,234	50.1	7,478	45.5	713	4.3
충남	5,451	3.7	19,524	3.5	10,511	53.8	8,298	42.5	715	3.7
전북	6,303	4.3	27,064	4.8	13,575	50.2	12,306	45.5	1,183	4.4
전남	4,481	3.1	28,143	5.0	13,225	47.0	14,157	50.3	761	2.7
경북	7,215	4.9	38,608	6.9	18,001	46.6	18,815	48.7	1,792	4.6
경남	9,719	6.7	39,785	7.1	19,305	48.5	17,587	44.2	2,893	7.3
제주	1,697	1.2	8,936	1.6	5,036	56.4	3,399	38.0	501	5.6
미기재	1	0.0	15	0.0	3	-	12	-	-	-

주: 자격발급 주소지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1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장 자격증 소지자는 145,780명으로 집계되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7.1%(39,530명)가 경기도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서울로 18.7%(27,304명)임. 강원도내 시설장 자격 소지자는 2.6%(3,730명)으로 제주(1.2%)와 울산(2.0%) 다음으로 적은 규모임.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는 모두 561,708명으로 가장 많은 22.1%가 경기도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다음은 서울(17.0%), 경남(7.1%) 등의 순임. 강원도는 2.7%(15,327명)으로서, 시설장 과 마찬가지로 제주(1.6%)와 울산(2.1%) 다음으로 적은 규모임.
 - 강원도내 보육교사의 급수별 비율을 보면, 1급은 56.9%(8,721명)으로 울산(58.6%) 다음으로 1급 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3급 보육교사는 1.9%(291명)에 불과하여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전체 규모의 상대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도별 보육관련 지표를 기준에 대비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2와 같음.
- 먼저 각 시·도별 전체 영유아 인구수를 대비 보육교사 규모를 파악함. 전체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 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평균은 보육교사 1인당 4.7명으로 나타남⁶⁾.
 - 1인당 영유아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6.2명), 충남(5.9명), 경기(5.7명) 등의 순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3.1명), 광주(3.3명) 등임. 강원도는 4.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16개 시·도 중 6번째 정도 수준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1급 보육교사만 구분하여 1인당 영유아 인구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평균은 9.1명임.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1.6명), 경기(11.4명), 충남(11.0명), 충북(10.0명) 등의 순이고, 강원도는 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16개 시·도 중 9번째 수준으로 1급 보육교사 규모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큰 지역임.
- 다음으로 어린이집 수를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 1개소 대비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수는 전국 평균이 14.8명임⁷⁾.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4.8명), 광주(22.5명) 등의 순임.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11.0명)임. 강원도는 14.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6) 수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영유아 수가 많은 것임. 즉, 각 시·도에 보육교사 수가 많을수록 담당해야 하는 영유아 수치가 적어짐.

7) 이는 어린이집 규모를 동일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모든 인력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1개소에서 근무가능한 보육교사 수를 의미함.

- 시설장 자격 소지자 수 대비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비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평균은 26.1%임. 이러한 수치를 반대로 보면, 시설장 자격이 있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비율도 70%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함.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33.3%)임. 강원도는 29.1%로 16개 시·도 중 4번째 수준으로 시설장 자격 소지자 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2. 시·도별 보육 관련 현황 대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역	영유아 인구수 기준			어린이집 수 기준			어린이집 정원 기준		
	영유아 인구수	보육교사 자격자 1인 대비 영유아수	1급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수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1개소 대비 보육교사 수	시설장 자격자수 대비 어린이집 비율	어린이집 정원	보육교사 자격자 1인 대비 아동정원	1급 보육교사 자격자 1인 대비 아동정원
	(명)	(명)	(명)	(개소)	(명)	(%)	(명)	(명)	(명)
전국	2,642,186	4.7	9.1	38,021	14.8	26.1	1,556,808	2.8	5.3
서울	471,101	4.9	8.9	5,870	16.2	21.5	236,339	2.5	4.5
부산	148,329	4.3	7.9	1,689	20.5	20.8	79,526	2.3	4.2
대구	121,893	3.9	7.4	1,544	20.1	21.7	76,276	2.5	4.7
인천	148,931	6.2	11.6	1,857	12.9	26.1	75,533	3.1	5.9
광주	87,218	3.3	6.6	1,192	22.5	20.2	60,833	2.3	4.6
대전	86,127	4.3	8.3	1,535	13.1	28.8	50,719	2.5	4.9
울산	64,730	5.5	9.3	754	15.7	25.6	33,091	2.8	4.8
경기	713,464	5.7	11.4	11,273	11.0	28.5	387,247	3.1	6.2
강원	74,441	4.9	8.5	1,085	14.1	29.1	51,927	3.4	6.0
충북	82,614	5.0	10.0	1,112	14.8	29.0	58,275	3.5	7.1
충남	115,676	5.9	11.0	1,687	11.6	30.9	71,851	3.7	6.8
전북	92,799	3.4	6.8	1,531	17.7	24.3	72,750	2.7	5.4
전남	87,888	3.1	6.6	1,135	24.8	25.3	66,067	2.3	5.0
경북	129,900	3.4	7.2	1,998	19.3	27.7	88,960	2.3	4.9
경남	183,730	4.6	9.5	3,234	12.3	33.3	118,204	3.0	6.1
제주	33,345	3.7	6.6	525	17.0	30.9	29,210	3.3	5.8

-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자 1인 대비 현재 아동 정원을 보면, 전국 평균은 2.8명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3.7명)과 충북(3.5명)임. 강원도는 3.4명으로 3번째로 높

은 지역임. 즉, 현재 어린이집에서 수용가능한 아동 수 기준으로 볼 때, 보육교사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임.

- 1급 보육교사 자격자만 구분하여 보면, 전국 평균은 5.3명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7.1명), 충남(6.8명), 강원(6.2명) 등의 순으로 강원도가 3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즉, 1급 보육교사 또한 아동 정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 그러나 이것은 강원도의 보육교사 규모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해 보기 위한 시도이며, 자격은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구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에 대해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인력의 수요·공급 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2) 시·군별 자격증 소지자 현황

- 2011년 4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33과 같음.
- 먼저 시설장 자격 소지자를 보면, 원주시가 26.6%(993명)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은 춘천(21.2%, 789명), 강릉(16.3%, 607명) 등의 순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 강원도 전체 시설장 자격 소지자 중 64.1%가 분포하고 있음.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22.6%(3,464명)로 가장 비율이 높고, 시설장과 마찬가지로 다음은 춘천(19.6%, 3,001명), 강릉(17.1%, 2,615명) 등의 순임. 강원도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15,327명 중 59.3%에 해당하는 9,080명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보육교사 급수별로 보면, 1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선(77.2%), 양양(71.9%), 화천(70.9%) 등의 순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영월(31.7%), 횡성(41.4%) 등임. 특기할만한 점은 속초의 경우, 3급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비율이 21.2%(24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중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규모를 산출한 결과, 강원도 전체 평균은 27.5%로 나타남. 즉, 자격이 있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자격자 비율은 72.5%(11,117명)임.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철원으로서 자격 소지자 중 절반 이상(51.6%, 178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은 화천(39.7%, 60명), 양구(39.1%, 60명) 등의 순임.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영월로서 12.5%(65명)에 불과함. 즉, 자격은 있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인력 비율이 87.5%(456명)나 됨.

표 2-33. 시·군별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1년 4월)

지역	시설장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중 어린이집 근무자 규모 (B)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어린이집 비근무자 규모 (A-B)	
			계(A)		1급		2급		3급		수 (명)	비율 (%)	수 (명)	비율 (%)	
	수 (명)	비율 (%)	수 (명)	비율 (%)	수 (명)	비율 (%)	수 (명)	비율 (%)							
강원	3,730	100.0	15,327	100.0	8,721	56.9	6,315	41.2	291	1.9	4,210	27.5	11,117	72.5	
춘천	789	21.2	3,001	19.6	1,618	53.9	1,378	45.9	5	0.2	812	27.1	2,189	72.9	
원주	993	26.6	3,464	22.6	1,906	55.0	1,546	44.6	12	0.3	944	27.3	2,520	72.7	
강릉	607	16.3	2,615	17.1	1,697	64.9	905	34.6	13	0.5	734	28.1	1,881	71.9	
동해	207	5.5	809	5.3	519	64.2	288	35.6	2	0.2	259	32.0	550	68.0	
태백	80	2.1	433	2.8	266	61.4	166	38.3	1	0.2	105	24.2	328	75.8	
속초	210	5.6	1,138	7.4	548	48.2	350	30.8	240	21.1	266	23.4	872	76.6	
삼척	123	3.3	624	4.1	343	55.0	278	44.6	3	0.5	156	25.0	468	75.0	
홍천	154	4.1	486	3.2	338	69.5	148	30.5	-	-	158	32.5	328	67.5	
횡성	69	1.8	532	3.5	220	41.4	312	58.6	-	-	107	20.1	425	79.9	
영월	62	1.7	521	3.4	165	31.7	356	68.3	-	-	65	12.5	456	87.5	
평창	64	1.7	236	1.5	165	69.9	67	28.4	4	1.7	63	26.7	173	73.3	
정선	37	1.0	224	1.5	173	77.2	49	21.9	2	0.9	67	29.9	157	70.1	
철원	79	2.1	345	2.3	180	52.2	164	47.5	1	0.3	178	51.6	167	48.4	
화천	56	1.5	151	1.0	107	70.9	44	29.1	-	-	60	39.7	91	60.3	
양구	56	1.5	156	1.0	108	69.2	47	30.1	1	0.6	61	39.1	95	60.9	
인제	67	1.8	226	1.5	142	62.8	83	36.7	1	0.4	75	33.2	151	66.8	
고성	37	1.0	206	1.3	111	53.9	93	45.1	2	1.0	59	28.6	147	71.4	
양양	40	1.1	160	1.0	115	71.9	41	25.6	4	2.5	41	25.6	119	74.4	

주: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수는 2010년도 기준.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도내에도 시·군별로 자격 소지자가 현 수요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⁸⁾, 현장(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확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이는 자격 소지자에게 보육교사로서의 직무가 갖는 부담과 낮은 처우 등이 해당 직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
 - －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보육교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좋은 인력이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함.

(3) 보육 교직원 현황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인력이 근무함.
- 2010년 현재 강원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장 중 40인 이상 시설장은 439명, 20인 이하 시설장은 389명임. 보육교사 중 일반보육교사는 4,210명이고, 대체교사는 37명에 불과함.
 - － 대체교사를 시·군별로 보면, 원주(12명), 춘천(7명), 강릉(4명) 등 시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대체교사가 전혀 없는 사군도 6개(삼척, 홍천, 영월, 평창, 화천, 인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체교사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 － 방과후 보육교사 및 24시간 보육교사는 각 1명과 2명으로 사실상 강원도에서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
 - －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춘천, 원주, 강릉 등 일부 시지역만 편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 최근 시간연장 등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 평창, 화천, 인제 지역은 일반보육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보육교사가 전무한 지역으로 나타남.

8) 표에 제시된 자격 소지자 현황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거주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실제 거주 현황은 파악이 곤란함.

- 특수교사 및 치료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도 대부분의 시·군에 전무하여, 장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열악한 수준임.
- 일반보육교사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보육 교직원들은 사실상 개별 어린이집별로 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군당 1명 정도는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2-34. 강원도 시·군별 보육교직원 현황(2010년 10월말)

(단위: 개소, %)

지역	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사무원	기타			
		소계	20인 이하 시설	40인 미만 시설	40인 이상 시설	소계	보육 교사	대체 교사	방과 후 교사	시간 연장 보육 교사	24시간 보육 교사	특 수 교 사	치 료 사	영 양 사	취 사 부			소 계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강원	6,225	1,016	389	188	439	4,358	4,210	37	1	108	2	9	6	13	480	15	10	5	61	267
춘천	1,176	209	100	34	75	844	812	7	0	23	2	1	0	1	64	3	2	1	10	44
원주	1,448	276	155	47	74	993	944	12	0	37	0	5	4	4	97	3	2	1	9	57
강릉	1,039	169	52	32	85	762	734	4	0	24	0	3	2	2	73	3	3	0	3	22
동해	376	56	25	10	21	266	259	1	0	6	0	0	0	2	31	1	0	1	2	18
태백	170	21	2	4	15	107	105	2	0	0	0	0	0	0	17	0	0	0	11	14
속초	384	53	13	12	28	276	266	3	0	7	0	0	0	2	31	1	1	0	3	18
삼척	231	34	7	15	12	157	156	0	1	0	0	0	0	1	24	0	0	0	1	14
홍천	246	41	9	9	23	160	158	0	0	2	0	0	0	0	21	0	0	0	5	19
횡성	153	22	4	4	14	109	107	2	0	0	0	0	0	0	15	1	1	0	2	4
영월	103	15	4	1	10	68	65	0	0	3	0	0	0	0	11	0	0	0	1	8
평창	97	14	1	3	10	63	63	0	0	0	0	0	0	0	12	0	0	0	0	8
정선	105	10	0	0	10	71	67	2	0	2	0	0	0	1	13	0	0	0	8	2
철원	248	26	3	2	21	181	178	1	0	2	0	0	0	0	24	2	1	1	3	12
화천	88	17	5	7	5	60	60	0	0	0	0	0	0	0	8	0	0	0	0	3
양구	93	13	1	1	11	62	61	1	0	0	0	0	0	0	11	1	0	1	0	6
인제	116	17	4	3	10	75	75	0	0	0	0	0	0	0	12	0	0	0	2	10
고성	81	13	2	3	8	60	59	1	0	0	0	0	0	0	7	0	0	0	0	1
양양	71	10	2	1	7	44	41	1	0	2	0	0	0	0	9	0	0	0	1	7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3. 보육사업 추진 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보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보육사업 관련 영역	문제점	시사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담당인력 조직내에서 가장 적은 수준(3인) 	시설 수와 지도·감독이 중요한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담당인력(공무원) 충원 시급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보육사업 예산분담 규모 저조(2011년, 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인력의 질향상 등 질높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보육대상아동 (영유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시·군간 영유아 인구 규모의 큰 격차 	지역(시·군)별 영유아 인구 규모(수요)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부문어린이집의 큰 비중 및 시·군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큰 격차 ●민간부문 중심의 어린이집 증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 및 가정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 ●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의 전체 보육대상 아동(0~5세) 수; 대부분 100명 이하 규모로 시설보육 제공의 한계 	(특히) 시지역의 공보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 제고 (농어촌 지역)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어린이집 이용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시·군간 시설유형별 이용아동 비율의 큰 격차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민간부문(민간 개인 및 가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규모가 적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민간부문 어린이집 확충(공급) 규모 조절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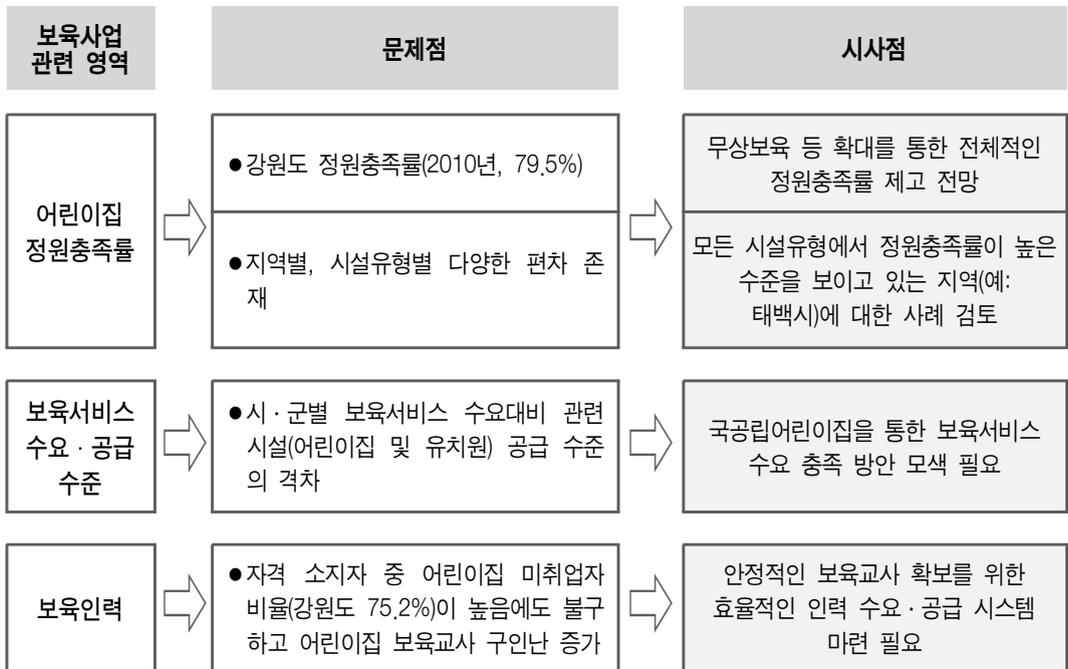


그림 2-8. 보육사업 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3

보육 욕구 진단

1 . 기존 연구에 의한 욕구; 제2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 제2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에서 실시한 보육 관련 욕구조사 결과 파악된 욕구는 다음과 같음.
 - － 먼저, 18개 시·군 중,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한 모든 시·군(강릉, 태백, 삼척, 철원, 양구, 인제, 양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임.
 - － 가장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제시한 7개 시·군 중 5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속초, 양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2개 시군(철원, 인제)에서는 “보육비용 감면”에 대한 요구가 높음.
 - －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 “불만족한 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10개 시·군에서 모두 “비용”을 가장 크게 지적하였고, 거리(강릉, 화천)와 보육시간(삼척)도 지적됨.
 - －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욕구를 보면, 크게 “질적 수준”, “보육대상”, “보육시간”과 관련된 욕구가 주요하게 나타남.
 -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선(원주, 태백, 속초), 교사의 자질 향상(원주), 교사의 처우 개선(속초) 등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 또한 보육대상과 관련해서는 영아(속초, 홍천, 양구) 및 방과후(화천, 양구) 보육에 대한 확대가 지적됨.
 - － 보육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평창, 영월, 고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시간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시간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음.
 - － 그밖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시된 욕구로는 보육아동 가정에 대한 보육용품 및 정보 제공 등이 있고, 특히 원주에서는 다문화보육 및 농어촌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가 있음.

표 2-35. 18개 시군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보육 관련 욕구

지역	선호하는 어린이집	가장 불만족한점	가장 희망하는 정책	보육서비스 내용별 욕구			기타
				질적 수준	보육대상	보육시간	
춘천	-	-	-	-	-	•시간제 •시간연장제	-
원주	-	•비용(36.0%)	-	•프로그램개선(44.0%) •교사자질향상(24.0%)	-	•시간연장제	•보육용품지원 •다문화보육 •농어촌보육
강릉	•국공립 (69.9%)	•비용(55.4%) •거리(접근성)	•국공립확대 (44.4%)	-	-	•종일제(60.1%) •시간연장제	-
동해	•국공립 (79.2%)	•비용(77.4%)	•국공립확대	-	-	•종일제(53.3%)	-
태백	•국공립 (84.0%)	•비용	•국공립확대	•프로그램개선(19.3%)	-	•종일제(72.0%) •시간제	•예체능프로그램
속초	-	•비용(46.7%)	•국공립확대	•프로그램개선 •교사처우개선	•영아	•종일제 •시간연장제	-
삼척	•국공립 (67.4%)	•비용(36.0%) •시간(21.6%)	-	-	-	•종일제(60.9%) •시간연장제(21.0%)	•용품지원(20.2%) •정보제공(30.6%)
철원	•국공립 (76.0%)	•비용(74.0%)	•비용감면	-	-	•종일제(24.7%)	-
화천	-	•비용 •거리	-	-	•방과후(27.0%)	•시간제(19.0%)	-
홍천	-	•비용	-	-	•영아	•시간제	-
횡성	-	-	-	-	-	•종일제	-
양구	•국공립 (76.0%)	•비용	•국공립확대 (87.7%)	-	•영아(83.7%) •방과후(22.0%)	•종일제(54.0%) •휴일보육(30.0%)	-
인제	•국공립 (83.6%)	-	•비용감면 (94.5%)	-	-	•종일제(81.8%)	-
평창	-	-	-	-	-	-	-
정선	-	-	-	-	-	•시간연장제	-
영월	-	-	-	-	-	-	-
고성	-	-	-	-	-	-	-
양양	•국공립 (76.1%)	-	-	-	-	•종일제(52.2%) •시간연장제(31.3%)	-

주: 1) 18개 시·군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보육관련 욕구조사 결과 부문에서 작성된 내용 중 강조되었거나, 비율이 높은 욕구나 문제를 선별함. 보육사업의 경우, 별도의 부문으로 다룬 시·군이 거의 없고, 여성정책이나 아동정책에 포함시키거나 계획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진 수준이어서 욕구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저출산 부분은 삼척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본 욕구파악에서는 제외.

2) 시·군의 욕구조사결과에서 비율을 제시한 지역은 비율을 제시하고, 중요도(우선순위)만 밝힌 지역은 비율을 제시하지 않음.

3) “-”은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모든 항목에 “-”가 표시된 시·군은 보육 부문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지역임.

자료: 강원도, 제2기 강원도지역복지계획(2011~2014)

－ 이상에서 18개 시·군에서 제시된 욕구 중 주요 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6.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욕구조사 결과에 의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질적 수준 제고 •맞춤형 보육시간: 시간연장제, 시간제, 종일제, 휴일보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개선 •영아 및 방과후 보육의 확대 •다문화 및 농어촌 보육서비스 •보육관련 용품 및 정보 등 제공
--	---

자료: 강원도, 제2기 강원도지역복지계획(2011~2014)

○ 다음으로 강원도의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보육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FGI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37. 「제2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보육관련 전문가 FGI 주요 결과

주요제안	현황	목적	시사점
보육교사 처우(임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대졸평균 초봉의 절반수준이고, 민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민간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간 임금격차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교사 확보와 이직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지원 확대
보육교사 재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지만, 도내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의 효용성이 낮아 교육참여율 및 효과가 낮음. ○예산부족으로 질높은 강사섭외 및 교육(실습이 포함된) 제공이 어려워,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기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수준(급수, 경력 등)별 교육내용 세분화 ○연수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보육교사 대체근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무에 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소진을 예방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르고 바쁜)등원시간에 퇴직교사 등을 활용한 대체근무 지원(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
대체교사제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제도가 있으나 특히, 군지역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워 제도의 효용성이 낮음.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은 교통비나 이동시간 등의 문제로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움. ○군지역 대체교사의 근무조건(교통비 등)이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대체교사 확보로 보육교사의 재교육 등 참여율 제고 및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지역 대체교사에 대한 교통비 등 비용지원 확대 ○지역내 보육관련 분야 유경력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일본의 경우, 퇴직교사 및 관련 분야 경력자 등을 활용

주요제안	현황	목적	시사점
평가인증 참여교사 인센티브 제공	○평가인증대상 시설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이직을 조장하거나 신규교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평가인증은 보육교사(특히, 주임교사)의 참여와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수준임.	○보육교사 이직률을 감소로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확보 ○보육교사의 근로의욕 제고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장기근속수당 제공 ○평가인증시설 (주임)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집에 대한 냉방비 지원	○하절기 냉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아동보육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하절기 아동보육에 적절한 서비스 환경 제공	○하절기 어린이집에 대한 냉방비 지원
문제행동아동 전문보육교사 지원	○보육시설마다 문제행동아동, 문제상황에 처한 아동 등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증가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육 실시	○교사 재교육시 문제행동 아동 관련 교육 실시 ○어린이집당 이들 아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치
특수가정아동을 위한 서비스 확대	○다문화, 해체, 결손, 조손 가정 등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인력이 부족함.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정 여성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보육정보센터 기능 재정립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자녀양육을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기능 정립	○일본의 패밀리서포트센터와 같은 전달체계의 마련 ○자녀양육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가동
보육시책 및 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보육시책 및 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보육서비스의 질관리에 한계가 있음.	○보육서비스 상시적 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학과 교수 및 보육교사를 모니터로 활용

주: 전문가 FGI 참여자 - 강원도 보육지원주무, 춘천시 여성가족과장, 도여성발전위원회 보육분과위원장, 영동지역 대학(동우대학, 강원원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 영서지역(한림성심대, 상지영서대) 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2인
 자료: 강원도, 제2기 강원도지역복지계획(2011~2014)

2. 본 연구에 의한 욕구; 보육관련 주체에 대한 FGI 결과

1) 보육아동 부모 FGI 결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인력, 비용, 차량이용, 식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육아지원서비스와 보육관련 정보

등 부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굴되었음. 또한 각 문제별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2-38. 보육아동 부모 FGI 주요 결과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육아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 원하는 시간에 이용(시간제 형태)가능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필요 ○두자녀 이상 자녀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이돌보미의 경우 잦은 교체 등으로 이용시 어려움 존재 	지역사회 양육지원시스템의 강화
보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사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잦은 변경 ○어린이집에서의 TV시청 문제 	전문성·책임성있는 어린이집프로그램 수립·제공 방안
보육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부족: 자격이나 전공 등에 대해서 공지 필요 	보육인력 관련 정보 공개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의 자질(아동에 대한 태도) 문제: 경력이나 자격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태도의 개선 필요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보육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간 중에 특별활동비 별도 수납하는 문제 ○특별활동에 대한 선택권 없이 몇 개 활동을 세트로 신청하는 형태로 비용 수납 → 특별활동 미신청 아동은 방치되는 상황 	특별활동 현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어린이집 차량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시 안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차량운행 - 신호위반(적색등 무시 등) 등 사례 다수 - 장시간 차량탑승의 문제 	어린이집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행시 남아 있는 아동 관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차량운행시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TV 시청 또는 방치 → 별도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관리자(교사) 필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어린이집 식단(먹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스턴트 음식(햄, 어묵 등) 제공 등 어린이집 식재료 및 식단 관리의 문제 → 유기농이나 자연식 등으로 전환 필요 	어린이집 식단 관리 방안
보육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 연령별 보육료 수준,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 미흡 	보육관련 정보제공 방안 마련

주: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5인에 대한 FGI 결과.

2) 보육교사 FGI 결과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출·퇴근, 휴가, 역할부담, 차량지도, 특별활동, 평가인증, 재교육, 이직, 토요일 근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굴되었음. 또한 각 문제별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2-39. 보육교사 FGI 주요 결과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출·퇴근	○통상 8시 출근 8시 퇴근(차량지도시 출근시간: 7시 30분)으로 장시간 근무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시간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
휴가	○방학(1주일)중 당직근무로 인해 제대로 된 휴가 곤란 ○연가·조퇴 등 사적인 업무처리(은행업무, 병원진료 등)를 위한 개인시간 활용 곤란	대체교사 등 활용방안 검토
역할부담	○보육활동, 차량지도, 청소, 부모(아동)상담 등 다양한 역할부담의 문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
차량지도	○차량시간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발생 ○어린이집차량사고 등 위험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차량지도 후 멀미 등 신체적 부담으로 수업에 지장 초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차량운행 및 지도 관련 개선방안 모색
	○차량지도교사의 차량안전 문제 간과: 차량지도 교사는 안전벨트 미착용, 착석 전 차량 출발 등	어린이집 차량기사에 대한 안전의무교육 실시
특별활동	○특별활동시간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긍정적 평가 - 특별활동보조교사, 수업사진촬영 등 업무 수행 - 아동알림장 작성 등 방과후 수행해야 할 업무 수행 - 수업 준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시간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 프로그램 운영 문제 - 소수의 특별활동 미참여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부재: 주로 그림그리거나 활동지 작성 등 시간떼우기 활동	
평가인증	○추가업무 부담: 평가인증 준비기간 중 야근 및 휴일 근무 다수, 동기간 중 차량지도시(조기 출근) 신체적 부담 가중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 근무 기피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 모색
이직	○주된 이유는 원장님과의 갈등 ○갓은 이·퇴직: 호봉문제로 동일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가 어려운 현실, 대체로 1년 후 이직 또는 경력 중단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사이버 교육의 문제: 대체교사 부재로 주로 사이버 교육 참여 → 장기간의 사이버교육 보다 단기간의 현장교육이 효과적 	대체교사 등 활용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반 관련 교육기회 부족: 대학 및 재교육 과정에서도 영아보육 관련 교육·훈련 기회 부족 	보수교육 및 보육정보센터 교에 영아보육 관련 교육·훈련 강화
토요일 및 휴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교육 참여의 어려움 발생: 대부분 재교육일정이 토요일이고 서울 등 타지역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다수 → 토요일 근무로 인한 교육 참여 곤란 ○형식적인 토요일·휴일 보육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아동보육을 위한 인력·시간 등 낭비 - 토요일·휴일 보육프로그램의 부재 - 가정내 보육가능한 경우도 토요일·휴일 어린이집 이용 	토요일·휴일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주: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현직 보육교사 3인에 대한 FGI 결과임.

3)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FGI 결과

- 어린이집 운영자(원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원장의 역할, 보육교사의 채용 및 관리, 보육교사 처우, 대체교사, 어린이집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인가, 차량운행·지도, 기본보육료,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이용과 양육수당, 표준보육단가, 반구성 입소우선 순위, 부모 자질 및 교육, 농어촌·군부대 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 토요일·휴일 근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굴되었음. 각 문제별로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 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2-40. 어린이집 운영자(원장) FGI 주요 결과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보육교사의 채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이한 보육교사자격취득제도(사이버 등)의 문제: 보육교사의 사명감이나 자질 부족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및 자격제도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전공이나 학력별 수준 차이: 유아교육 전공자와 기타 전공자와의 수준 	보육교사 전공이나 학력별 재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의 특정어린이집(소규모 어린이집)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의 젊은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및 법인 선호 - 소규모 어린이집은 나이가 많거나, 가정(자녀)이 있거나, 자질이 낮은 보육교사가 주로 근무 → 단시간(4시 이전 퇴근) 또는 파트타임 근무 요구 	소규모 어린이집 지도·감독 강화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보육교사처우	○장에전담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수준	인건비 지원 수준 현실화
	○영유아반 인건비 지원기준의 차이(국공립어린이집)로 인한 보육인력 활용의 문제: 경력많은 보육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 발생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유치원교사와의 인건비 격차: 어린이집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야근시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비용부담 가중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시간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한 호봉적용의 문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대체교사	○대체교사 활용의 어려움: 대체교사 모집이 어려운 시·군의 문제, 한 지역에서 대체교사의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운영방식 등	대체교사 활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원장의 역할	○원장이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등 다양한 역할의 수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 어려움(※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평가인증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신청 어린이집 기피: 평가인증어린이집 기피 및 평가인증시기에 보육교사의 이직 현상 발생	평가인증 참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방안
	○평가인증의 효율적 활용: 평가인증 부담에 비해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인센티브 미흡 →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평가인증과 지원의 연계 필요	평가인증과 다양한 정부지원의 연계 모색
가정어린이집 인가	○보육교사의 가정어린이집 퇴직 및 신규 개원 - 어린이집 인가허가 시기에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기존 어린이집 퇴직 후 개원하는 사례 증가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난 및 경쟁가정어린이집 증가로 운영상 어려움 발생 ○소규모민간어린이집 중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원을 축소(20명으로)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가정어린이집간 경쟁구도 확대	민간 및 가정 등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 및 방식의 개선
기본보육료와 영아보육	○기본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운영비 보전에 도움을 주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영아보육 실시 확대와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 확대 욕구가 충돌하는 현실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역할 조정 검토
영아보육의 질	○수업준비나 재교육 등이 주로 유아에 편중되어 있어, 영아보육을 위한 준비나 교사의 자질 향상 기회 부족	영아보육 관련 재교육 강화
차량 운행·지도	○보육교사 차량지도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 - 담임교사 차량지도시 해당 반 보육아동 방치 - 보육자에 민감한 영아반교사 차량지도면제시 교사간 갈등발생 - 차량탑승시간 지연 등 차량지도시 발생하는 문제로 부모와 교사간 갈등 심화 → 교사 퇴사하는 사례 발생 - 차량운행으로 인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및 보육교사의 차량지도 개선방안 마련
	○차량운행으로 인한 운영비 가중 - 국공립시설 사례: 버스운행중단으로 연간 9천만원 비용(기사인건비, 유차비, 보험료, 차량교체비 등) 절감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수당	○양육수당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주 이용대상인 영아의 감소)	영아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간 역할 조정 필요
표준보육단가	○현실적인 표준보육단가 재산정(상향조정) 필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주요문제영역	세부 의견	시사점
반구성	○농어촌 어린이집의 반별정원 충족의 문제: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 수 부족으로 특정 연령 아동 인원 미달 등 반구성의 어려움 발생	농어촌 보육 개선 방안 검토
	○영아반편성 연령기준에 따른 보육활동의 한계: 현재의 반편성 연령기준에 의하면, 3개월 영아와 17~19개월 영아가 한반에 편성 → 연령에 적합한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반별 정원 초과 허용 방식의 문제: 전체 정원 기준으로 정원 초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입소순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의 불합리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맞벌이가정 자녀 우선입소 규정 강화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원장 자질 문제: 원장이 장애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면 수퍼비전의 한계 발생	장애아보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인력(원장, 교사)에 대한 재교육 강화
	○군단위의 경우 장애아보육 관련 전문적 지원의 한계: 장애아관정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의 곤란	장애아보육 지원 인력 확충 검토(보육정보센터 등)
	○장애아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특수교육교사자격자에 대한 처우 개선(타기관과 유사한 수준) → 불평등한 처우로 전문성있는 교사 확보 곤란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방안 검토
부모자질 및 교육	○전업주부의 자녀(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문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양육이 가능한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이 점차 축소되는 등 부모자질의 문제가 발생.	정기적인 부모교육 실시 방안 모색
	○기본적인 자녀관리 소홀: 위생, 식사 등	
	○어린이집 이용 예절 미흡: 음주후 늦은 시간 자녀 퇴원, 기본준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등원	
농어촌·군부대 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	○군부대지역 인사이동 시기 및 동절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11~2월 보육아동 수 급감, 난방비 등 지출 증가	군부대 및 농어촌 지역 동절기 운영난 해소 방안 모색
	○농번기 시간연장운영: 농번기 농촌부모의 일과에 따른 조기등원 및 아침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	
	○원거리 지역 소수 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운행의 문제: 농어촌 지역 아동 수 감소로 원거리 보육아동 입소 및 차량운행 불가피 → 현행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수준의 비현실성	농어촌 보육 개선 방안 검토
	○연령통합반(5, 6, 7세) 운영시 표준보육과정 적용의 어려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검토
토요일 및 휴일 근무	○토요일·휴일 어린이집 운영의 비효율성	거점형 어린이집 지정·활용 방안 검토
지도·감독	○회계(지출)장부에 편중된 지도·감독의 문제: 보육담당공무원의 보육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으로 보육현장과의 갈등 발생	보육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육관련 기초교육 필요

주: 도내 시·군지역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운영자 20인(어린이집 유형별 5인)에 대한 FGI결과임.

제 3 장

보육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1. 사업추진의 기본체계
2. 【정책목표A】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3. 【정책목표B】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4. 【정책목표C】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6. 계획의 평가방안

1 사업추진의 기본체계

비 전

신나는 보육, 행복한 아이

부모,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관련 기관 직원 모두가 함께 신나게 아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강원도

추진방향

보육교사담게 어린이집 원장담게 부모담게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정책목표A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정책과제 A-1. 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
- 정책과제 A-2. 보육서비스 공급 방식의 개선

정책목표B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정책과제 B-1. 보육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 정책과제 B-2. 특수보육서비스 지원
- 정책과제 B-3. 이용자의 보육 참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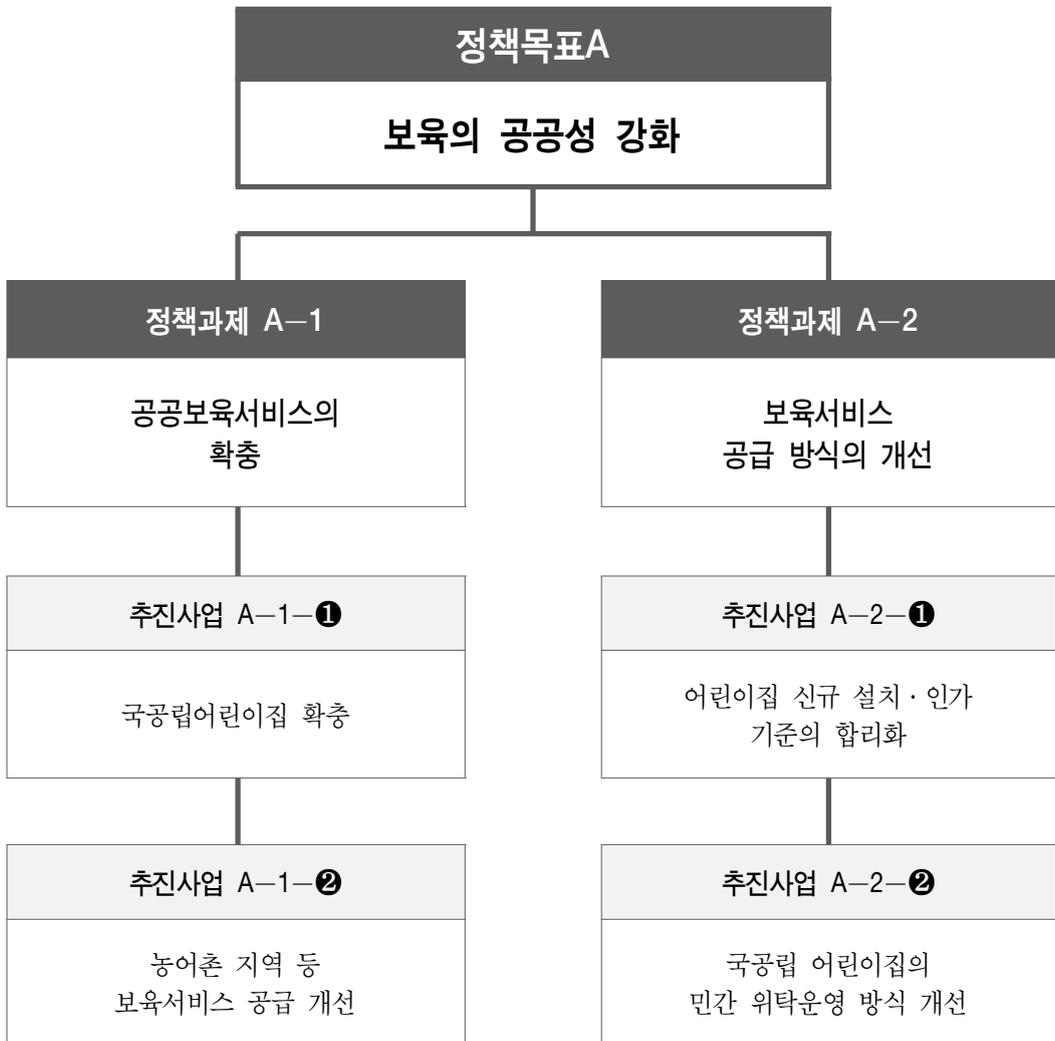
정책목표C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추진 기반 구축

- 정책과제 C-1. 보육관련 전산화 시스템 구축
- 정책과제 C-2. 보육관련 조직 기능 확대
- 정책과제 C-3. 기타 보육관련 제도 정비

2

【정책목표A】 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



추진사업

A-1-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 사업목적

- 지역별 공공보육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내 모든 시·군에 안정된 보육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향상

2. 현황 및 추진배경

- 2010년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 1,085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7.0%에 불과함.
 - － 전국 평균(5.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공립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전국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확실한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목표달성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음.
 - － 제2기 강원도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함. 또한 가장 희망하는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요구가 현저하게 높음.

3. 사업목표 및 내용

현재(2010)		목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7.0%		제1안	1% 증가(국공립어린이집 비율 8.0%)
		제2안	10% 달성(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0%)

- 최근 강원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2~3개소 수준으로 확충되고 있어, 국공립 비중은 타 시·도보다 높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2005~2019: 14.7%)은 전국 평균(23.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또한 최근 민간부문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의 증가와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의 증가로 향후 민간부문에서의 보육사업 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적극적 확충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의 강원도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7.0%)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임.
 - － 반면, 최근 보육료 지원 방식의 보육재정 확대 추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공립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공립 확충 규모가 확대·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강원도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제고해야 함. 그러나 시설 확충 예산, 확충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에서는 2가지 안을 제시함.
 - － 제1안은 “1% 증가”안으로서 2010년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인 7%를 2016년까지 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제2안은 동 년도까지 10%까지 달성하는 것임.
- 계획 종료 시점(2016년)까지의 제1안과 제2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량(국공립 어린이집 수)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산출 방식 〉

- 기본전제
 - － 무상보육 및 공공형어린이집 등 보육재정의 급격한 확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
 - －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어린이집) 증가가 주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사업량 산출 적용 어린이집 증가율 기준 : 5%
 - － 강원도의 연평균 어린이집 증가율 : 4.8%(2005~2009년)
 - － 연평균 증가율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되, 앞서 제시한 기본가정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 예측되므로 0.2% 정도를 추가
- 사업량 산출 : “각 연도의 어린이집 수 × 0.5%” 에 의한 증가분을 매년 반영

연도	2010년 (기준연도)	2016 (목표년도)	2012~2016(5개년)	
			총사업량	연도별사업량
어린이집 수(개소)	1,085	1,456	-	-
제1안	7.0%(77개소)	8.0%(117개소)	40개소	매년 8개소
제2안	7.0%(77개소)	10.0%(146개소)	69개소	매년 13~14개소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시·군, 중앙정부(신축비 지원)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제1안 (1% 증가)	사업량(개소)	8	8	8	8	8	40개소
	예산(백만원)	3,808	3,808	3,808	3,808	3,808	19,040
제2안 (10% 달성)	사업량(개소)	13	14	14	14	14	69개소
	예산(백만원)	6,188	6,664	6,664	6,664	6,664	32,844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기본가정: 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모두 신규설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즉, 기존 시설의 기능전환의 경우는 예산 산출에서 고려하지 않음.
-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립 지원 단가 : 476백만원
- 제1안에 의한 예산 산출 공식

- 5년 × 8개소 × 신규 어린이집 설치 단가
- 5년 × 8개소 × 1년간 운영비

- 제2안에 의한 예산 산출 공식

- 5년 × 14개소 × 신규 어린이집 설치 단가
- 5년 × 14개소 × 1년간 운영비

6. 추가 고려사항

-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및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
- 도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추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기획적으로 추진, 계획기간 중 사업량 설치 완료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대상 지역(시·군) 선정 : 신규 설치 계획 수립시 대상지역 기선정 및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설립 추진
- 보육대상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를 통해 전체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의 공립화를 통하여 정원은 유지하되, 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고려

추진사업

A-1-②

농어촌지역 등
보육서비스 공급 개선

1. 사업목적

- (어린이집 미설치) 농어촌지역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들 지역 가정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 만족도 향상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농어촌 지역은 보육대상 아동수가 감소하고, 접근성이 낮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본 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한 FGI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보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도출함.

- 군부대지역 인사이동 시기 및 동절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11~2월 보육아동 수 급감, 난방비 등 지출 증가
- 원거리 지역 소수 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운행의 문제: 농어촌 지역 아동 수 감소로 원거리 보육아동 입소 및 차량운행 불가피 → 현행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수준의 비현실성
- 연령통합반(5, 6, 7세) 운영시 표준보육과정 적용의 어려움
- 농번기 시간연장운영: 농번기 농촌부모의 일과에 따른 조기등원 및 아침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어려움
- 반별 정원충족의 문제: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 수 부족으로 특정 연령 아동 인원 미달 등 반 구성의 어려움 발생

자료: 본 계획 79쪽 참조

-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아동 수 감소로 연령별 반 구성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 2010년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은 모두 9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19개

지역으로 모두 농어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읍·면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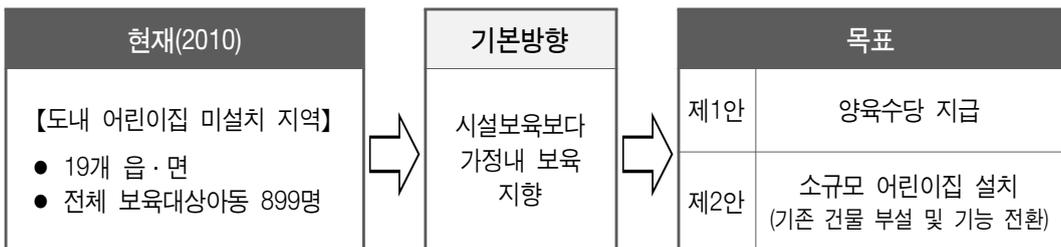
- 이들 19개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수(0~5세)는 모두 899명임. 각 읍·면별로 최소 11명에서 최대 122명의 아동이 분포함.

표 3-1. 강원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2010년말)

구분	계	춘천		강릉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양	
읍면동수(개)	19	2	1	3			3			1	5			1	1	2					
읍면동명	-	남면	북산면	왕산면	신기면	가곡면	노고면	두촌면	내촌면	서면	갑천면	상동읍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	화암면	근남면	서면	현북면	
보육대상 아동수(명)	899	25	14	25	16	12	11	46	37	74	49	26	41	56	56	43	61	122	81	104	
계	899	39		25	39			157			49	166			61	122	185				

자료: 본 계획 46쪽의 표 2-19를 재구성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농어촌 지역은 수요(시장성)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 진입의 동기가 약함. 따라서 공공부문 또는 공공재원을 통해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앞의 표 3-1에서 보면, 보육대상아동 수가 대체로 50명 이하임. 또한 이들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100%(지역내 모든 보육대상 아동이 모두 어린이집 이용)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집 이용가능 아동은 이보다 적은 규모임.

- 이는 이들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설립하고 반별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임.
- 따라서 이들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존의 시설보육 방식 이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의 보육대상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안을 제시함.
 - 제1안은 이들 지역에 어린이집을 확대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제2안은 기존의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확충 방향을 유지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임.

1) 제1안 : 양육수당 지급

- 제1안에 따른 양육수당의 경우, 2012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표 3-2. 양육수당 지급 기준(2012)

구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지급금액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이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 가정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상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비율이 높음.
- 다만,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될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들은 해당 가정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무상 보육 및 교육 등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므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보육대상 아동 중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¹⁰⁾.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9) 즉,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친인척이나 이웃 등을 통한 보육, 유치원 등 다른 유사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방식이 존재함.

10)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있는 보육료 기준과 현재의 양육수당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무상보육이 확대될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못 받는 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

- 다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36개월 미만까지는 현재 양육수당 수준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양육수당 미대상인 만3세~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인 10만원(3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과 동일)을 지원함.
-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전체 아동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조정함.

〈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지역 양육수당 규모 산출 〉

● 보육료 지원 금액(A)과 양육수당 지원 금액(B)의 차액(A-B)

구분		양육수당 대상 연령(원)			양육수당 미대상 연령(원)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 수준	보육료(A)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양육수당(B)	200,000	150,000	100,000	0	0	0
차액(A-B)		194,000	197,000	186,000	197,000	177,000	200,000

자료 : 2012년 보육료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양육수당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함.

● 사업량 산출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만 0~5세 이동 중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 가정(전체)
- 지원 금액

구분	양육수당 대상 연령			양육수당 미대상 연령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 향후 추진 방향

- 보육료 지원 금액과 양육수당의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위의 표 참조)

2) 제2안 :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 기존의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향에 의거하여 이들 지역에 있는 기존 인프라 (마을회관, 폐교,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내 공공건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함.
 - － 현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면, 보육정원을 20명 이하로 하고, 반편성 기준이나 인력 배치 기준은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산간 지역”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영유아 혼합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보육대상 아동 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도서·산간 지역에 설치하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고려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시·군
- 중앙정부 : 제도 개선(농어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 관련)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제1안 (양육수당)	사업량(명)	현재무상 보육대상 아동 (영아 및 만5세)	전체아동 (3·4세 아동까지 확대)	전체 아동	전체 아동	전체 아동	
	예산(백만원)	양육수당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2안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량(개소)	수요조사 후 결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예산(백만원)	설치 및 운영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제1안에 의한 예산 산출 공식

1차년도	$[(\text{만1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1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2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2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5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5세 미만 지원 금액})] \times 12\text{개월}$
2차년도 이후	$[(\text{만1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1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2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2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3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2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4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2세 미만 지원 금액}) + (\text{만5세 미만 보육대상 아동 수} \times \text{만5세 미만 지원 금액})] \times 12\text{개월}$

○ 제2안에 의한 예산 산출 공식 : 양육수당이 아닌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정된 지역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 시설당 설립 단가 ●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 시설당 운영비
--

6. 추가 고려사항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시·군)별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양육수당 방식,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결정 필요
-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 정책 변화와 연동 추진 고려

추진사업

A-2-①

어린이집 설치·인가기준의 합리화

1.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및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각 지자체의 어린이집의 공급 규모는 각 지자체(시·군·구)의 어린이집 수요공급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정하고 있는 “인가 제한 및 해제 기준선”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에 근거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으로 산출하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일정 수준(예: 80%)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 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제한을 해제하여 신규 어린이집의 진입 허용. 다음은 한 지자체의 사례임.

〈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제한 기준 사례; 의정부시 〉

- 해당 연도(예: 2008년)의 의정부시 전체 영유아수 대비 보육공급률(정원) 60.5%를 기준으로 영유아수대비 보육수요율(현원) 46.3%에 부호자의 선택권 10%를 추가한 56.3%를 적정 수요율로 판단하고, 보육공급률(정원) 60.5%를 초과할 때까지 시 전역에 인가제한을 실시
- 신규공동주택에 한하여 의무설치 어린이집(당연인가)을 제외한 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인가는 공동주택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공급률(정원) 60.5%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별도의 공모·추첨을 통해 인가신청자를 선정하며, 인가허용 정원의 산정은 다음과 같음.

- 세대당 평균인구수 2.67명 × 세대수 × 영유아인구 비율 6.2% × 60.5%
- 산정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 1개소의 신규설치 인가 추가 허용

-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정원 총족률)을 기준으로 80% 이상일 경우 시설을 인가하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인가를 제한하고 있음. 인가제한 여부는 각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최근 5년간 도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해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3.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해제 현황(2006~2010)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
춘천	제한	-	제한	제한	제한	-	제한
원주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강릉	-	-	07하반기~08상반기 부분제한		-	-	-
동해	-	-	일부지역제한	제한	한시적 해제	제한	제한
태백	-	-	-	-	-	-	-
속초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삼척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홍천	제한	제한	-	-	-	-	-
횡성	-	-	-	-	제한	한시적제한	제한
영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평창	-	-	-	-	-	한시적해제	-
정선	-	-	-	-	-	-	-
철원	제한	제한	일부지역 제한		제한	제한	제한
화천	-	-	-	제한	제한	제한	한시적해제
양구	-	-	-	-	제한	제한	제한
인제	-	-	제한	-	제한	제한	-
고성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양양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주: “-”는 해제를 의미함.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현재 강원도와 더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 제한 기준은 공보육을 목표로 지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인가 제한 기준에 따른 정원총족률은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산출함. 즉, 인가제한을 해제하는 정원총족률 기준(80%)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총족률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 설치 인가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으로 민간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민간 영역내 어린이집의 “매매”등 보육서비스의 안정된 기반 확보를 저해하는 기능을 초래함.
- 다음의 표는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강원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808명에 불과한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5,828명, 법인어린이집은 2,148명, 가정어린이집은 1,696명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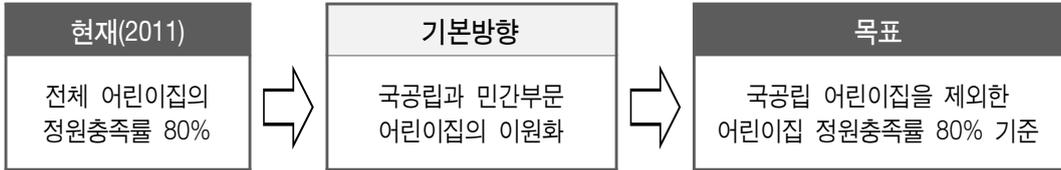
표 3-4.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유형별 미달 아동 수(2010)

지역	시설별 정원 미달 아동 수(정원 - 현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강원도	10,635	808	2,148	5,828	937	4,891	17	1,696	138
춘천시	2,127	49	198	1,429	149	1,280	4	415	32
원주시	2,514	171	417	1,188	232	956	5	673	60
강릉시	1,835	49	359	1,093	10	1,083	8	291	35
동해시	434	15	84	294	3	291	-	33	8
태백시	90	75	1	14	1	13	-	0	-
속초시	715	57	76	444	35	409	-	138	-
삼척시	381	89	100	190	40	150	-	2	-
홍천군	625	30	154	381	191	190	-	57	3
횡성군	416	24	205	155	111	44	-	32	-
영월군	212	13	156	42	41	1	-	1	-
평창군	150	17	14	101	6	95	-	18	-
정선군	223	20	203	-	-	-	-	-	-
철원군	321	9	15	290	24	266	-	7	-
화천군	140	61	45	17	6	11	-	17	-
양구군	163	11	64	83	41	42	-	5	-
인제군	136	59	30	42	29	13	-	5	-
고성군	97	53	-	43	-	43	-	1	-
양양군	56	6	27	22	18	4	-	1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재구성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집의 확충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등 정원이 크게 미달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무분별한 공급의 확대는 어린이집간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현실에서 질 낮은 어린이집을 양산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수요자인 보육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지역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은 자칫 이미 진입한 어린이집 즉, 기득권의 경쟁의지를 하락시키고, 보육서비스 독점 등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전체적인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보육서비스 공급자로 진입을 희망하는 민간의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그러나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무상보육,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공적인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 간 경쟁을 유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요소를 존재함. 즉, 이들 제도적인 요소들과 공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존에 보육서비스 공급자로 진입해 있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강화함.
-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적인 대안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 이외의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기준 산정의 이원화를 검토함.
 -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80%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방식을 이원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만 산출하여 신규 설치인가 기준으로 활용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시·군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개소)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예산(백만원)	-	-	-	-	-	비예산

6. 추가 고려사항

- 시·군과 사전 협의

추진사업

A-2-2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 위탁운영 방식 개선

1. 사업목적

-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적인 기능 제고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의 자기 개발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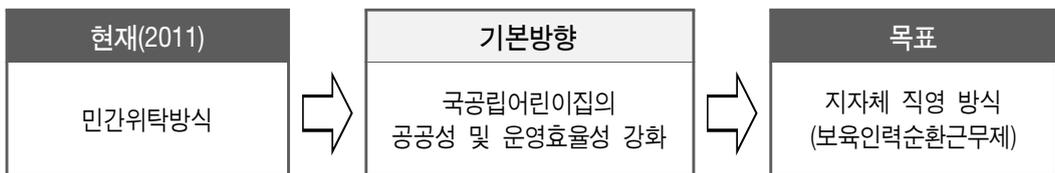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위탁심사 후 민간의 위탁체(자)를 선정하고, 이들 운영체(자) 의해 보육교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임.
 - 민간위탁방식은 시설장의 보육관련 전문성을 통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가 있으나 현재 방식은 비용과 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즉, 위탁 받는 주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효율성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위탁심사과정 및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 등 문제가 발생함.
 -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민간 시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보육서비스를 선도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원장)는 “재위탁”의 부담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는 모두 “지자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은 개별 시설장의 역량 등에 맡겨지는 등 개별화되어 있어, 다른 민간부문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 “공공”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미흡함.
 - 보육교사 등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체의 대표나 시설장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탁체(자) 변경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비전을 갖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의 공공성과 이들 인력의 안정된 근무 및 관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내 태백시와 경남의 창원시의 사례를 검토함.

표 3-5.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공개채용 사례

태백시의 사례 : 「보육조례」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p>제13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기타 종사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p> <p>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格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14조(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 ①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이동보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이 임시교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p> <p>제16조(전보)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발령할 수 있다.</p>	<p>자료: 태백시 영유아보육조례(2008년 10월 10일 제정)</p>
창원시의 사례 : 「영유아보육조례」 제5장 어린이집종사자	
<p>제36조(종사자의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시설의 장·보육교사·특수교사·영양사·간호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그 외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이 임면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이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p>제37조(전보)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p>	<p>자료: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2006년 5월 1일 제정, 2010년 12월 31일 개정)</p>

3. 사업목표 및 내용



- 현재의 민간위탁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지자체(시·군) 직영방식으로 전환함.
 -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인력 채용계획을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고, 필요인력의 공개채용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육관련 조례를 개정함. 이는 현재 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종료 시점부터 적용·시행함.

- 공개채용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개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정 연한(예: 3년)을 주기로 순환 근무하도록 함.
 - － 따라서 각 지자체(시·군)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정 개소 수 이상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이 제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인력운용방식(순환근무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 보육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안정된 신분과 근무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음. 또한 조직 내에서 승진체계(평교사 → 주임교사 → 원장)의 운영이 가능하여 직무와 조직에 대한 동기와 자극이 부여됨.
 - － 지자체 및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간 장비,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의 연계와 공유가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함.
 - － 지역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보육교사에 대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공유, 행사 공유, 장비 및 시설 공유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선도함.

4. 사업추진주체

- 시·군(조례 개정, 제도 시행), 강원도(지침 발달)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내용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비예산

6. 추가 고려사항

-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정 규모(5개 이상: 현재 춘천, 원주, 삼척, 고성) 이상되는 지역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 추진하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인건비 지원 등) 등 지원방안 모색

3

【정책목표B】 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



추진사업

B-1-①

어린이집 차량운행 방식의 합리화

1. 사업목적

- 어린이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인력의 업무부담(원장의 복합적인 역할 수행, 보육교사의 당직 근무 및 차량지도)을 완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이용아동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음. 다음의 표에서 보면, 도내 어린이집의 92.0%가 차량 운행. 민간(개인)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100.0%임.

표 3-6. 시설유형별 등·하원 차량운행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직장	가정	계
차량운행	82.8	97.3	100.0	25.0	83.3	92.0(173)
차량미운행	17.2	2.7	-	75.0	16.7	8.0(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88)

주: 도내 차량운영과 관련된 가장 최근 조사 자료임.
 자료: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2006), 강원도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책 요구 및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p.39의 내용을 재구성.

- 또한 이들 차량의 운행자 중 32.9%가 시설장이고, 전담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59.0%로 나타남.
 - 그러나 이는 대부분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 해당되고,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시설장의 41.2%가 차량을 직접 운행함.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으로서 시설장의 72.0%가 차량을 운행하고, 전담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의 인력규모, 특히, 보육교사와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함.

표 3-7. 시설유형별 차량운행자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직장	가정	계
시설장	4.2	23.6	41.2	-	72.0	32.9(57)
보육교사	8.3	5.6	3.9	100.0	8.0	6.4(11)
전용기사	87.5	66.7	54.9	-	20.0	59.0(102)
기타	-	4.2	-	-	-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73)

주: 도내 차량운영과 관련된 가장 최근 조사 자료임.
 자료: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2006), 강원도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책 요구 및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p.42의 내용을 재구성.

- 차량 운행 및 지도를 원장이나 보육교사¹¹⁾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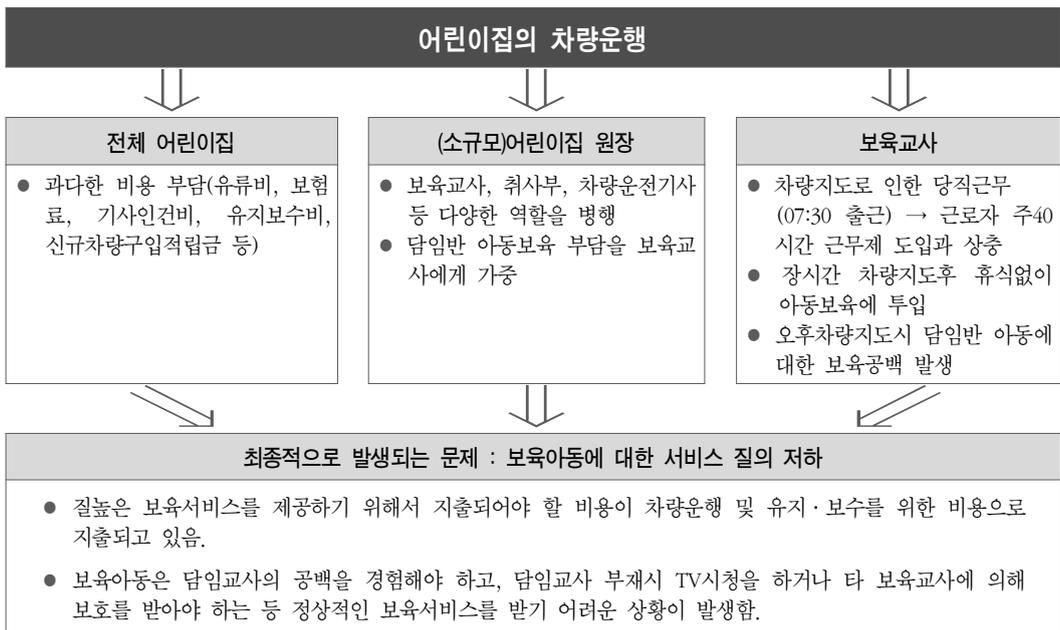


그림 3-1.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원인 도식

- 특히 개별 어린이집에서 아동 보육을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닌, 차량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규모가 큼. 다음은 도내 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소요내역임.

11)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 동승자의 93.7%가 보육교사로 나타남.

표 3-8. 도내 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소요 내역 사례

구분	A어린이집 사례	B어린이집 사례
시설유형	●법인의(농어촌어린이집)	●가정
회계연도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차량종류	●2대(15인승/12인승)	●1대(12인승)
차량운행시간	●15인승: 1일 오전 오후 각 3회 운행 (각 편도 25분, 55분, 30분 소요) ●12인승: 1일 오전 오후 각 3회 운행 (편도 1시간 소요)	●편도 약 30분
차량이용아동 수	●55명(15인승: 44명, 12인승: 11명)	●5~6명
비용(연간)	●유류비: 9,132,331원 ●유지·관리비: 4,991,000원 ●기사인건비(1대): 11,983,760원 ●차량할부금: 2,936,644원(중고15인승) ●총계: 29,043,735원(월평균 약240만원)	●유류비: 3,613,464원 ●유지·관리비: 614,544원 ●기사인건비: 없음 ●차량할부금: 2009년도에 완료 ●총계: 4,228,008원(월평균 35만원)
비고	●2대 차량 중 1대(12인승): 원장 운전으로 인건비 절감	●원장(가족) 직접 차량 운전으로 인건비 절감 ●원장 가족이 자체적으로 차량정비 및 수리하여 비용 절감

- A어린이집의 경우, 2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월평균 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2대 차량 중 1대는 원장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월평균 3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됨. 이러한 비용은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지원단가(20만원)를 기준으로 볼 때, 14~15명 아동의 전체 보육료를 합산한 금액에 상응함.
- B어린이집의 경우, 월평균 35만원의 차량운행비를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인 어린이집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 인건비와 각종 수리비 그리고 차량 할부금 등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례임.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 어린이집이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만5세 기준 7~8명 즉, 어린이집 아동 정원의 1/3이상을 차량운행비에 지출하고 있음.
- 도내 어린이집 조사결과에서도, 차량운행관련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6.5%나 되고,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 '차량운행유지 비용'이 75.6%로 가장 높음.

표 3-9. 시설유형별 차량운행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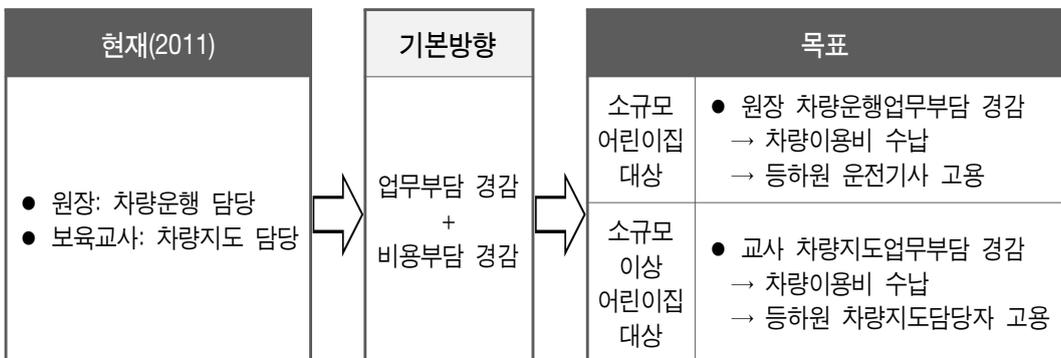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직장	가정	계
문제있음	차량기사 구하기	8.3	4.2	-	-	-	2.9(5)
	차량운행유지 비용	45.8	71.8	96.1	100.0	72.0	75.6(130)
	차량운행시간	12.5	5.6	-	-	-	4.1(7)
	사고 위험	25.0	11.3	2.0	-	24.0	12.2(21)
	기타	4.2	2.8	-	-	-	1.7(3)
	소계	95.8	95.8	98.0	100.0	96.0	96.5(166)
별문제없음		4.2	4.2	2.0	-	4.0	3.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72)

주: 도내 차량운영과 관련된 가장 최근 조사 자료임.
 자료: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2006), 강원도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책 요구 및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p.43의 내용을 재구성함.

- 이처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보육인력(원장,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소진, 보육인력의 공백, 과중한 비용지출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임.
- 따라서 보육인력의 업무부담의 경감과 비용지출의 절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제고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현재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직접 차량운행 및 지도를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 차량의 운전기사 및

차량지도담당자를 고용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육아동가정에 대한 차량이용비 수납을 허용함. 다만, 소규모어린이집과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차량운행과 관련된 문제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규모별 대안이 필요함.

1) 소규모어린이집(39인 이하) 대상 개선안; 원장의 업무부담 완화 → 운전기사 고용

- 소규모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의 복합적인 업무부담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공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이들 어린이집 중 차량이용비를 수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차량운행을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비용을 수납한 차량이용비로 대체하도록 함.
 - － 다만 별도로 차량이용비를 수납하는 이들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도 소비자인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이들 어린이집의 차량운전기사는 반드시 “도로교통안전협회”등 전문(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차량안전운행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즉,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부모로부터 수납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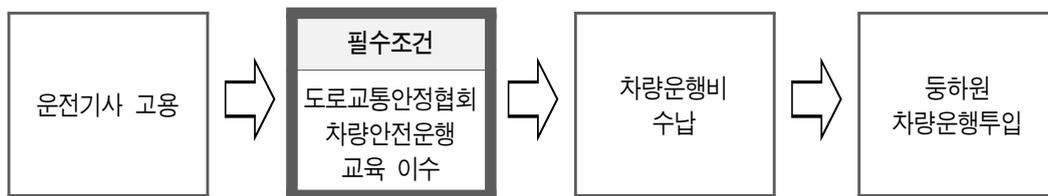


그림 3-2. 차량이용비용수납에 따른 등하원 차량 운전기사고용 절차

2) 소규모이상 어린이집 대상 개선안: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 → 차량지도담당자 고용

- 소규모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특히, 국공립과 법인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이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등 직원 수가 많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비해서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 오히려 이들 어린이집은 차량은 차량지도로 인해 당직근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가 더 시급함. 더욱이 최근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40시간 근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소규모 이상 어린이집은 당직 등 근무교사에 대한 초과근무비 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들 어린이집 중 차량이용비를 수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차량지도도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비용을 수납한 차량이용비로 대체하도록 함.
- 다만, 별도로 차량이용비를 수납하는 이들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지도담당자도 소비자인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이들 차량지도담당자는 반드시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전문(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차량안전지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부모로부터 수납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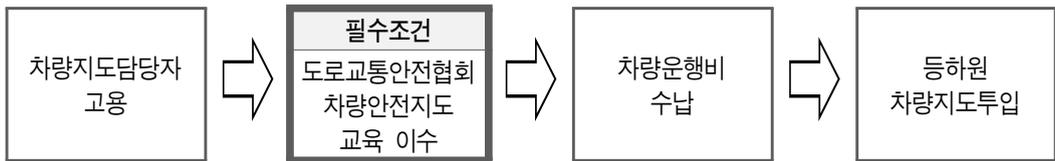


그림 3-3. 차량이용비 수납에 따른 등하원 차량지도담당자 고용 절차

4. 사업추진주체

- 시·군(제도 시행), 강원도(지침시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내용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예산(백만원)	-	-	-	-	-	비예산

6. 추가 고려사항

- 이 제도는 차량이용비 수준은 구간(예: 15,000원~20,000원)으로 정하여 어린이집의 현실과 부모와의 협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납

추진사업

B-1-②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1. 사업목적

- 대체교사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공백을 막아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휴가 사용이 어려웠던 보육교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교사 사기를 진작하며, 보수교육 등의 원활한 참여 유도도 보육인력의 질 제고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워, 보육현장에서 보수교육 참여나 휴가 사용 등 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 강원도의 대체교사 확보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0명, 2011년에 9명, 2012년에 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 이는 대체교사의 근무특성(이동거리, 어린이집 및 보육대상 아동의 변동 등)에 비해서 인건비 수준이 낮아, 대체교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기 때문임.

표 3-10. 강원도 대체교사 현황

연도	계	지역별 대체교사					관리직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2010	10	2	3	2	1	1	1
2011	9	2	3	1	1	1	1
2012(예정)	7	2	1	1	1	1	1

자료: 강원도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 또한 도내 18개 시·군 중 그나마 대체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은 5개 시지역에 불과하고, 군지역은 대체교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 또한 대체교사가 확보된 시·군에서는 1년동안 대체교사의 고용을 보장해야 함. 즉, 대체교사

를 확보한다고 해도 해당 시·군의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12개월 동안 활용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대체교사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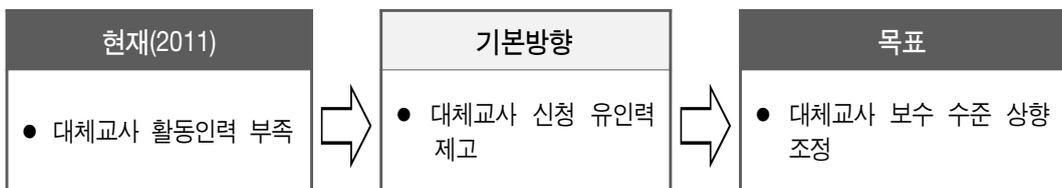
- 이러한 현실을 볼 때, 18개 시·군 중 13개 지역의 보육교사는 보수교육 참여나 휴가 등 활용에 있어서 타지역 보육교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편, 2011년 대체교사의 활용 현황을 보면, 월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즉, 주로 1~2월에는 대체교사 활용률(2.9%)이 상당히 낮음.
 - 보육정보센터와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보수교육이나 보육교사의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인 5~8월에는 대체교사 신청 건수가 많아,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 신학기인 3~4월이나, 학기말인 1~2월에는 신청건수가 거의 없어, 대체교사의 근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대체교사를 운용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입장에서는 매월 대체교사의 근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신청건수(수요)가 대체교사 수(공급)과 불일치하는 시기에는 어린이집과 스케줄 조정을 위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즉, 대체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도 대체교사를 활용해야 하거나, 대체교사가 절실한 시기에는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표 3-11. 월별 대체교사 활용 현황(2011)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횡수(건)	384	11	11	44	36	36	42	34	32	39	32	31	36
	비율(%)	100.0	2.9	2.9	11.5	9.4	9.4	10.9	8.9	8.3	10.2	8.3	8.1	9.4
지역별(건)	춘천	65	-	-	9	8	8	8	8	6	5	4	4	5
	원주	143	8	7	15	12	12	15	12	11	15	12	11	13
	강릉	91	3	4	10	8	8	9	8	7	10	8	8	8
	동해	42	-	-	5	4	4	5	3	4	4	4	4	5
	속초	43	-	-	5	4	4	5	3	4	5	4	4	5

자료: 강원도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3. 사업목표 및 내용



- 보육현장에서의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대체교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수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 － 즉, 대체교사는 근무환경의 잦은 변동과 이동거리 등으로 일반 보육교사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수 수준이 우선적으로 인상되어야 함¹²⁾.
- 또한 대체교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파견하는 공공인력이고, 다양한 어린이집을 순회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활용하는 어린이집의 만족도(보육교사로서의 자질 및 해당 어린이집의 경험에 대한 비밀보장 등)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만족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질 높은 대체교사의 확보가 중요함.
- 결국 질 높은 대체교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 2011년 현재 대체교사의 기본보수는 135만원 수준이고,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기본보수 수준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임.
 - － 그런데 대체교사의 보수에는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매년 1호봉 수준에서 동일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일반보육교사와 근무여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 즉,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지원에 의해서 고용된 대체교사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일반보육교사와 동일하게 호봉상승분을 적용하여, 대체교사로서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 수준도 상승해야 함.
 -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교사 신청에 대한 유인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질 높은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로서의 진입 시기에 높은 보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함.
-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보수 수준 개선이 필요함.
 - － 즉,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에 해당하는 현재의 보수 수준을 5호봉 수준으로 개선하여 그 차액(22만원)을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지급함.

12) 대체교사는 각 시·군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교사를 확보했어도 해당 시·군 소재 어린이집의 수가 적어 이들 인력을 매월(12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활용가능성이 없음. 즉, 공급이 이루어져도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 따라서 대체교사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대체교사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거리 시·군간 "대체교사의 공동활용제" 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자체 예산 부담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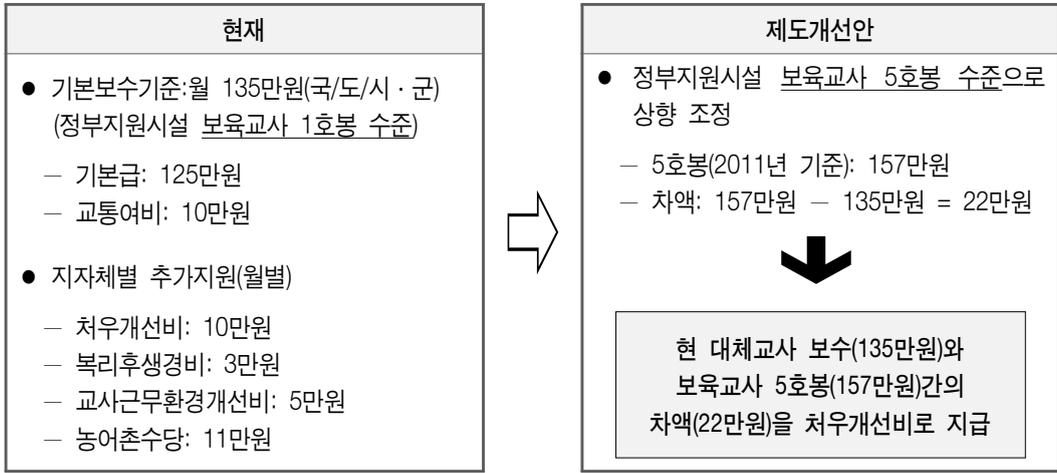


그림 3-4. 대체교사 보수 수준 상향조정(안)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예산 지원), 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 운용)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명)	10	11	11	12	12	56(연인원)
예산(백만원)	26.4	29.0	29.0	31.7	31.7	147.8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기본가정 : 대체교사 보수 수준 인상으로 계획기간 내에 신청자 수가 강원도에 배정된 대체교사 인원(12명, 국비 보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가정
- 예산 산출 공식

● 각 연도별 사업량(대체교사 수) × 22만원(처우개선비) × 12개월

6. 추가 고려사항

- 처우개선비 수준은 일반보육교사의 보수 수준 인상시 연동하여 상향 조정

추진사업

B-1-3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1. 사업목적

-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을 완화함으로써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2. 현황 및 추진배경

- 양육자의 변화는 영유아기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의 안정성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보육교사는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나타나는데, 보육교사의 이직이 많은 이유는 첫째, 과도한 업무부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보육교사는 당직, 야근 등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주40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시점 대비 1년간 보육교사의 평균 이직은 2.1명이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보육교사 수는 2.4명이고, 이직자 수는 1.8명임.

표 3-12.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연도	계	평균 총 근무경력	평균 현 시설 경력	평균 호봉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년 4개월	3년 2개월	5.1
	법인	4년 8개월	3년 0개월	4.4
	민간/법인외/부모협동	3년 9개월	1년 9개월	3.7
	가정	3년 2개월	1년 3개월	1.8
	직장	4년 2개월	2년 3개월	4.4
규모	20명 이하	3년 3개월	1년 3개월	2.0
	21~39명	3년 9개월	1년 9개월	3.7
	40~79명	4년 3개월	2년 3개월	4.4
	80명 이상	4년 6개월	2년 7개월	4.7
전체		4년 0개월	2년 1개월	4.2

자료: 강원도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 또한 같은 조사결과에서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평균경력은 4년이고, 현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은 2년 1개월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국공립과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 차이가 큼.
-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평균 경력은 2년 1개월임.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민간 및 가정 등의 근무 경력 차이도 크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년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규모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현 시설의 근무경력이 짧음.
- 전반적으로, 가정 및 민간 등 어린이집의 근무경력이 짧음으로 보육교사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호봉상승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도 나타나므로 장기간 근무로 인한 보육교사의 호봉상승은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의 이직이 앞서 이직하거나 이직을 권고 받는 사례도 있음.
 - 본 계획수립시 실시한 FGI에서도 호봉문제로 인하여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체로 1년을 단위로 이직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는 점이 지적됨.
 - 따라서 보육교사의 이직을 완화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도내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홍천, 영월, 철원 등 5개 시 3개 군지역에서 자체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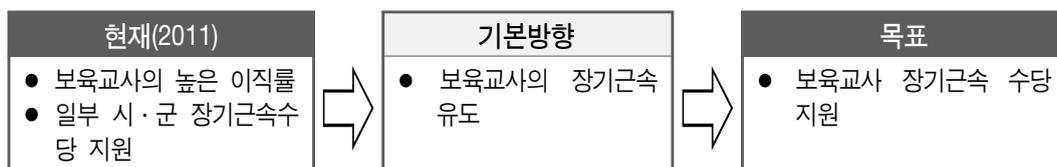
표 3-13. 강원도 18개 시·군의 장기근속수당 지원 현황(2011)

연도	사업량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춘천시	630명	400,000천원	사립시설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미만 : 5만원 ● 3년 이상 : 7만원
원주시	442명	150,60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 3년 이상 ● 미지원 : 2년 이상
강릉시	180명	62,100천원	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 3만원
속초시	110명	50,00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3년 미만 : 3만원 ● 3년 이상~4년 미만 : 4만원 ● 4년 이상 : 5만원
삼척시	70명	40,00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차등 지원 : 3~7만원
홍천군	43개소	30,00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차등 지원 : 3~5만원
영월군	52명	29,64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5년 미만 : 3만원 ● 5년 이상 : 7만원
철원군	73명	34,320천원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3년 미만 : 3만원 ● 3년 이상~4년 미만 : 4만원 ● 4년 이상 : 5만원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대부분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민간부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그 대상을 제한하고, 원주시는 정부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강릉시는 보육교사 이외에도 치료사 및 특수교사 등 장애아보육인력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지원 수준은 3~7만원으로 다양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모든 시·군의 보육교사가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도의 시책으로 흡수하여 합리적인 ‘장기근속수당’시책 마련이 필요함.
- 장기근속수당의 대상은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즉, 특수교사 및 치료사도 포함시킴.
 -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인 여건상,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도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됨.
-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위한 근속기간은 국공립 및 법인 등 공공부문과 민간 및 가정 등 민간부문에 차등을 둬.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각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함.
 - 즉, 현시설 평균근속시간과 평균 총 근무경력의 2가지 기준을 반영하여 각 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 지원금액 수준은 호봉상승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 부담되어 나타나는 비자발적 이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 1호봉 상승시 발생하는 금액을 고려함. 특히,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 시설 평균경력(약 3년)과 총 경력(약 5년)을 고려할 때, 각 경력에 해당하는 보육교사의 호봉에 따른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음.
 - 2011년도 현재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3호봉은 1,476,790원 4호봉은 1,523,170원으로 3→4호봉 상승시 약 4만6천원의 차이가 있고, 5호봉은 1,569,960원이고 6호봉은 1,677,840원으로 5

→6호봉 상승시 약 10만8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어린이집 호봉상승 부담으로 인한 이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수당의 수준을 결정함.

- 또한 장기근속수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이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을 대체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즉, 장기근속수당이 보육교사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수당 지급 당시의 임금수준에 온전하게 임금상승분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요건을 반영하여 본 계획에서 제안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14. 장기근속수당 지원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사업시행 시점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 반영 — 사업시행 시점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근무 ●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근속기간 및 경력을 반영하고, 각 근속기간과 경력에 따른 정 부지원어린이집 호봉 상승 금액을 반영(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구분	1차 장기근속수당		2차 장기근속수당	
	현어린이집 근무연한 (현 시설 평균 근속시간 반영)	수당금액 (3-4호봉 상승시 차액: 4만6천원 반영)	현어린이집 근무연한 (총 경력 반영)	수당금액 (5-6호봉 상승시 차액: 10만8천원 반영)
국공립 및 법인	3년 이상	4만원	5년 이상	10만원
민간 등	2년 이상	4만원	4년 이상	10만원
가정	1년 이상	4만원	3년 이상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개별 통장에 입금 ● 추가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수당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임금을 타협하여, 수당을 온전하게 임금상승분으로 반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즉시 수당지급 중단 및 별도의 벌칙을 부여함. 				
---	--	--	--	--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예산 지원)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명)	경력별 보육교사 수(2,130 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0,650명
예산(백만원)	1,754	1,754	1,754	1,754	1,754	8,770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예산 산출 공식

- 1차 근속수당 지급 대상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근속기간별 보육교사 수 × 유형별 수당금액(4만원)
- 2차 근속수당 지급 대상
 -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근속기간별 보육교사 수 × 유형별 수당금액(10만원)

6. 추가 고려사항

- 해당 사업 시행 시점에 근속 보육교사 수(사업량) 산출

추진사업

B-2-①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

1. 사업목적

- 어린이집 내 영아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영아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2. 현황 및 추진배경

- 기본보육료 등 지원 확대에 의한 수요자(보육아동 가정)뿐만 아니라, 공급자(어린이집)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다음 표에서 2005년과 2009년에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한 기본보육료 도입 전후의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를 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이용률이 상승함.
 - 구체적으로 보면, 영아의 경우 취업모의 가정에서는 25.8%(2005년) → 51.3%(2009년), 미취업모의 가정에서는 6.0%(2005년) → 23.0%(2009년)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함.

표 3-15. 2005년과 2009년(기본보육료 도입 전후)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영아(%)				유아(%)			
2005		2009		2005		2009	
취업모	미취업모	취업모	미취업모	취업모	미취업모	취업모	미취업모
25.8	6.0	51.3	23.0	50.4	31.6	51.1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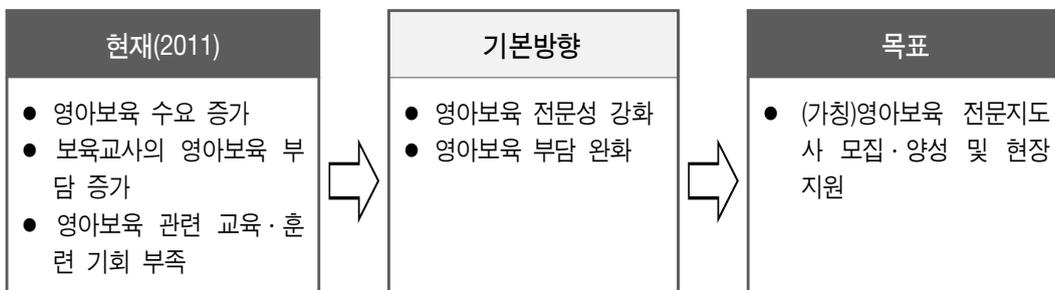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p.115, 여성부·육아정책연구원, 「200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의 자료를 재구성(임유경(2010), 강원도 미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 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p.24에서 재인용)

- 2010년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의 전체 이용아동(41,292명) 중 만2세 미만 영아(19,528명)의 비율은 47.3%로, 영아의 수가 거의 절반 수준임.
- 이처럼 영아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아보육에 비해서 영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영아는 보육자의 보육방식과 보육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대상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함.
 - － 그러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육아 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경우, 영아보육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호소하고, 이를 기피하고 있음.
 - － 더욱이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일수록 영아보다는 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영아반은 ‘학력이 낮지만 연령이 높은 보육교사’나 ‘연령이 낮지만 경력은 적은 보육교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유아에 비해서 영아보육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어린이집의 현실을 볼 때,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 본 계획수립을 위한 실시한 어린이집 원장 FGI 결과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수업 준비가 유아에게 편중되어 있어 영아보육을 위한 교사 자질 향상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FGI 결과에서도 ‘영아반 관련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대학교육 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서도 영아 보육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기회 부족함.
- 따라서 영아보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인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교육·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보육현장의 영아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이

를 위해 (가칭)영아보육전문지도사를 양성,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지원함.

- 영아보육전문지도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16.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양성·활용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교육·파견 담당 기관: 강원도보육정보센터 ●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아보육 전문도우미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유휴여성인력 활용 ●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기초교육과정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 추후 결정 — 교육내용 :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 영아보육전문도우미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추후 보육정보센터와 협의 후 결정) ●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활동(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 양성 규모: 18개 시·군별로 1인 — 활동시간: 1개 어린이집, 1주일 1회, 4시간 — 보수: 실비지급(일급 3만원) — 업무: 어린이집에 전문도우미로 파견하여 2담임제 형태로 영아보육에 참여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조력과 지원을 실시함. ●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를 10명 이상(※추후 수요에 따라 기준 조정) 보육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 소규모 어린이집 우선 + 영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 우선 — 지원횟수: 추후 어린이집 수요 및 도우미 공급 규모에 따라 조정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시·군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명)	18	18	18	18	18	연인원 90
활동 횟수 (기준: 2회/주)	연간96회/1인	연간96회/1인	연간96회/1인	연간96회/1인	연간96회/1인	-
예산(백만원)	51.8	51.8	51.8	51.8	51.8	259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기본가정: 영아보육전문지도사 인력 규모와 주당 활동 횟수(2회/1인)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 규모 결정.
 - 영아보육전문지도사 1인이 연간(12개월) 96회 활동이 가능하므로, 화천군의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영아가 10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3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영아가 10인 이상인 어린이집이 절반 수준(16개소)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6회를 파견·지원받을 수 있음.
 - 반면, 춘천, 원주, 강릉과 같이 어린이집이 다수인 지역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 추후 수요에 따라 인력 확대 등 고려.

도내 어린이집 현황(2011년말)

계(개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26	258	412	218	89	36	76	60	70	40	30	34	26	39	32	22	35	24	25

- 예산 산출 공식

$$\bullet 18\text{인} \times \text{보수단가}(3\text{만원}) \times 96\text{회} \times 5\text{년}$$

6. 추가 고려사항

- 영아보육전문지도사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분기 또는 반기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파견
- 대체교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영아보육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수립

추진사업

B-2-②

장애아동·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1. 사업목적

- 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통합)보육 역량 및 교수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만족도 제고

2. 현황 및 추진배경

- 장애아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가 9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게 적절한 (통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 2010년말 현재 강원도에는 4개소의 전담어린이집과 21개소의 통합어린이집에서 각각 92명과 78명의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 이들 어린이집의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전담어린이집 4개소에는 특수교사 7명과 치료사 4명 등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21개의 통합어린이집 종사자 중 특수교사는 3명에 불과하고, 치료사는 전무한 실정임.

표 3-17. 강원도 장애아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관련 현황(2010년말)

구분	시설 수 (개소)	정원	보육아동(명)			종사자(명)							
			현원			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계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동	비장애아				
전담	4	199	128	92	36	48	4	22	5	7	4	4	2
통합	21	1,727	1,415	78	1,337	224	21	17	140	3	-	24	19

주: 도내 장애아전담시설 중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한편, 2010년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 중 다문화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14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1,085개소의 38.2%이고, 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수는 1,144명 임. 또한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 수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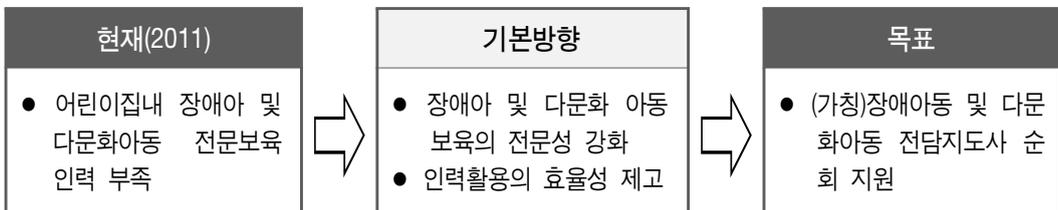
표 3-18. 강원도 어린이집의 다문화아동 관련 현황(2010년말)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다문화아동 재원시설수 (개소)	계	414	50	79	200	31	169	1	83	1
	중소도시	184	12	14	95	5	90	-	63	-
	농어촌	230	38	65	105	26	79	1	20	1
다문화 아동수 (명)	계	1,144	175	323	486	125	361	1	157	2
	중소도시	378	28	36	196	13	183	-	118	-
	농어촌	766	147	287	290	112	178	1	39	2

주: 다문화 아동 수는 현원기준(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보육)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과 같이 특성을 가진 아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아동들이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이들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 즉, 이들 가정의 보호자와 소통하고, 이들 가정의 아동들이 차이로 인한 불편이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또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보육 현장에서 보육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비용부담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개별 어린이집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 보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들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 전담지도사 순회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1) 장애아동 전담지도사 순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 순회지원 사업은 이미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사례들이 있고, 서울시가 대표적임. 서울시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부모는 높은 만족도¹³⁾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중임.
- 본 계획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9.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파견 지원 기관: 강원도보육정보센터 ●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특수교육)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장애아동 전문지도사 활동(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전문서비스 관련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원장) 교육(현장 중심) 및 상담 - 장애아동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장애아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발달모니터링 등) 지원 - 장애아 보육 관련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 지원 -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아 관련 치료사, 재활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 조정 - 아동 발달검사 등 기초진단 지원(장애의 조기 발견) 등 ● 순회지원 대상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이 부족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우선 지원 - 장애아 관련 방문상담 요청 어린이집

2) 다문화아동 전담지도사 순회 지원

-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관련된 문제임. 특히, 유아기의 교육과 경험은 이들 아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

13)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전문가순회지원 프로그램사업'에 의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들을 조사한 결과(2009, 서울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교사교육이 1순위, 치료사 방문지원이 2순위, 특수보육 관련 지원이 3순위로 나타남. 또한 부모교육의 경우 서비스 이용 부모의 97% 이상이 만족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인 교사 및 원장의 경우 참여자의 84%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의 다문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 아동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의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적절한 적응과 올바른 성장 그리고 이들과 생활하는 아동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조화를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 장애아보육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아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를 모든 어린이집에서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문화아동 전담지도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순회지도 하여야 함.
 - 그런데, 현재 다문화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가 2010년말 현재 414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을 전담지도사(1명)가 모두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문화아동 전담지도사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조정 및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지원함.
- 본 계획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0.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파견 지원 기관: 강원도보육정보센터 ●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활동(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아동 전문서비스 관련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원장) 교육 및 상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조정 - 다문화아동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다문화아동 보육 관련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 지원 - 다문화아동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지원 - 아동 심리·발달검사 등 기초진단 지원 등 ● 순회지원 대상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다문화 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 다문화 아동 관련 방문상담 요청 어린이집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보육정보센터(전담지도사 파견 담당 기관)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 (명)	전담지도사 배치 (명)	장애아전담지도사 1 다문화아동전담지도사 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어린이집순회지원 (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1 다문화아동재원어린이집 41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예산 (백만원)	인건비	37.68 (장애아, 다문화: 총 2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사업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예산 산출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전담지도사 : 보수 단가(157만원: 보육교사 5호봉 기준) × 5년 - 다문화아동전담지도사 : 보수 단가(157만원: 보육교사 5호봉 기준) × 5년 ●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인건비와는 별도의 경상비로 보조금 지원 - 다문화아동재원어린이집 : 인건비와는 별도의 경상비로 보조금 지원
--

6. 추가 고려사항

- 해당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분기 또는 반기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파견

추진사업

B-3-①

**아이사랑모니터링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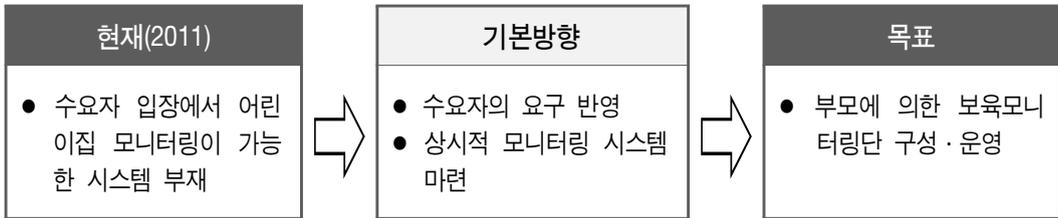
1. 사업목적

- 보육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보육아동 부모의 시각에서 내 아이가 생활하는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하는 보육 환경 개선 도모.

2.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서 ‘평가인증제도’가 운영 중인.
 - 그러나 이는 일정주기(3년)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상시적인 질관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즉, 평가인증시기에만 일시적으로 평가인증 지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실제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나 인식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보육서비스의 실제 수혜자인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부재함.
 - 이미 일부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이미 평가인증 이외에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안심보육모니터링”이라는 전문가에 의한 어린이집 상시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인. 부산시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모니터링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서울시의 동작구에서는 안심보육모니터링과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점검하는 ‘주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3. 사업목표 및 내용



-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가칭)아이사랑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함.
- ‘(가칭)아이사랑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21. 아이사랑모니터단 구성·운영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요원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중에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의 부모 － 평소에 아동보육에 관심이 많은 자 － 과거 보육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 경험(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여성관련 단체, 간호사, 기타 위생 및 안전 관련 분야 직종 종사자)이 있는 자 ● 모니터요원 모집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어린이집 수를 고려하여 춘천, 원주, 강릉은 4인(2개팀)을 선발하고, 다른 시·군은 2인(1개팀)을 선발함(총 42명/21개팀) 																																																									
<p>시·군별 모니터요원 모집 인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춘천</th> <th>원주</th> <th>강릉</th> <th>동해</th> <th>태백</th> <th>속초</th> <th>삼척</th> <th>홍천</th> <th>횡성</th> <th>영월</th> <th>평창</th> <th>정선</th> <th>철원</th> <th>화천</th> <th>양구</th> <th>인제</th> <th>고성</th> <th>양양</th> </tr> </thead> <tbody> <tr> <td>시설 수 (개소)</td> <td>217</td> <td>311</td> <td>174</td> <td>57</td> <td>21</td> <td>66</td> <td>34</td> <td>44</td> <td>24</td> <td>15</td> <td>15</td> <td>10</td> <td>26</td> <td>18</td> <td>13</td> <td>17</td> <td>13</td> <td>10</td> </tr> <tr> <td>요원 수</td> <td>4인</td> <td>4인</td> <td>4인</td> <td colspan="15"> 각 시·군별 2인 (※지역별 모니터요원 선발 여건 등에 따라 인근 시·군이나 권역별로 2인 구성 고려) </td> </tr> </tbody> </table>	구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시설 수 (개소)	217	311	174	57	21	66	34	44	24	15	15	10	26	18	13	17	13	10	요원 수	4인	4인	4인	각 시·군별 2인 (※지역별 모니터요원 선발 여건 등에 따라 인근 시·군이나 권역별로 2인 구성 고려)														
구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시설 수 (개소)	217	311	174	57	21	66	34	44	24	15	15	10	26	18	13	17	13	10																																							
요원 수	4인	4인	4인	각 시·군별 2인 (※지역별 모니터요원 선발 여건 등에 따라 인근 시·군이나 권역별로 2인 구성 고려)																																																					

● **모니터요원 교육**

- 담당기관 : 보육정보센터
- 교육내용
 - ①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 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평가인증지표 및 서울시의 안심보육모니터 매뉴얼, 부산시의 부모 모니터단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원도 차원의 ‘모니터링 지표’ 선정)
 - ② 어린이집 방문 및 모니터링시 예절 및 태도 등 교육(※모니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 교육시간 : 1일(8시간) ※추후 조정

● **모니터요원 보수**

- 1회(1개 어린이집)당 1만원(※실비 지급, 보수 수준은 추후 조정)

● **모니터요원 활동(사업내용)**

- 활동방법 : 2인 1 조로 구성, 1회 점검방문 2회 확인방문(※불시 방문)
- 활동일수 : 주 2일 활동, 4개 이상(1주당)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 활동내용 : 다음 사항에 대한 지표 점검(※지표는 별도로 개발 필요)
 - ① 위생관리(급간식 관련 위생, 환경 및 물품 관련 위생 등) : 급간식 방식, 식재료 관리 및 조리, 보육실 및 화장실 등 위생, 교재교구 등 아동이 이용하는 물품관리 등 부모 입장에서 파악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모니터 실시
 - ② 안전관리(실내외공간, 장비 및 물품, 차량이용 등) :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 아동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장비 및 물품 등의 안전 모니터링, 차량등 직접 탑승을 통해 부모 입장에서 보는 차량지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모니터 실시

● **모니터 대상 어린이집**

-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어린이집(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난방비 등)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보육정보센터(전담지도사 파견 담당 기관)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회)	2,17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0,850
예산(백만원)	21.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08.5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기본가정

- 모니터 대상 어린이집 수 : 1,085개소(2010년말 기준)
- 모니터 요원 수
 - ① 어린이집 수가 많은 3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에는 2개팀(4명)의 모니터를 선발
 - ② 나머지 15개 시·군은 각각 1개팀(2명)의 모니터를 선발(권역별로 1개팀을 구성하는 방안은 이후 별도로 고려)
- 1년 중 1개 시설 모니터링 횟수 최소 2회
- 모니터링 횟수 : (해당 시·군의 어린이집 수/모니터 팀 수)×최소 2회
 - 예1) 춘천시 : (217개소/2개팀)×2회 = 217회/1개팀 → 1일 4개의 어린이집 모니터링할 경우 1년간 총 활동일수는 약 54일
 - 예2) 영월군 : (15개소/1개팀)×2회 = 30회/1개팀 → 1일 4개의 어린이집 모니터링할 경우 1년간 총 활동일수는 약 8일
- ※시·군간 활동하는 모니터 요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나 권역별로 공동으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1년간 18개 시·군별 어린이집을 최소 2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모니터링해야 하는 연 횟수는 현재 어린이집 수의 2배수

○ 예산 산출 공식

● 어린이집 개소 수(1,085개소: 2010년말 기준) × 1개소당 모니터링 횟수(2회) × 보수단가(1만원)

6. 추가 고려사항

- 어린이집 수가 적은 시·군의 경우 권역별로 공동으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것을 권고

추진사업

B-3-2

어린이집 이용아동부모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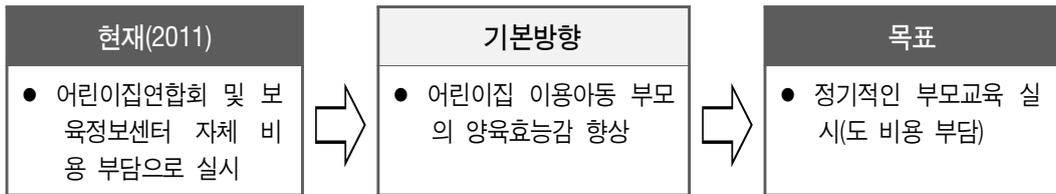
- 보육서비스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의 향상 지원

2. 현황 및 추진배경

- 이용아동 보호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낮은 정보 접근성
 - 어린이집 이용(희망)아동의 부모(보호자)는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위의 입소문이나 개별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정보(설명회)에 의존하고 있음.
 - ※ 평가인증제도의 방식과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
 - 보육사업 관련 설명되는 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개원을 희망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희망아동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전무함.
 - ※ 원장 대상 설명회 : 평가인증, 재무회계관리, 어린이집신규설치, 기타 보육관련 제도 등
- 운영자와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 제시 곤란
 - 타 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 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아모집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아동 부모의 요구를 기준없이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따라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이나, 부모의 기본책임과 관련하여 부모의 잘못된 태도나 관행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임.
 - ※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경우, 보육료수납기한을 지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등원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간식이나 급식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등원시켜 안정된 분위기를 방해하는 등 원활한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 보호자(부모)의 자질 문제
 -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24시간, 시간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피하는 등 부모로서의 자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가 필요함.
- ※ 본 연구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FGI결과에서도 부모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3. 사업 목표 및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보를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적인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각 시·군 단위로 어린이집에 대한 공동설명회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3-22. 부모교육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시 주체 : 어린이집연합회(강원도 및 시·군), 강원도보육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선정, 강사 및 장소 섭회, 프로그램 운영 ● 예산 지원 : 강원도 ● 교육(예산 지원)횟수 : 시·군별 연간 2회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관련 정보에 관한 교육(어린이집 설명회) : 어린이집 유형, 아이사랑카드, 기본보육료, 평가인증, 공공형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특별활동, 아이사랑 모니터 대상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전반 - 부모의 역할과 책임 관련 교육 ●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시·군,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자체 홍보(안내지 배포 등), 관공서 게시판, 지역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 독려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시·군,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보센터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횟수)	36회(2회/18시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80회
예산(백만원)	52.0(1회당 2.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60.0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예산 산출 공식

$$\bullet 200\text{만원(강사비, 장소대여비, 교육자료 등)} \times 36\text{회}(18\text{개 시군} \times \text{연 2회}) = 5,200\text{만원}$$

6. 추가 고려사항

- 교육 참여자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교육 평가 실시 및 이후 교육에 반영
- 접근성을 고려 시·군 공동교육 개최 가능 여부 검토

4

【정책목표C】 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



추진사업

C-1-1

어린이집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가칭)강원아이사랑보육포털

1. 사업목적

-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시간 정보 조회 및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예약 등이 가능한 어린이집 이용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

2. 현황 및 추진배경

- 2010년말 현재 도내 1,085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녀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와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 － 현재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주요메뉴 중 “육아정보” → 하위메뉴 중 “어린이집 검색”)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그 내용이 부모(보호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로서는 한계가 있어 수요자 친화적인 측면 부족. 즉,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또한 일상적으로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을 통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먹거리(급식)”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주간급식안내서’이외에는 실제의 급식 현황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임.
 - － 다음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내용을 매일 부모(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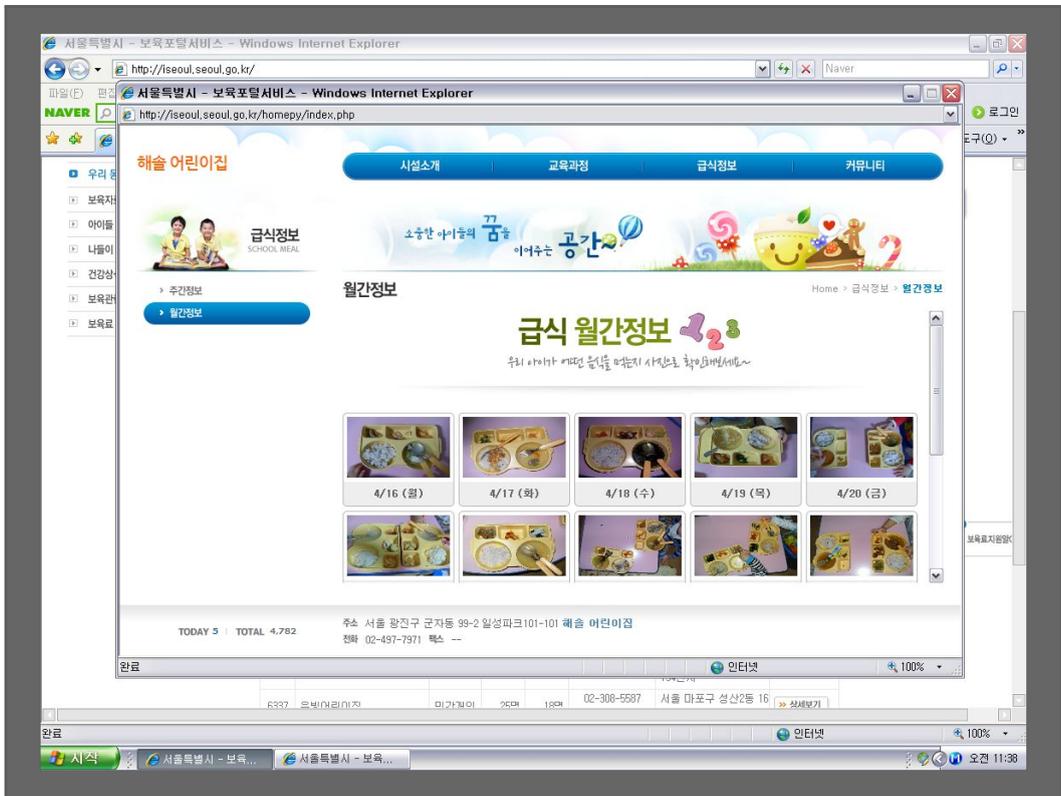


그림 3-5.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어린이집의 급식정보 제공 사례

- 한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수요파악을 위한 시스템도 거의 부재함.
 - 현재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별 보육수요 파악 기준으로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정원충족률)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때, 국공립 등 공공부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민간 부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한 정원충족률의 평균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린이집의 공급은 주로 민간 부문(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보육수요 파악과 보육서비스 공급방식의 결과, 민간중심 보육서비스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충족률은 시·군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구체적인 보육수요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어린이집 유형이나 읍·면·동 등 해당 시·군의 보육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최근 '5~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보육교사의 당직, 특히 주말 및 휴일 당직이 문제가 됨.
 - 즉, 일부(소수) 가정의 수요로 인하여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주말이나 휴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정의 수요도 충족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러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주말이나 휴일당직을 교대로 수행함.
- 다음은 앞서 제시한 서울특별시의 동일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예약”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어린이집별 입소대기신청, 시간제보육·휴일보육·야간보육 서비스에 관한 이용신청을 예약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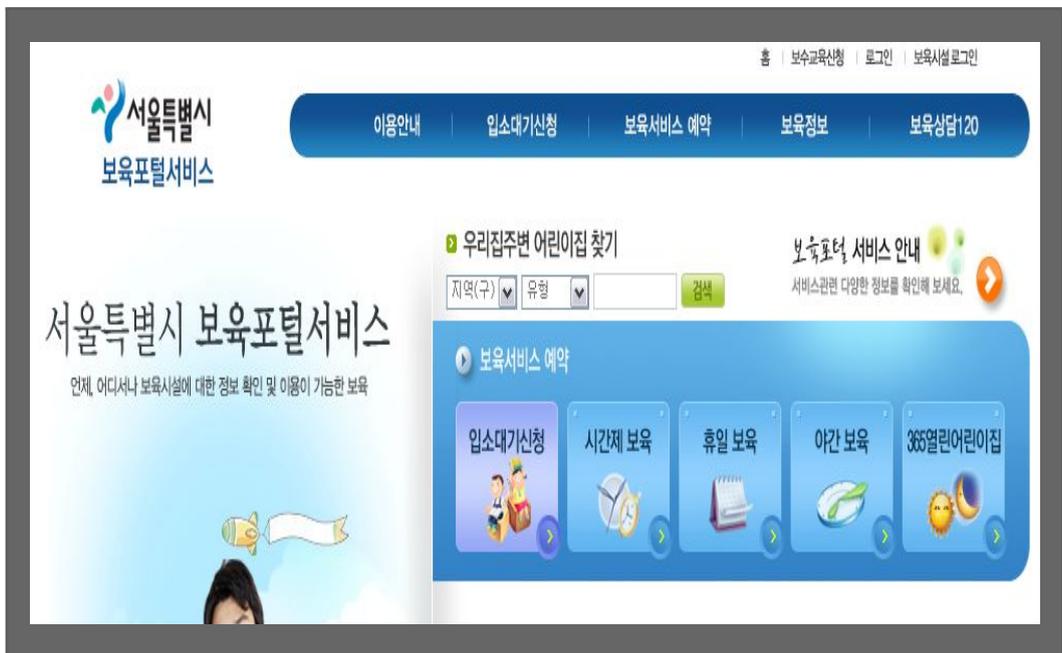


그림 3-6.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 구체적인 신청방식 사례를 “휴일보육예약”메뉴를 통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시설정보
목록 >

시설명	성터어린이집	시설유형	법인외
시설특성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정원 / 현원	49명 / 47명
시설장명	미주연	개원일	1997-12-17
차량운행	차량운행	평가인증유무	평가인증시설
주치의기관	>> 상세보기		
전화	02-3672-357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4가길 40 (창신동 640-244)		
홈페이지	>> 상세보기		
정부지원시설	정부지원시설	상해보험가입	상해보험가입
화재보험가입	화재보험가입	배상보험가입	배상보험가입

→ 보육료 금액

산출방법	비정기적 외부미용 아동의 경우 = 시간제 보육료 적용 (시간당 2600 원)
------	--

→ 실시간 보육 예약
목록 >

- 보육예약 유형 휴일보육 예약 (예약가능)
- 보육예약일 2012-05-13
- 보육예약현황 예약확정: 0 명 예약대기: 0 명
 예약가능: 10 명 예약정원: 10 명

번호	이동명	주민번호	만나이	추가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태마 ::아동거주지 선택	0	+

휴일
보육
예약

- SMS 수신전화번호 010 - - SMS수신가능

외상시 대피계단

어린이집 전면사진

달남반 교실

조리실

3.7점식급식

그림 3-7.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휴일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 다음은 동일 사이트의 “입소대기신청 예약”을 위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음.

입소대기신청

자치구	:: 전체 ::	행정동	
시설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부모협동 <input type="checkbox"/> 직장		
시설특성	<input type="checkbox"/> 서울형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장애아통합 <input type="checkbox"/> 장애아전담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시설 <input type="checkbox"/> 영아전담시설 <input type="checkbox"/> 시간연장		
평가인증 유무	:: 전체 ::	차량운행여부	:: 전체 ::
시설명	<input type="text"/> » 시설검색		

시설조회수 : 6,016 시설 평가인증시설입니다.

번호	시설명	시설유형	입소대기	정원	현원	전화	주소	입소대기신청
6016	해솔 어린이집	가정	7명	19명	17명	02-497-7971 FAX: —	서울 광진구 군자동 9 9-2 일성파크101-101	» 상세보기
6015	샤인봄어린이집	민간개인	9명	39명	36명	02-951-6437 FAX: 02-951-6435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19-57번지 연호빌 딩1층	» 상세보기
6014	발산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개인	0명	39명	23명	02-3664-8510 FAX: 02-3663-3142	서울 강서구 내발산2 동 703-3	» 상세보기
6013	동화나라어린이집	민간개인	1명	63명	37명	02-894-6263 FAX: 02-894-6665	서울 금천구 시흥4동8 20-12	» 상세보기

- 보육예약 유형 **입소신청**
- 입소대기자수 **전체 입소대기자수: 7명**

※주민번호 입력시 만나이는 자동 등록됩니다.

번호	아동명	주민번호	만나이	추가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0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아동거주지	::아동거주지 선택		
	주소 <input type="text"/>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모·부자 자녀
- 최저생계비의120% 이하(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아동
- 맞벌이 부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입양아
-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100%)

3순위

- 일반 영유아

기타특이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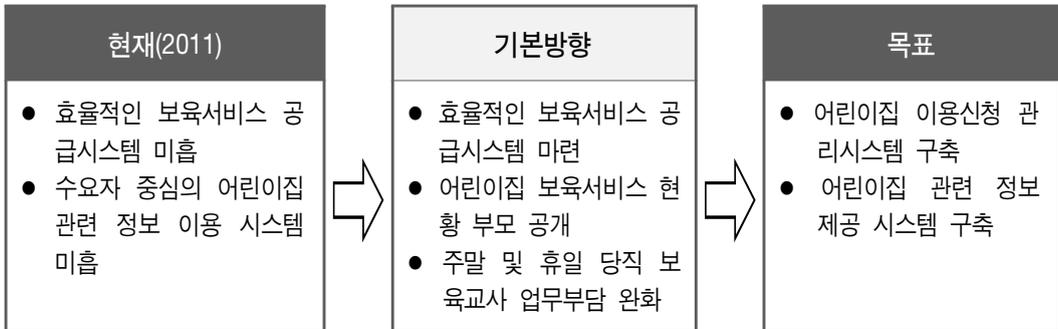
저소득5층 장애아 형제자매 휴일보육
 24시간 기타

- SMS 수신전화번호 010 - - SMS수신가능
- 연락처 010 - -

**입소
대기신청**

그림 3-8.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중 “보육서비스 이용예약” 사례

3. 사업목표 및 내용



1) 어린이집 입소대기아동 관리 시스템

- 도내 각 시·군별로 국공립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을 자극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수요과약 방안으로서, “어린이집 유형별 대기아동 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주말 및 휴일 등 보육 신청 관리 시스템

- 보육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주말 및 휴일 등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여러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교대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당직근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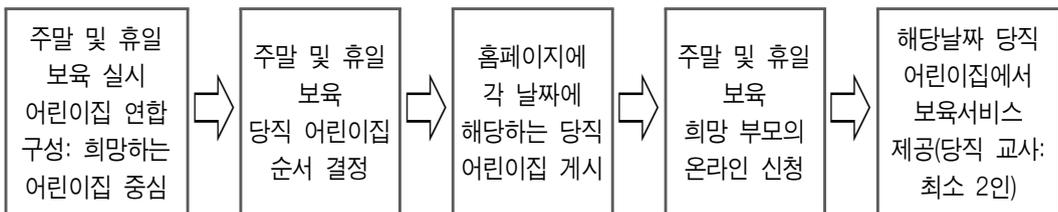


그림 3-9. 주말 및 휴일 등 보육 신청 관리 시스템 운영 방법

3) 어린이집 정보제공 및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 모든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부모 입장에서 무척 궁금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1~2가지의 기본서비스(예: 급간식서비스)를 공공홈페이지에 게시¹⁴⁾하여 부

14)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참조

모의 알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시·군,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량	포털사이트 개발 용역 및 관리·운영	사이트 관리·운영	좌동	좌동	좌동	-
예산(백만원)	56	6	6	6	6	80

〈 소요예산 산출 내역 〉

- 예산 산출 공식

- 포털 사이트 개발비(용역 실시) : 1회 × 5,000만원 = 5,000만원
- 사이트 관리·운영비(외주) : 월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6. 추가 고려사항

- 주말 및 휴일 공동보육 실시 어린이집수가 일정 규모(예: 시지역 5개소, 군지역 3개소)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당직비 지원 등 고려하여 자기 어린이집 아동이 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여 주말 및 휴일 공동보육에 참여를 꺼리는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 유도
- 주말 및 휴일 공동보육의 경우, 차량운행 금지 원칙(부모에 의한 등·퇴원 원칙)

추진사업

C-2-①

도보육정보센터
환경 정비 및 기능 강화

1. 사업목적

- 도보육정보센터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효과 향상

2. 현황 및 추진배경

-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됨.

표 3-23.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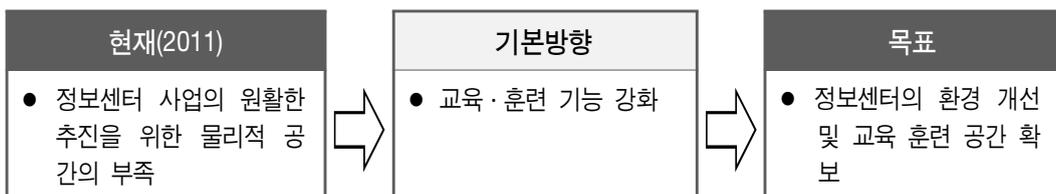
-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육아 지원
- 지역주민의 육아 지원(양육상담, 도서무료대여, 부모강좌 등)
-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
- 보육도서관(on line/off line) 운영
-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상담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 데스크 운영
-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 기타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2011년 보육사업안내

- 강원도보육정보센터는 2003년에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센터 시설은 현재 아동상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간구성은 사무실, 정보자료실, 교육실, 상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①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② 어린이집 지원사업, ③ 취약보육 지원사업, ④ 육아 지원사업, ⑤ 연구사업, ⑥ 자료집 발간사업, ⑦ 홍보사업, ⑧ 지역사회기관 협력사업, ⑨ 평가인증 조력사업, ⑩ 보육컨설팅 시범사업, ⑪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센터의 사업 중 많은 비중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할애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는 강의실 등 물리적 환경이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 현재 강원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교사 및 원장 등에 대한 교육·훈련시, 충분한 강의 및 실습 공간이 미흡하여 외부기관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강당 등을 비용(대여료)을 부담하면서 대관하여 활용하고 있음.
 - － 그런데 주중에는 어린이집을 비우기 어려운 보육교사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실시해야 함.
 - － 그러나 이들 기관의 대부분은 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에는 강당 등의 대관을 금지하거나 꺼려하고 있어 교육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을 위한 상담, 각종 대여(도서, 장난감, 물품 등)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음.
 - － 광역시의 경우는 교통이 원활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만, 강원도는 지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군에 소재하는 시설의 이용은 해당 시·군에만 제한됨. 즉, 모든 시·군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춘천에 소재하는 보육정보센터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off-line)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강원도보육정보센터는 일반적인 육아지원보다는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업목표 및 내용



- 강원도보육정보센터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강의 및 실습 공간을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인근 지역에 ① 야간 및 주말 이용이 가능하고, ②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 가능하고, ③ 200명 정도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춘천시여성회관 강당 등)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내용	교육공간확보	-	-	-	-	-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

6. 추가 고려사항

- 최종적(장기적)으로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된 독립적인 센터 건물 설립 고려

추진사업

C-2-2

보육담당공무원 인력 증원

1. 사업목적

- 어린이집에 대한 질 높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의 운영 환경 조성

2. 현황 및 추진배경

- 보육업무는 공무원이 기피하는 3D업무로 취급될 만큼 업무량이 많고 복잡함. 더욱이 최근 보육 관련 예산 확대로 부적절한 예산 운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보육업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설명이 곤란한 시기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인에 의한 모니터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또한 2011년 현재 강원도에는 1,0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음. 단일 유형의 시설로 보면, 이러한 시설 수는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어떤 시설보다도 많은 수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에는 모두 3명의 인력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여성국내에서 가장 적은 인력 규모임.

표 3-24. 보건복지여성국내 부서별 업무 담당인력 규모

구분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사회 복지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경로 복지	저출산 고령화	진폐 재활	여성 정책	여성 복지	가족 복지	청소년	보육 지원
담당인력(명)	8	6	7	6	4	3	4	4	4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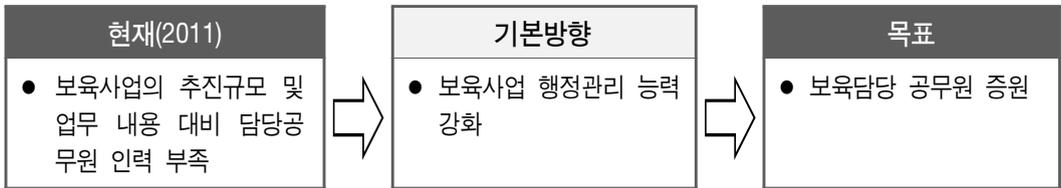
주: 보건 분야의 조직도는 생략함.
 자료: 강원도 홈페이지(방문일: 2011. 4)

- 또한 시·군에서도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른 업무에 비해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현장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여성청소년가족과 업무별 예산 규모로 보아도, 보육업무 관련 예산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전체 예산 대비 81.14%로 보육업무의 비중이 큼.

표 3-25. 2011년 보육지원팀의 예산 규모(당초예산기준)

구분	여성청소년 가족과전체 (백만원)	보육지원(백만원)					여성청소년 가족과 예산 대비 비율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국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국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국고)	계	
당초 예산	130,381	1,173	26,076	76,204	3,646	107,099	81.14%

3. 사업목표 및 내용



- 강원도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내용	도보육담당공무원 증원 (최소 1인)	-	-	-	-	-
예산(백만원)	비예산	-	-	-	-	-

6. 추가 고려사항

- 없음

추진사업

C-3-1

보육료 지원 대상 정비

1. 사업목적

- 무상보육 실시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도의 지원 사업을 정비하여, 사업의 합리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

2. 현황 및 추진배경

-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부모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부터 만0~2세 및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표 3-26. 2012년 아동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대상	전 계층(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지원		전 계층(가구) 지원
금 액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2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함.

- 또한 0~2세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 115천원)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함(국공립은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 소득인정액 조사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대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만0~2세 및 5세를 제외한 3·4세 아동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연계하여 이루어짐.
 -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하면, 소득하위 70%에 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됨.

표 3-27. 2012년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이하)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금 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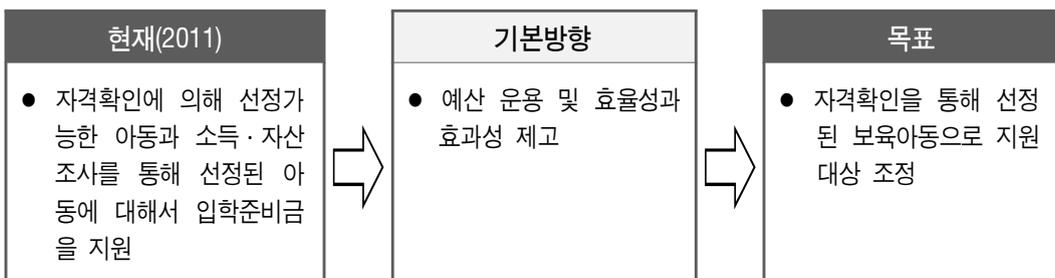
주: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향후 3·4세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확대가능성이 예측되는 바,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이들 가구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종료 예정임.
- 따라서 기존에 중앙정부(행복e음)를 통해 일괄 실시해 오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강원도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현재 강원도는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 사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세 저소득층 아동 중 자격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법정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 그리고 소득 및 자산조사(행복e음)를 통해 선정된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입학시 필요한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3-28. 강원도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0~5세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확인) 법정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 - (소득·자산조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지원기준 : 70천원(인/년) *재입학 30천원 ● 사업비 : 1,745백만원(도비 349, 시군비 1,396)
--

3. 사업목표 및 내용



-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소요 재원은 크게 증가될 것임.
 - － 현재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안할 때, 이용아동 확대에 따른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의 추가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더욱이 민간중심 구조 하에서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육료 이외의 항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적인 정부 재정을 확대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즉,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함.
- 따라서 강원도의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법정저소득층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 등 자격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함.

4. 사업추진주체

- 강원도

5.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내용	27,467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3,020명 (국민기초, 장애아, 다문화, 셋째아 이상)	3,020명 (좌동)	3,020명 (좌동)	3,020명 (좌동)	39,547
예산(백만원)	1,745	211	211	211	211	2,589

6. 추가 고려사항

- 없음

5

연차별 사업계획

1. 【정책목표A】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른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사업량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3-29. 【정책목표A】 “보육의 공공성 강화” 의 연차별 사업계획

정책과제	추진사업	구분	단위	연차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A-1. 공공보육 서비스의 확충	A-1-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제1안	사업량	개소	8	8	8	8	8	40
			예산	백만원	3,808	3,808	3,808	3,808	3,808	19,040
		제2안	사업량	개소	13	14	14	14	14	69
			예산	백만원	6,188	6,188	6,188	6,188	6,188	32,844
	A-1-2. 농어촌지역 등 보육서비스 공급개선	제1안	사업량	명	현재무상보육 대상아동 (영아 및 만5세)	전체 아동	좌동	좌동	좌동	-
			예산	백만원	양육수당 금액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제2안	사업량	개소	수요조사후 결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예산	백만원	설치비 및 운영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A-2. 보육 서비스 공급 방식의 개선	A-2-1.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의 합리화	사업량	-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예산	-	-	-	-	-	-	비예산	
	A-2-2.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운영 방식 개선	사업량	-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예산	-	-	-	-	-	-	비예산	

2. 【정책목표B】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른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사업량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3-30. 【정책목표B】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의 연차별 사업계획

정책 과제	추진사업	구분	단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B-1. 보육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B-1-1. 어린이집 차량운행방식의 합리화	사업량	-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지침시달 및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예 산	-	-	-	-	-	-	비예산
	B-1-2.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사업량	명	10	11	11	12	12	56
		예 산	백만원	26.4	29.0	29.0	31.7	31.7	147.8
	B-1-3.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량	명	경력별 보육교사 수 (2,130명)	2,130	2,130	2,130	2,130	10,650
		예 산	백만원	1,754	1,754	1,754	1,754	1,754	8,770
B-2. 특수보육 서비스 지원	B-2-1. 영아보육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	사업량	명	18	18	18	18	18	90
		활동횟수	회	연간96회/1인 (2회/1주)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예 산	백만원	51.8	51.8	51.8	51.8	51.8	259
	B-2-2. 장애아동·다문화아동 전문지도사 순회 지원	사업량	명	장애아전문지도사 1 다문화전문지도사 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1 다문화아동재원어린이집 41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예 산	인건비 (백만원)	37.68 (장애아, 다문화: 총 2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사업비 (백만원)	인건비와는 별도의 경상비로 보조금 지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B-3. 이용자의 보육참여 지원	B-3-1.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사업량	회	2,170	2,170	2,170	2,170	2,170	10,850
		예 산	백만원	21.7	21.7	21.7	21.7	21.7	108.5
	B-3-2. 어린이집 이용아동부모 교육 지원	사업량	회	36 (2회/18시·군)	36	36	36	36	180
		예 산	백만원	52.0 (2.0/1회당)	52.0	52.0	52.0	52.0	260.0

3. 【정책목표C】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추진 기반 구축

-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추진 기반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른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사업량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3-30. 【정책목표C】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추진 기반 구축” 의 연차별 사업계획

정책 과제	추진사업	구분	단위	연 차 별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C-1. 보육관련 전산화 시스템 구축	C-1-1. 어린이집 차량운행방식의 합리화	사업량	건	포털사이트 개발 용역 및 관리·운영	사이트 관리·운영	좌동	좌동	좌동	-
		예 산	백만원	56	6	6	6	6	80
C-2. 보육관련 조직 기능 확대	C-2-1. 도보육정보센터 환경 정비 및 기능 강화	사업량	건	교육공간확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예 산	백만원	-	-	-	-	-	비예산
	C-2-2.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	사업량	명	도보육담당 공무원 증원 (최소 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예 산	백만원	-	-	-	-	-	비예산
C-3. 기타 보육관련 제도 정비	C3-1. 보육료지원 대상 정비	사업량	명	27,46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3,020 (국민기초, 장애아, 다문화, 셋째아 이상)	3,020 (좌동)	3,020 (좌동)	3,020 (좌동)	39,547
		예 산	백만원	1,745	211	211	211	211	2,589

6

계획의 평가방안

1. 평가 목적

- 「제2기 강원도보육발전계획」은 강원도의 보육 현실과 욕구를 고려하여 강원도가 지향하는 보육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2~2016년까지 향후 5개년간 연차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추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의 과정이 필요함. 본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계획 추진기관(강원도)의 책임성 제고

- 계획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추진하는 주체의 책임성과 의지임.
- 평가는 일정정도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즉, 정부의 계획이 보다 책임감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이 필수적임.
 - － 계획의 추진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평가”의 과정이 있을 경우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2) 보육 환경 변화의 효율적 반영

- 본 계획은 최근에 변화된 보육환경과 향후의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수립되었고, 그 추진기간은 5년(2012~2016)임.
 - －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육정책(공급)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동안에도 보육 환경은 예측의 범주를 뛰어넘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

- 계획이 의도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계획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간과하고 일관성을 강조하다 보면,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본 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보육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즉, 계획의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한계를 해결하면서 보다 나은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함.
 - －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부재할 경우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 “평가”는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과정임.

3) 강원도의 보육 시책에 대한 관계자의 참여 보장

- 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육아동 및 그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본 계획의 최종적인 수혜자이고, 본 계획에 대한 평가는 이들 수혜대상이 시책을 통한 강원도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 － 또한 이들 이외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의 직원 및 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도 시책의 간접적인 수혜대상자임. 따라서 이들의 평가도 함께 고려함.
- 결국 “평가”는 보육사업을 추진 부서, 보육서비스 공급하는 주체인 어린이집 및 관계 기관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아동 및 부모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이나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임.

4) 제3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의 발전적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가장 발전적인 목적은 제3기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2. 평가 주체

1) 연차별 평가 주체(매년 1회) :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 제2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주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함.

-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 해당 지역의 보육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풍부한 자를 선정함. 특히, 동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주체로서 가장 적합함.

2) 최종 평가 주체(계획종료 시점) : 보육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와 더불어 본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도)에 제3기강원도보육발전계획 수립시, 보육서비스 수혜자(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에 대한 양적(설문), 질적(FGI) 조사 등을 통한 최종적인 평가를 병행함.

3. 평가 방법

- 평가는 각 추진사업 목표치(사업량, 예산)에 대한 이행률 평가와 만족도 평가를 병행함.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6. 평가방법

구분		내용
이행률 평가	평가주체	●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평가시기	● 매년(시행계획 수립시) ● 최종(제3기 계획 수립시)
	평가단위	● 추진사업
만족도 평가	평가주체	● 보육서비스 수혜자(부모) 및 제공자(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 실시
	평가시기	● 최종(제3기 계획 수립시)
	평가단위	● 별도의 설문지 개발

주: 제3기 강원도보육발전계획 수립 주체(기관)에 의해 실시

4. 평가 일정

○ 평가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0. 「제2기 강원도보육발전계획(2012~2016)」 평가실시 일정

연구보고서 2011-06

제2기강원도보육발전5개년계획(2012~2016)

강원아 이 사랑 플랜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최문순**

발행처: **강원도**

주소/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

전화/(033) 249-2240 (대)

팩스/(033) 249-4037 (대)

<http://www.provin.gangwon.kr>

등록번호 72-6420607-000015-01